

월간
재정포럼 1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7년 12월호 제138호

권두칼럼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온기운

현안분석 • 지방정부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 김현아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민희철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정책흐름 •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외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 온기운
현안분석	06 지방정부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 · 김현아 27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 민희철 43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 김재진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60 美, 민주당 주자들 중산층 논쟁 외
정책흐름	70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74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76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79 2008년 경제전망 84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88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90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99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재정통계	10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이런의견 저런생각	134 대선과 새해 예산안 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GDP는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을 엄밀하게 측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잠시 일자리를 떠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유희노동력이 발생하게 된다. 공장의 설비도 보수나 정비를 위해 때로는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뿐 아니라 생산성이나 기술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데 이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다.

잠재성장률하에서는 오히려 다소의 실업률과 유희설비가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은 1970년대 미국에 있어서 4%의 실업률을 수반하는 경제를 완전고용으로 정의했으며, 따라서 이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GNP를 잠재GNP로 보았다(이 당시에는 국민소득의 개념으로서 GDP보다 GNP 개념이 더 많이 쓰였음). 그는 실업률이 4%를 넘게 되면 잠재GNP와 실제GNP의 격차인 GNP갭은 더욱 커진다고 보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에 6.1%였으나 2001~2004년에는 4.8%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 중 자본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떨어지고, 총 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는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떨어졌다.

2005~2014년에는 중립적으로 볼 경우 잠재성장률이 4.6%, 비관적으로 볼 경우 4.0%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낙관적으로 볼 경우 5.2%로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은 경제주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별로 높지 않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2006년에 브라질에 밀려 세계 12위로 하락했고, 2007년에는 러시아한테도 밀려 13위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잠재성장률이 하향추세를 지속하여 경제성장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2006년에 브라질에 밀려 세계 12위로 하락했고, 2007년에는 러시아한테도 밀려 13위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잠재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지속하여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속도가 둔화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원인이 투자 위축이다. 외환위기 이전 높은 증가율(1990~1997년 중 9.6%)을 나타냈던 설비투자는 수익모델의 불확실성과 보수적인 경영 풍토, 기업가정신의 부족, 산업공동화, 각종 규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0년대 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77조 7,600억원(2000년 실질가격 기준)에 달했다가 1998년 40조 5,800억원으로까지 급감했던 설비투자 규모는 2006년에 78조 2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투자 위축은 자본스톡을 빈약하게 하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둘째는, 노동력 공급의 둔화다. 1980년대까지 2% 중반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노동력(생산가능인구)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1990년대 1%대, 최근에는 0.6% 정도로 그 증가세가 둔화됐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낮아진 후 아직 62%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에 따라 한참 일할 연령인 16~49

세의 인구는 오는 2008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며, 16~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성장잠재력 약화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셋째는, 생산성 향상의 부진이다. 동일한 규모의 자본과 노동 공급이라도 생산성이 높으면 국내 산출물이 많아지고 잠재성장률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향상속도도 느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4만 4,565달러로 미국(8만 4,272달러)의 52.9%, 일본(5만 9,889달러)의 74.4%에 불과하다.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는 24위다. 이러한 저조한 노동생산성은 노동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으로 글로벌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시장 잠식, 산업구조 변화와 수출·내수 단절 등에 따른 연관관계 약화, 금융기관들의 소극적 기업대출로 인한 투자 부진 등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급측면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이 구체화된만큼 이에 대한 처방책도 실현의 난이도를 떠나 그 방향만큼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자본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풀고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이 최근 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일본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영자들이 기업가정신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다.

둘째,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한편, 현존하는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여성의 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 시정 등이 시급하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과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한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산업계의 총 요소 생산성으로 이어지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추가적인 투자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DI

현안분석

- 지방정부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
김현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
민희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정부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논의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hyuna@kipf.re.kr)

지방채의 비중이 낮고
채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I. 서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구조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전재원은 '세입 내 세출'의 예산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출을 제한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재정관리제도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입 내 세출의 예산원칙뿐만 아니라, 세율 및 과표에 관한 과세권, 비과세 감면 규정 및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통제, 총액한도제를 통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강력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무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자체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채의 비중이 낮고 채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나타난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사례는 재정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지부분의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고령화로 인한 지방정부 세원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근의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사례는 사실상 정부간 재정관계로 인한 것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해 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묻기에는 구조적인 맹

점이 있다. 일률적인 국고보조금 정책에 따라 무리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를 야기시킨 점 등이 대표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상위 정부의 이전재원 중단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지방정부 세외수입 비중의 급증 현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재정지원 삭감이 주원인에 해당한 것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최근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위험 분석의 초점을 지방정부 지출패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부간 재정구조의 문제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의 관리방안보다는 정부간 재정 환경에 맞는 재정위기 분담 (share)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예를 들어, Jun Ma(2000)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의 사례에서 각종 재정위험관리 수단(예: early warning indicators)이 제대로 잘 작동한 곳은 미국과 같이 지방정부가 공공재 공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즉,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세입으로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¹⁾. 재정관리 시스템의 효과 정도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세출부담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인 재정관리 주체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냐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사례이다(soft budget/hard budget)²⁾. 또한, 정부간 재정 환경뿐만 아니라 법적인 환경,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재정위험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비교 분석에 해당하는 IMF 및 OECD의 분석자료를 살펴보고, 국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과 이에 맞는 재정관리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의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사례는 사실상 정부간 재정관계로 인한 것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해 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묻기에는 구조적인 맹점이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상위 정부의 이전재원 중단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다.

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1. 정부간 재정규모 현황

정부간 재정규모 현황은 그 나라의 지방정부의 재정적 위치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80년대 미국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지표로 지방정부 예산(세입 및 세출)의 증가 속도를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속도 혹은 인플레이션 정도(혹은 두 지표를 합한 증가율)만큼만 허용한 바 있다³⁾. OECD의 분석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관리를 통한 궁극적인 효과로 ‘공공부문의 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이유는

1) Ma(2001), p.18. 물론 이에 대하여 New(2001)는 지방정부의 세출가능 정도에 따라 그 이상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준에 대한 economic foundation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2) 참고로, 미국 지방정부(City and County)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permanent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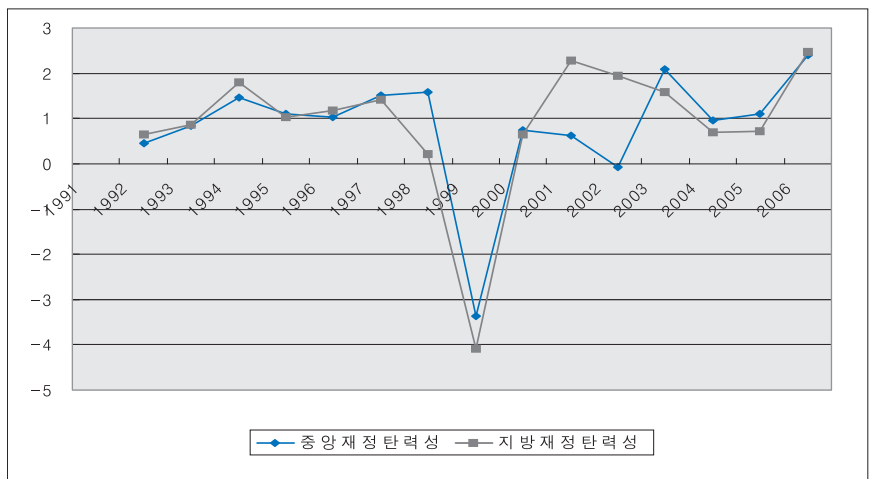
3) Laubach, OECD (2005)



지방정부 예산규모가 일정 기준 속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변화 속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Inman(2003)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 예산규모가 일정 기준 속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변화 속도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GDP 대비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규모의 탄력성



정부간 재정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정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206조원에 해당하며, 지방정부의 규모는 약 112조원 규모이다⁴⁾.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비중은 최근 들어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규모는 1991년 10%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약 13%대이다. 1991년 대비 GDP 성장은 약 4.3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각각 4.9배와 5.8배에 해당한다. 국가경제 성장 속도에 비하여 공공부문 증가 속도가 다소 앞서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 규모 증가가 더욱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방재정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59%이고, 이전재원은 13.48%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시 자체재원보다는 이전재원을 통한 재원확보 비중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OECD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규모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소득격차 증가로 인하여 재분배 관련 국가정책 목적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원이양을 통한 증가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⁵⁾.

4) 중앙정부 규모는 한국조세연구원 기준 통합재정규모를 사용하였으며, 지방정부 규모는 『자치단체예산개요』(2007)의 최종예산 규모를 사용하였다.

5) Blochiger (2006)

경제성장 속도와 연동하여 본 재정규모의 탄력성(GDP 1% 증가 대비 정부규모 증가율)은 동 기간 내에 IMF 외환위기 시기의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각각의 탄력성은 1.13, 1.25로 증가율 면에서도 경제성장 속도보다 공공부문 증가 속도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⁶⁾.

지방재정 내에서의 일반회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은 1991년 이후, 일반회계 비중이 약 67%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MF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예산외(off-budget)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비중의 증가는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의미하므로 재정운영 관리상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증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 혹은 세원이양 등을 통하여 재정증가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앞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 혹은 세원이양 등을 통하여 재정증가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재정수요와 재정력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에 의지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연도별로 발행하는 지방채 수준은 전체적으로 약 3% 수준이며 주로 도로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일반회계채는 1%에 그치고 있으며, 상·하수도 등의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비율이 약 10%대 정도이다⁷⁾. 채무잔액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17조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지방채무를 기준으로 한 재정위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도별 지방채 증감 현황(누적 합계)

(단위 : 조원)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1.5	12.9	15.1	16.2	18.0	18.7		17.7	17.0	16.5	16.9	17.4	17.4

자료: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7.3.22)

그간 지방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실질적인 발행에 대한 경직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조건이 완화

6) IMF 외환위기 시기를 포함시킬 경우, 중앙정부는 동 기간 평균 0.83, 지방재정은 0.89로 나타났다(부록 〈표 1〉).

7) 부록 〈표 2〉 참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재정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지방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에도
지방채무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되어 2006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8%만이 발행되었다. 지방채제도는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한도액을 부여하고, 한도액 내에서는 행자부 승인 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를 도입하였다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설정하고, 발행한도 이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자부 자체 분석에서는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급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방의 자체 관리제도(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가 운영되어 채무로 인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지방채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에도 지방채무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재정수요 증가의 내용 때문이다. 지역 현안사업 증가 등으로 재원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채를 통한 재원조달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제도상의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굳이 채무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연성예산제약'을 의미하는데 주민들의 저항을 받아가며 채무를 지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저금리 공적자금 등에 의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주로 지방채 발행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들(택지개발, 지하철, 도로 신설 등)의 증가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의 공공서비스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 등이다. SOC 관련 기반시설 설치(capital spending)보다는 사회투자과 관련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체 사업의 지방채 비중 의존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⁹⁾.

8)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9) 참고적으로, 일본 지방정부의 경우 채무수준은 GDP 대비 40%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GDP 대비 6% 내외, 호주는 2% 정도이다(OECD, 2005).

〈표 2〉 지출내용과 지방채 발행액의 관계

Dependent variable: log(지방채발행액)		
	도본청	도본청+시군구
log(지방세)	0.81(2.52)**	0.97(3.00)***
log(순세게잉여금)	-0.21(-2.79)***	-0.74(-3.83)***
log(사회개발비)	-0.62(-2.10)**	-0.69(-2.42)**
log(경제개발비)	0.45(1.83)*	1.12(4.18)***
지방자치(1995년 이후)	0.61(2.30)**	0.57(2.75)***
상수	3.57(1.60)	0.005(0.53)
R ²	0.27	0.32
모형	고정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N	195	244

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광역자치단체 기준 지방재정연감(매년자료)을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정건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체 세원 증가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재정수요가 존재하는 한 재정압박 요인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3. 재정수요 내용 변화에 따른 재정압박 사례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정건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체 세원 증가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재정수요가 존재하는 한 재정압박 요인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자체 위험 정도가 낮다고만 하기에는 자치단체 사무 내용이 복잡하고 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이전재원 구조는 일차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이용하여 일반재원의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그 외에 사업별 부족액은 국고보조금(균특회계 포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는 사업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통한 무리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재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중앙-지방간의 재정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일률적인 국고보조 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비 매칭 부담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¹¹⁾. 이것은 경제개발비와는 달리 복지 관련 사회투자는 성격상 ‘인구구성’과 관계가 깊고, 따라서 자치단체 단계별(광역시-자치구, 도-시군) 특성이 감안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0) 「2007-11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자료

11) 부산 A구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53.8%이고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6.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시군의 교부세액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자체 사회투자지출 추이

(단위 : 조원, %)

	00	01	02	03	04	05	증감률
총지출(순계)	65.0	79.1	91.1	97.5	98.8	107.0	10.5
사회개발비 (비중)	30.3 (47)	38.7 (49)	42.7 (47)	46.8 (48)	48.0 (49)	53.3 (50)	12.0
사회보장 (비중)	6.38 (10)	8.04 (10)	8.64 (9)	9.42 (10)	10.6 (11)	12.8 (12)	-
경제개발 (비중)	21.0 (32)	23.6 (30)	30.5 (33)	30.8 (32)	28.9 (29)	30.5 (28)	7.7
기타 (비중)	13.7 (21)	16.8 (21)	17.9 (20)	19.9 (20)	21.9 (22)	23.2 (22)	11.2

주: 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1~2006 최종예산)

2. 사회개발비 사회투자(교육 및 문화, 보건, 사회보장)+생활환경개선+주택·지역사회개발 등
자료: 행정자치부 정책자문회의 자료

〈표 4〉 시군구별 사회투자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평균

(단위 : 조원, %)

	시	군	자치구
■ 총지출	35.6	17.5	11.0
사회보장 (비중)	4.5 (12.6)	2.1 (11.9)	3.3 (29.8)
■ 지방비 부담비율	3.1	3.3	10.9

자료: 「20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투자 부분 공청회자료」, 2007

특히, 이상과 같은 재정부족 사례가 일부 대도시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원의 근간은 재정력이 가장 약한 시·군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군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절대적인 인구 수가 도의 시·군보다는 많지만,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원 기반은 약한 편임에도 대도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이후 시군의 교부세액 증가율은 높았던 반면,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혜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원 부족 등으로 매칭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¹²⁾. 자치구의 경우, 순세제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약한 자체 세원이 우선적

12)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기초수급자가 많거나(예: 노원구, 강서구), 교부금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200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으로 문제이며, 대도시 중심의 인구구성 특성상 저소득층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광역시 자치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재정압박의 요인에 해당한다.

자체 재무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간 재정구조 개편에 해당한다.

〈표 5〉 순세계 잉여금 비율

(단위 : %)

	전국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2004	5.31	5.83	3.74	11.25	9.01	17.27
2005	5.00	1.45	3.44	6.61	6.83	9.96

자료 : 『FY200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12

문제는 사전적으로 정부간 재정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IMF 위기 당시에는 중앙 정부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요소를 구조조정과 채무를 통해서 떠안았다고 볼 수 있다. 꾸준한 재원 증가가 예상되는 복지지출의 경우, 정부간 재정관계 개편(중앙-지방, 광역-기초 등)과 세출부담 조정으로 개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충격으로 인한 재정위험 상황의 경우, 글로벌화 시대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빨리 금융 및 국가위기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자체 재무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간 재정구조 개편에 해당한다. 특정 세원 위주의 지방세 구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계속되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유세제의 증가 속도에 맞추어 거래세율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취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등록세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래과세에만 의존하는 광역-기초간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ECD 분석에서는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력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재정규율(fiscal rule)을 통한
지방정부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Ⅲ. 정부간 재정위기 관리의 개념과 국제적인 추세

1. 재정위기 관리의 필요성 강조

OECD 분석에서는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력 격차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 정부는 '재정규율(fiscal rule)'을 통한 지방정부(sub-national government)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입비중 증가 속도에 비하여 세출비중의 증가 속도가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이전재원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사회투자 증가 속도로 볼 때 OECD국가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중앙정부를 통한 지원을 받아 재정운용에 의지하게 될 수록 지출에 대한 책임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재정규율 혹은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정규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이 이론연구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Eichengreen and von Hagen(1996), Rodden(2002)는 지방정부의 세입 비중 및 세출비중의 격차가 클수록 재정규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tighter and prohibitive fiscal rule). 결국, 최종적인 재정책임을 중앙정부가 지게 되고 이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전 국민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멕시코 사례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중앙정부가 구제한 사례에서나, 일본 이 기타 OECD국가의 평균에 2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의 증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현상 등은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부담이 중앙정부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지방정부 재정규율의 강화는 개념상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OECD 분석에서는 재정위기 관리를 지방 자치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WorldBank 분석, 미국의 사례에서는 자치권 제한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2. OECD

OECD에서 관찰한 회원국들의 재정규율의 정책적 명분은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 지출 증가의 효율성'과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맞는 지출 증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재정규율의 주요 내용은 균형재정수지 원칙(Balanced Budget Requirement(BBR)), 세입 및 세출수준 제한(Tax limit

and Expenditure limit(TEL)), 차입규제(Borrowing constraints(BC))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전적인 재정관리에 해당하며, 사후적으로는 성과관리와 제재조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 내 세출'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균형재정수지 원칙은 OECD국가보다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2006년부터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정부간 재정 관계 면에서나 차입에 대한 규제 또한 규모 면에서 OECD국가 평균보다 강력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지방정부 차입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단계에서 경상지출에 대한 차입을 금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와 우리나라이다. 대부분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특별한 규율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대신 기초자치단체는 단기에 한하여 지방정부 세입 대비 30%까지 경상지출 재원을 위한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의 경우 장기 차입도 가능하다. 그 밖에 단일국가들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일본, 폴란드 등은 차입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 내 세출'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균형재정수지 원칙은 OECD국가보다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표 6〉 차입규제

	금지	사전승인 의무화	특정목적 제한	제한없음
국가규정	Denmark local Korea local (current)	Canada local Japan(capital) Korea(capital, ~2005) Spain local(capital) Turkey local Greece local Ireland local Luxembourg local Mexico local United Kingdom local	Germany local Norway local Spain local(capital) Portugal local Canada local France local Hungary local Italy state and local Slovak Republic	Canada state Czech Republic local France local Netherlands local (current) Poland local
협상	Spain region (current)	Spain region(capital)		
자체규정			Switzerland state	Canada state

자료 : OECD(2005), p. 17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정에서의 중기재정계획제도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집행 후의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은 절차나 구체성 면에서 양호한 재정관리 예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증가로 인한 재정 경로의 복잡성은 재정규율과 같은 최소한의 교 통정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 이미 지 출이 예정 된 재원흐름을 일단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재정규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요구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재정규율제도의 실행을 위한 선행조치들로는 회계적 투 명성, 감시 및 보고절차의 적절성(Monitoring and reporting), 실현 가능한 제 재조치(Sanctions)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이 각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 는 데, 이는 정치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한 스위스의 사례 는 정치적 환경과 재정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Feld and Matsusaka(2003) 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의 스위스 Canton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서 직접주민투표를 실시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약 19% 정도의 지방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3. IMF 및 Worldbank

주요 국가들의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는 과다지출, 소득적 인 세율 인상, 이전재원 및 지방채 발행 급증 때문이다. IMF는 이에 대한 원인 으로 연성예산 제약, Common pool problem, 지역간 경쟁, 짧은 민선자치단체 장의 임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IMF의 재정관리의 유형은 4가지이며, 그 중에서 ‘관리절차 및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규율(Procedural and numerical)’ 을 통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 산과정에서의 중기재정계획제도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집행 후의 지방 재정분석진단제도 등은 절차나 구체성 면에서 양호한 재정관리 예에 해당한다. 그 밖에 행정규제(예: 한국), 시장원리에 따른 규제(예: 미국), 상호협조에 의한 규제(예: 스페인, 호주) 등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력과 세출부담이 비슷한 경우에는 자 치단체 스스로의 재정관리만으로도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수직 적 재정력 격차가 심한 경우,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매우 약한 반면, 세출부담이 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재원차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를 통한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Worldbank는 남미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는 신호체계(traffic light) 시스템 등의 조기경보지수 도입사례 분석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적 채무관리를 위한 DB 구축,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자치권 약화가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4. 미국의 정부간 재정위기 share 사례

본고에서는 미국의 주정부 재정위기 사례를 주목하고자 한다.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원이전은 삭감되었고, 지방정부로부터의 재분배 관련 사업을 떠맡게 된 주정부의 재정위기는 각 단계별 정부간 재정분담 내용과 재정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의 주정부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흑자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위축,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삭감, 노령인구 증가 및 health care 비용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분배 사업 이관, 일반보조금의 특정보조금으로의 전환 등은 주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991년 22개주가 당초 예측에 못 미치는 세입이 견혔고, 20개 주가 당초 예산보다 넘어선 지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¹³⁾. 그러나, 헌법적으로 미국의 주정부는 적자재정(deficit finance)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세율을 증가시키거나 세출을 삭감시키는 선택을 해야 했고, 1992년 세율 인상도 단행된 바 있다. 서베이 분석결과 세출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세입 증가가 재정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세출을 삭감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¹⁵⁾. Poterba(1994)는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분명할 때 공격적인 지출이 가능하여 적자재정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¹⁶⁾.

재정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간 기능배분도 이루어졌다. 하위정부로의 보조금 이전 방식은 일반보조금을 줄이고, 특정보조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이전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출기능 분담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의 주정부 사례에서는 정치적 환경, 헌법이나 법령 혹은 제도에 따라 주정부 재정 운영행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정부간 재정관계와 정치적 상황하에서 주정부가 재정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는 방식은 눈여겨 볼만하다. 1990년대 초반의 미국의 재정위기관리 제도(BBR, TEL 등)는 분

미국의 주정부 사례에서는 정치적 환경, 헌법이나 법령 혹은 제도에 따라 주정부 재정 운영행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Poterba(1994)

14) 이 시기 미국의 주정부들은 분식회계(cosmetic accounting)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적자 재정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15) Fisher(1988)

16) 또한, 주지자가 책임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다른 해보다 세출삭감이나 세율인상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는 등 정치적인 사이클과 예산 주기와의 관계 등도 나타났다(Alesina and Rosenthal(1994)).



채무규제는 세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본지출을 통한 지역투자에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재정규율이 강조되게 되면, 지방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명히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이 시기의 재정책임을 분담한 내용 등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5. 재정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문제점(tradeoff and side effect)

균형재정수지 원칙과 차입에 대한 조건은 해당 국가의 금융 여건에 따라 제도 실행의 진행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해당 국가들이 재정규율을 적용할 때, 적정 채무수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쉽지 않으므로 실행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경기 변화와 재정회계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경기순응적인 재정편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Levinson(1998)의 미국 주정부 자료분석 결과, 균형재정수지 원칙은 business cycle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규율이 강력해질수록 이에 맞추어 지방정부 회계연도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경기 변화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규제는 세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자본지출을 통한 지역투자에 제한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제한은 비효율적인 지방정부 씬씀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필요한 투자 자체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세입 및 세출 제한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출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정부가 할 수 없는 주요 공공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준 낮은 공립학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정규율이 강조되게 되면, 지방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Sharp and Elkins(1987)는 재정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 특별자치구(special districts)를 만드는 경우와, 공무원 임금수준에 대한 강력한 규율이 시행되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의 관리를 피하기 위한 각종 전략들을 지적하였다. 세입규율이 지나친 경우, 부담금 혹은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채무에 대한 개념이 복잡함을 이용하여 지방정부가 이에 적용되지 않는 중간단계의 정부에게 재정이전을 신청하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방정부는 자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규율은 지방정부 예산상에는 적용가능하나 법적으로 포괄하지 않는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off-budget 부분의 공공부분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게 된다(Von Hagen(2002)).

IV. 지방재정관리제도 현황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투융자심사제도가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계획에 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제도는 정치적 이용 목적이나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경우, 단년도 예산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의 중장기전망을 실시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국가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행 단계에서 단년도 계획의 5년 연장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간의 재정 경직성으로 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할 부분으로 파악된다. 투융자심사제도의 경우, 세출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으로 2002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시 차감하도록 하는 페널티제도는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사례로 해석된다.

사후적으로는 예산 집행 후에 지방재정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각 자치단체별 재정보고서 제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진단을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의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¹⁷⁾. 지방재정진단제도의 경우, 매년 개선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중심의 분석과 현금주의 체제 등의 제약으로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제시되고 있다(원윤희·임성일(2004)). 따라서, 이러한 재정결과에 따른 자치단체간 상대비교의 신중함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종합보고서에서는 자치단체의 등급별 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등 단순 지표분석의 한계를 의식해서 전체 자치단체별 순위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간에는 시도간, 시군구간 등에도 재정환경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실상 200여개 자치단체의 공감을 얻는 지표개발은 불가능하다. 재정공시의 의미는 결국 공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분석제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시기 및 공시방법의 구체화가 남아 있는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관리 제도는 예산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투융자심사제도가 있다. 사후적으로는 예산 집행 후에 지방재정진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7) 재정진단 실시 대상단체는 ①세입 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 예산의 기준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②결산상 세입실적인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사용한 자치단체, ③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현저히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사전 및 사후 재정관리는 OECD 기준에서도 상당히 앞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세권 제한이나 세출 제한 등 중앙집권적인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도별 규제 수준도 높은 편에 속한다.

V.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리 방향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분간은 지방정부 세출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기반이 약한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포함한 보다 능동적인 재원조달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재정 감시제도와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관리제도 등의 정비 또한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위험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진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동시에 중앙정부 또한 최종 재정위기의 책임자로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위험시 중앙정부(예산부처)의 최종 관리가 요구되므로 사실상 중앙정부 관점에서의 지방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전 및 사후 재정관리는 OECD 기준에서도 상당히 앞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세권 제한이나 세출 제한 등 중앙집권적인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도별 규제 수준도 높은 편에 속한다. 오히려, 연성예산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체 인센티브 노력이 약한 점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탄력세율 인하 경쟁, 지방채 발행 노력 저하 등은 자체 세원증가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최근의 재정압박 사례는 변화하는 재정수요의 내용을 정부단계별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현재로서는 부처 혹은 자치단체별 가용재원 규모조차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수요의 내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1. 통합재정 DB 구축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예산회계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사업별 예산체계 구축(복식부기 도입) 등 재정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재정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광역-기초 자치단체로의 재정흐름 및 사무구분, 부처간 중복사업 체크 기능 등은 여전히 미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포함한 통합재정 차원에서의 재정 DB가 우선되어야만, 정확한 재정상황을 예산부처에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간, 부처간 서로 다른 통계지표를 제시할 경우에는 정치적 파위에 의해 불합리한 재정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조기경보지수와 같은 위기관리시스템을 위한 전제로 현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2. Intergovernmental Risk Share : 정부간 재정부담 구체화

1998년 IMF 위기 당시 급격한 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세 지원수준은 감소시키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처예산으로 편성되는 재원이니 만큼 감소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직접지원은 기타 예산에 비하여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재정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 것이다. 국가적 재정위기 시에는 중앙 대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부담이 중앙정부에게 있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최종 책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면, 공공재 공급 증가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의 자본화(capitalization)는 존재하나, 채무로 인한 재산가치 감소의 자본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후생극대화를 얻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적정수준의 채무규모를 능가하는 규모가 될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수급자 증가로 인한 재분배 역할 강화는 중앙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자치단체 주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정부간 재정부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출사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간 세원 배분 및 보조금 배분에 앞서서 중앙과 지방과의 사무조정이 핵심사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2년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의료관련 사무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이관하는 등의 작업은 재분배관련 정책이 급증하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¹⁸⁾.

3. 지방정부 재정관리제도 및 관리주체 재정립

주요 선진국들의 분석에서 나타난 최종 재정관리주체는 예산부처(Ministry of Finance)이다. 재정관리의 피관리대상자는 관리기관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 때 능동적이고 정확한 자료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부세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며 이에 대한 배분은 행정자치부가 관리주체이다. 기타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예산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각 부처와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최종적인 재원배분

정부간 재정부담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출사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간 세원 배분 및 보조금 배분에 앞서서 중앙과 지방과의 사무조정이 핵심사안으로 판단된다.

18) Sorenson(2005)과 OECD(2007) Table 132 참고(부록)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전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력 격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실현가능하다.

은 예산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경우, 사업내용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재원은 예산처가 주무부처이다. 물론 최종적인 규모는 국회를 거쳐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종 결정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다. 실행단계에서는 정부 단계별 부담비율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여건은 사업 주무부처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후 관리제도에 해당하는 재정분석진단제도의 효과는 불분명한 것이 당연하다. 분석결과로 인한 재정인센티브와 관리주체 간에 연계성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는 지표분석 등을 통한 재정관리의 효과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자체 세원도 강력히 통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재정분석진단제도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논의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관리주체로서의 중앙부처는 해당 자원과의 연계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전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수직적 및 수평적 재정력 격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실현가능하다. 남미의 사례가 그러했고, 개발도상국들의 운영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정수요의 내용에 따라 이전재원제도의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OECD국가의 특정보조금 비중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방향은 일반보조금 형태인 교부금이 바람직한가, 특정사업 위주의 보조금 등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이고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대도시 자치구 재정위축 시에는 미시적인 조정(지방교부세의 사회투자 비용 비중 증가, 종합부동산세의 교육 및 사회투자 비중 증가, 광역-기초간 조정교부금비율 개선,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개선 등)을 통하여 개선효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보조금 정책의 개편이 요구된다.

5. 재정위기 중심의 구체적인 점검시스템 도입

Globalization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은 단순히 국내 경기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금융위기 시에 부담해야 할 재정부분 중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의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는

재정부담을 던지고 볼 수 있으나,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몫 또한 국민 모두의 부담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재정구조는 외부 경제충격에 대한 흡수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정부 위기 시 구제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제를 제도화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을 통해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예견되고 있지 않으나, 거시경제 위기 시의 대처에 대한 부담은 명확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국민의 동의에 따라 일시적인 대처방법이 사실상의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관리 위주의 재정진단에서 사전적인 재정위기 관리 중심의 구체적인 점검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후관리 위주의 재정진단에서 사전적인 재정위기관리 중심의 구체적인 점검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VI. 결론

본 분석은 우리나라의 재정위기를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단계별 상충되는 견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역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지방정부와, 예산은 있으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지원해야 좋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중앙정부와의 고민 내용의 불일치도 포함한다.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어떻게 중앙과 지방이 나누느냐가 관건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현행 지표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부분은 매년 조정을 통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된 재원의 관리는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정관리제도(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 심사제도 등) 또한 중앙집권적인 요소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채무발행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자치단체별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는 자료의 한계상 본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지방채무가 지방정부 지출에 미치는 위험적 요소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당분간은 사회투자관련 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아 지방채로 인한 재정위기 우려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부간 재정(중앙-광역-기초) 구조 면에서는 연성예산 제약으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재정관리 방안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정확한 재정수



요 파악을 위한 DB 구축, 세출사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정위험 부담의 구체화, 지방재정제도 개편, 정부간 재정관리효과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거시경제적 충격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위기 중심의 구체적인 점검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KIPF

<참고문헌>

주만수 · 임성일, 「지방채 발행의 적정규모와 상환능력」, 『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 제2호, 2004.12

Alesina, Alberto and Howard Rosenthal, *Partisan Politics, divided government, and the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4

Blochliger, Hansjorg, “Fiscal Equalization in OECD countries,” OECD, 2006

Capeci, John, “Local fiscal policies, default risk, and municipal borrowing co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3 North-Holland, 1994, pp. 73~89,

Fender, John and Peter A. Watt, “Should central government seek to control the level of local authority expenditures,?” *Fiscal Studies* Vol.23, No.2, 2002, pp. 265~285

Kiewiet R and K. Szakaly,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borrowing: An analysis of state bonded indebtedness,”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2, 1996, pp. 62~97

Laubach, Thomas,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OECD WKP49, 2005

Ma, Jun, and Hana Polackova Brixi, “Monitoring the fiscal risks of subnational governments,” PREM Notes No.6, Washington, DC: World Bank, 2002

Ma, Jun, “Monitoring local fiscal risks : Selected international experiences,” Working Paper, World Bank, 2000

Moak, L., *Municipal bond: Planning, sale, administration*, Chicago: 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 New, M., "Limiting government through direct democracy: The case of state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s," Cato Institute, Washington, D.C., 2001
- Poterba, James M., "State responses to fiscal crisis: The effect of budgetary institutions and polit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2, No.4 Aug 1994, pp. 799~821
- Sharp, Elaine B. and David Elkins, "The impact of fiscal limitation: A tale of seven cit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7, No.5 Sept-Oct, 1987
- Sorenson, Rune J., "Fiscal rules for sub-central governments—Norwegian perspectives," For presentation at the second meeting of the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8–9 September 2005
- Sutherland, Bouglas, Robert Price and Isabelle Jourmad, "Fiscal rules for sub-central governments : Design and impac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465, Dec. 2005(ECO/WKP(2005))
- Singh, Raja and Alexander Plekhanov, "How should subnational government borrowing be regulated?," IMF Working Paper 05/54, 2005
- Ter-Minassian, Teresa, and John Craig, "Control of subnational borrowing," *In Fiscal Fed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ed.) Teresa Ter-Minassian,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부 록>

<부표 1> 정부간 재정규모 증가율

(단위 : %)

연 도	GDP(A)	중앙재정 ^(B)	지방재정	중앙재정탄력성	지방재정탄력성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92	21.06	9.54	13.59	0.45	0.65
1993	13.95	11.58	11.87	0.83	0.85
1994	12.87	18.96	23.11	1.47	1.80
1995	17.04	18.59	17.52	1.09	1.03
1996	17.23	17.95	20.43	1.04	1.19
1997	12.48	18.83	17.54	1.51	1.41
1998	9.48	15.05	2.04	1.59	0.21
1999	-1.43	4.81	5.84	-3.36	-4.08
2000	9.38	6.86	6.09	0.73	0.65
2001	9.29	5.79	21.25	0.62	2.29
2002	7.51	-0.53	14.57	-0.07	1.94
2003	9.99	20.77	15.77	2.08	1.58
2004	5.91	5.62	4.07	0.95	0.69
2005	7.55	8.30	5.33	1.10	0.71
2006	3.99	9.57	9.89	2.39	2.47

자료 : 1) 통합재정규모=경상지출+자본지출+순용재(용자지출-용자수입)
 1. 1991년~2005년까지의 지방재정자료는 『지방재정연감』의 순계결산자료임
 2. 2006년 지방재정자료는 『2007 자치단체예산개요』의 순계예산에 해당함
 3. 『지방재정연감』 총괄자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있음.

<부표 2> 연도별 지방채발행(순계규모)

(단위 : 억원, %)

연도별	총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규모	지방채	의존률	규모	지방채	의존율	규모	지방채	의존율
2001	939,956	32,163	3.4	714,607	8,147	1.1	225,349	24,016	10.7
2002	1,105,078	37,517	3.4	845,082	5,732	0.7	259,996	31,785	12.2
2003	1,227,260	28,358	2.3	965,040	5,556	0.6	262,220	22,802	8.7
2004	1,258,435	34,760	2.8	972,310	5,856	0.6	286,125	28,904	10.1
2005	1,070,625	35,813	3.3	836,437	10,291	1.2	234,188	25,522	10.9
2006	1,013,522	33,232	3.2	786,877	6,540	0.8	226,645	26,692	11.8

주 : 2004년도까지는 결산액, 2005년도 최종예산액, 2006년도 당초예산액
 자료 :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이산선택모형 (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¹⁾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min@kjpf.re.kr)

I. 도입

본 연구의 목적은 담배제품의 특성(characteristics)을 고려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다. 여기서 특성이란 제품 간에 서로 차별화된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담배제품의 경우 맛, 타르 함유량, 담배의 굵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시장을 두고 몇몇 공급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 제품의 차별화는 가격 정책과 별도로 자사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담배 수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품 간 특성의 차이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차별화가 최근 국내 담배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고려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순수하게 동질적인(homogeneous) 재화 또는 서비스가 거래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원유 또는 1차금속과 같이 대체로 동질적으로 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만약 순도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차별화된 상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시장을 동질적인 상품시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별화된 상품시장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결국 연구의 목적과 그에 대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외국제조업체의 국내생산 허용 등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의 변화는 제품의 다양

본 연구에서는 상품의 차별화가 최근 국내 담배시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고려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1) 이 원고는 BLP모형을 이용하여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을 감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화를 촉발시켰으며 담배제품이 차별화된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많이 갖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rry, Levinsohn, and Pakes(1995)(이하 BLP로 칭함)가 제시한 차별화된 상품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II. 담배제품 수요에 대한 기존 연구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 및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 주요한 이유는 흡연이 본인 및 주변인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이로 인하여 흡연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연 유도 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의 효과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높다면 주어진 가격 인상은 흡연량의 유의미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격 인상 사례는 2004년 12월 담배 1갑당 세금 및 부담금을 500원 정도 인상하였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500원 정도의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을 2005년부터 다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을 감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세금 및 부담금 인상은 주로 세수확충에 목적이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을 감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다시 말하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대한 논란은 체계적인 방법론과 실증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담배 수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시작되어 가격, 소득, 광고가 담배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으며, 매우 많은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다²⁾. 실증 연구에 따른 가격탄력성에 대한 추정치는 모형과 자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0.5~-0.3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haloupka and Warner 2000). 또한 최근 중요하게 연구되는 주제는 중독현상(addiction)을 합리적인 소비자의 행동과 조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의 개발로

2) Gallet and List(2003)은 500개가 넘는 실증 연구 결과를 이용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격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추정치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Gallet and List(2003)에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서, 이러한 모형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담배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실증연구가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간단히 살펴본다³⁾. 우선 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담배의 수요가 가격 상승에 대하여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가격과 수요량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품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흡연 감소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담배 소비의 중독성을 매우 강조하는 견해에 따르면 흡연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건강에 대한 관심의 강화, 동료 및 가족의 압박 등이며 가격 인상의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도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가격탄력성의 크기가 얼마인가라는 것이다. 추정치는 연구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국내 연구의 경우 대체로 -0.6~ -0.2 범위 내의 값을 나타내었고, 이는 해외 연구와 비교할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연구의 가격탄력성 추정값을 살펴보면 안중석(1996)은 -0.46, 김성준(2002)은 -0.27, 김원년·서정하·김양중(2006)는 -0.39, 이명현·성명재(2002)는 -0.05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를 분석대상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담배판매량에 대한 집계변수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안중석(1996), 김성준(2002), Kim and Seldon(2004)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가계조사 중 담배류에 대해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서 이명현·성명재(2002), 김원년(2004), 김원년·이충열(2002)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담배 소비에 대한 별도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 인상 전후의 소비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서 김원년·서정하·김양중(2006)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담배시장을 동질적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담배제품에 대한 물가지수를 가격변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담배시장에서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동질적인 재화 시장으로 보기에 곤란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도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3) 그 외에도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흡연 감소의 원인 및 가격 인상의 효과를 평가해보려는 노력이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금연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3천원 이상일 경우 11%, 4천원 이상은 6%, 5천원 이상 22%, 6천원 이상 27%가 담배를 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2006년 보건복지부(갤럽)의 조사 중 금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61.8%), 가족을 위해 (8.6%), 경제적 이유 (6.1%), 위생상의 문제 (4.8%), 사회적 분위기 (4.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까지도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던
KT&G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7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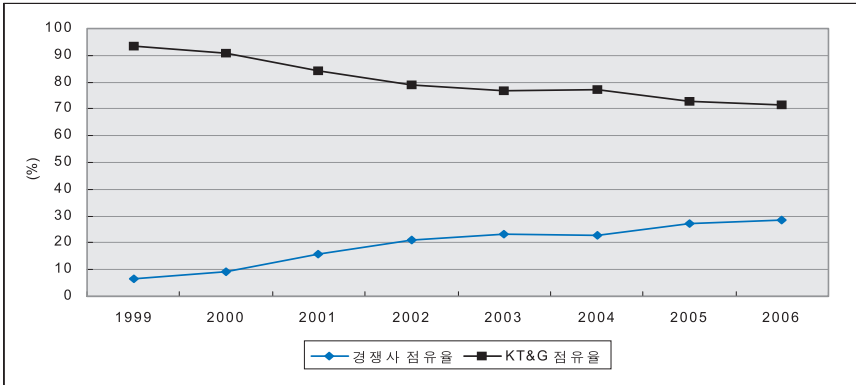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 담배산업의 주요 현황

2000년대 이후 담배제조업의 변화는 민영화 및 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의 강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정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외제 담배가 수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지만, 국내산 담배와 외제 담배 사이의 유의미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1년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담배인삼공사가 국내 담배 생산을 독점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담배인삼공사가 의무적으로 국내산 잎담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외국계 담배제조사들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에 정부지분을 매각 완료하여 민영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담배제품은 KT&G,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그리고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라는 네 개의 생산자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다. 담배제품은 제조사보다는 제품군을 나타내는 브랜드 이름으로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생산자별 제품군을 살펴보면, KT&G는 에쎬, 타임, 레중, 더원 등을 생산하고,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는 던힐(Dunhill), 켄트(Kent), 피네스(Finesse), 쿨(Kool)을 제조한다. 필립모리스는 엘란(Elan), L&M, 라크(Lark), 말보로(Marlboro)를 생산하며, JTI는 마일드세븐(Mild7), 살렘(Salem), 윈스턴(Winston)의 제조업체이다.

[그림 1]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KT&G와 경쟁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까지도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던 KT&G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7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KT&G 시장점유율의 감소는 그대로 외국계 경쟁사의 점유율 상승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KT&G가 국내 담배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배산업에 점차로 유의미한 경쟁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KT&G 및 경쟁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가 담배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담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변경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한다.

KT&G의 민영화 및 외국계 업체의 국내 생산과 더불어 담배제품의 가격도 제조업자가 결정하여 정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담배가격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담배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을 변경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자의 담배제품에 대한 가격매기기(pricing)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이외에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안정화기금 등 2,500원 한 갑에 대하여 약 1,543원으로 소비자가격의 약 62%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자세한 내역은 <표 1> 참조). 한편 2006년 국내 총담배 판매량은 877억본이므로, 간편하게 20개비 1갑 2,500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총액수는 6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관세로부터의 수입과 유사한 규모로서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제조담배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10% (단 특수용담배는 면세)						
	구분	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안정화기금
기타 제세 및 부담금	200원 초과	1,338원	641원	321원	7원	354원	15원

자료: KT&G 사업보고서

담배관련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 재

최근 국내 담배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의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 확충을 목적으로 담배 관련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세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종전 전매익금에 대한 일부를 담배판매세로 과세하던 것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에 신설되었으며, 담배소비세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2000년 2조 3천억원이던 것이 2005년 2조 4천억원으로 약간 늘어났다. 반면 2000년 이후 지방세수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6.8%를 기록하였다.

〈표 2〉 담배소비세 징수액 및 지방세에서의 비중

(단위 : 10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담배소비세	2,251	2,509	2,238	2,384	2,722	2,448
(비율)	(10.9)	(9.4)	(7.1)	(7.2)	(8.0)	(6.8)
지방세 합계	20,601	26,665	31,526	33,132	34,202	35,977

자료: 『지방세정연람』

최근 국내 담배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의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3〉은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국내 담배 총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판매량이 1,049억본이던 것이 이후 1,000억본 미만으로 낮아져서 2006년에는 877억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이 알려지면서 미리 담배를 구매하여 보관하려는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2005년 판매량이 급감한 것도 역시 2004년 말에 집중적으로 구매하여 보관되던 제품이 유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정상적이라고 보이는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담배시장의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규모의 정체 및 감소가 발생한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또한 흡연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흡연량을 줄이거나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담배 국내 총 판매량

(단위 : 억본)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판매량	957	1049	989	920	969	1065	823	877

자료: 재정경제부

담배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된 것은 바로 시장규모의 정체와 더불어 규제 완화로 인한 신규 경쟁자의 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상품시장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치열한 경쟁 상황은 공급자들이 상품을 차별화할 유인을 매우 증가시키게 된다. 상품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낮추어서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신규 경쟁자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의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그룹을 유지하고, 가격-비용 마진을 지속시킬 수 있다.

담배산업에서 상품의 다양화 현상은 민영화 이후 KT&G의 전략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2002년 민영화 완료 이후 첫 해인 2003년 KT&G의 연차보고서에서는 자사의 전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이윤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제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또한 전략적 브랜드에 집중하도록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이윤이 남지 않는 브랜드의 생산을 점차 줄여나간다. (중략) 또한 우리는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저타르 제품과 슬림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증가하는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금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시장 연구에 기초하여 최적 가격 전략을 추구해나갈 것이다.”⁴⁾

즉, 마진이 높은 고품질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구성을 변화하는 것을 주된 전략방향으로 정하였는데, 고품질 상품의 구체적 특성은 바로 타르 함유량이 낮은 제품과 담배 개비의 직경이 작은 슬림형 담배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것은 이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대상으로 1999년, 2002년, 2005년의 3개 연도에 판매된 담배제품에 대해서 판매량으로 가중 평균한 타르 함유량, 슬림형 제품의 비율, 그리고 상품 수를 보고하였다. 평균 타르 함유량은 1999년 6.31mg이던 것이 2002년에는 5.88mg로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4.13mg으로 대폭 낮아졌다. 특히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의 변화폭이 두드러졌다. 슬림형 담배가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0.19%에서 2005년에는 0.36%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판매된 상품의 수에 있어서도 1999년 57개, 2002년 61개이던 것이 2005년 83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상품의 고급화 또는 다양화로 정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2002년 KT&G 민영화 이후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담배산업에서 상품의 다양화 현상은 민영화 이후 KT&G의 전략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본문에 인용된 것은 영어로 된 원문을 저자가 번역한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will continue to introduce differentiated brands that offer high profit margins and meet consumer demand for high quality products. Moreover, the restructuring of our product portfolio to focus on strategic brands will include the gradual phasing out non-profitable brands. (중략) Furthermore, we will be responsive to market demands, and continue to develop brands that meet consumers’ increasing preference for low-tar and slim-type cigarettes. We will also seek optimal pricing strategy based on market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effects of tax increases on consumption.” (KT&G 2003년 Annual Report)



KT&G 제품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1990년대 말에 다른 외국 브랜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던 것이 뚜렷하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특징이다.

〈표 4〉 주요 특성의 변화

(단위 : mg,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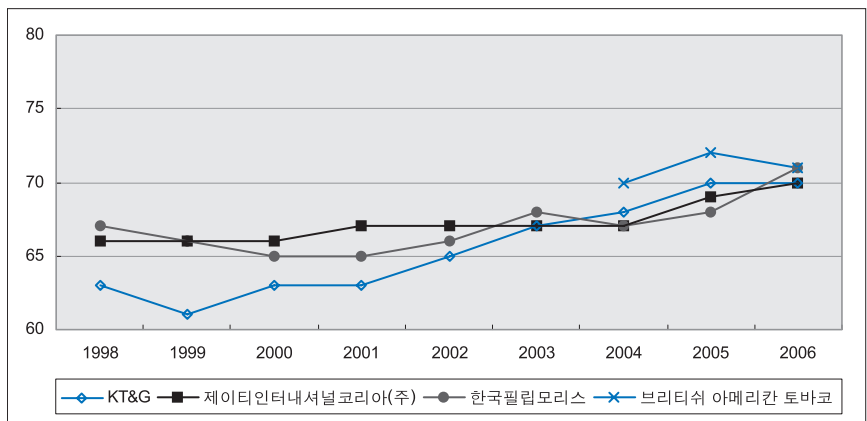
	평균 타르 함유량 ¹⁾	슬림형의 비율	상품수
1999년	6.31	0.19	57
2002년	5.88	0.30	61
2005년	4.13	0.36	83

주: 1) 판매량으로 가중 평균한 값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담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한 결과로서 매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하는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에서 KT&G 및 주요 경쟁사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로 나타낸 자료이다.

[그림 2]에서는 국내에 담배제품을 공급하는 네개 회사 제품에 대한 NCSI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2000년 이후 모든 제조사 제품에 대해서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G 제품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1990년대 말에 다른 외국 브랜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던 것이 뚜렷하게 상승하여 최근에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특징이다. 물론 NCSI 지수가 증가한 것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림 2]의 결과는 앞서 설명한 담배 시장에서 2000년 이후 상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 된다.

[그림 2] 제조사별 담배 제품에 대한 NCSI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IV. BLP모형을 이용한 담배 수요 추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Berry, Levinsohn, and Pakes (1995)에 의하여 제시된 것으로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 개별 제품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가격, 판매량, 제품 특성에 대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추정모형이 과점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에 대한 경제이론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교적 구하기 용이한 제품 수준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제품별 교차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로 받아들여져서 자동차, 시리얼, 영화,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시장의 수요 추정에 성공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BLP(1995) 또는 Nevo(2000)을 참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간단한 내용만 소개하고자 한다.

BLP 모형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이루어진다. 우선 첫 번째는 제품을 특성의 묶음으로 파악하고 이산선택모형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의 경우 각 제품을 엔진출력, 무게, 연비, 크기 등의 정해진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담배의 경우 타르 함유량, 맛, 굵기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BLP 모형의 두 번째 요소는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제품의 특성이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 변수의 내생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제품을 몇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특성에 대해서 자료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행동에, 또한 결국 기업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생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단위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비교적 덜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으나, 제품단위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모형을 선형화하여 도구변수로 추정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Berry 1994). 흔히 사용되는 도구변수로는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의 특성 변수, 경쟁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 변수인데, 유사한 경쟁제품이 많으면 가격-비용 마진이 낮아지며, 반대의 경우 마진이 높을 것이므로 경쟁제품의 특성변수가 가격에 대한 도구변수로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일반적인 로짓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간 교차탄력성에 대해 매우 제약적인 가정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제품이라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상품 간에는 대체성이 높아서 교차탄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로짓모형은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차탄력성은 시장

BLP모형은 차별화된 상품시장에서 개별 제품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가격, 판매량, 제품 특성에 대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상품의 특성은 연구자에게 관찰되는 특성과 관찰되지 않는 특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찰되는 특성은 타르 함유량, 멘솔 더미변수, 슬림형 더미변수, 그리고 상수항이다.

점유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BLP모형에서는 확률 계수(Random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여 유사한 상품과 대체관계가 높도록 허용하였다.

실제로 추정에 사용된 모형은 아래와 같다. ε_{ijt} 와 v_i^k 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소비자 i 는 상품의 특성(x_{jt}^k, ξ)을 고려하여 담배제품 0, 1, 2, ..., j 중 가장 높은 u 를 가져오는 j 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형된다. 여기서 $j=0$ 은 비흡연을 의미한다.

$$u_{ijt} = \alpha p_{jt} + \sum_k \beta^k x_{jt}^k + \sum_k v_i^k \sigma^k x_{jt}^k + \xi_{jt} + \varepsilon_{ijt}, \quad j=1, 2, \dots, J$$

$$u_{i0t} = \xi_{0t} + \varepsilon_{i0t}$$

상품의 특성은 연구자에게 관찰되는 특성(x^k)과 관찰되지 않는 특성(ξ)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찰되는 특성은 타르 함유량, 멘솔 더미변수, 슬림형 더미변수, 그리고 상수항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 담배제품 특성의 주요한 변화가 타르함유량 감소와 슬림형 담배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성 변수의 선택은 간단하면서도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였다. β^k 는 특성 x^k 에 대한 평균적인 소비자의 선호로 볼 수 있으며, σ^k 는 그 특성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 사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즉 특성에 대한 한계효용이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모형이 제품 간의 대체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β^k 가 커질수록 특성 x^k 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σ^k 가 커져도 특성 x^k 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σ^k 가 커진다는 것은 특성 x^k 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이를 더 좋아하게 되고, 본래 싫어하는 소비자는 더욱 싫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제품 중 오직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주는 제품만이 수요로 이어지므로, 이미 싫어하던 제품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어 수요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σ^k 가 커질 경우 x^k 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이 특성 x^k 가 높은 상품의 수요를 늘리는 효과만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β^k 와 σ^k 모두 x^k 가 높은 상품의 수요를 늘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β^k 의 경우 모든 소비자가 수요를 늘리는 반면, σ^k 의 경우 일부 소비자에 의해서만 수요가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β^k 와 σ^k 의 역할의 차이는 제품간 대체 패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타르함유량에 대한 β 는 0에 가까우나 σ 가 큰 경우, 타르에 대한 선호가 강한 일부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타르제품을 선호할 것이므로 고타르제품 간의 교차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반면 β 는 크지만 σ 가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고타르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이동이 다른 제품에 골고루 나누어지게 되어 고타르제품 간의 교차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이다.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⁵⁾. 우선 ε_{ijt} 와 v_i^k 의 분포를 가정하고, 주어진 파라미터 값에 대해 위의 모형은 담배제품 j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예측할 수 있다. 추정 과정은 결국 이렇게 모형이 예측하는 시장점유율과 실제 관찰된 시장점유율을 같게 만드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을 위한 조건은 도구변수와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직교한다는(orthogonal) 가정으로, 도구변수는 BLP(1995)와 마찬가지로 특성 변수, 같은 회사 다른 제품 특성 변수의 합, 경쟁 회사 제품 특성 변수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담배제품의 연간 판매량, 가격, 그리고 타르 함유량, 맛 등 특성에 대한 변수이다. 표본에는 각 연도에 대해서 연간 판매량이 0 이상인 제품만을 포함하여 전체 225개의 담배제품에 대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 중 흡연자의 비율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3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해당 자료가 없는 2004년과 2005년에 대해서는 2003년 및 2006년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모형에 따라 삽입(interpolate)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5>에 보고하였는데 마지막 열의 BLP가 위에서 설명한 모형의 추정결과이고, 비교를 위하여 LOGIT-OLS와 LOGIT-IV 결과를 제시하였다. LOGIT-IV는 BLP 모형에 $\sigma^k = 0$ 이라는 추가적 제약을 둔 추정결과로 볼 수 있으며, LOGIT-OLS는 $\sigma^k = 0$ 이면서 가격을 외생변수로 간주한 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마지막 열의 BLP 결과를 보면, 타르 함유량은 평균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떨어뜨리며, 소비자 간에 타르함유량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멘솔향과 슬림형 담배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비자에게 매우 높은 효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특성이 높은 제품 간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BLP 결과가 의미하는 menthol과 slim에 대한 β 및 σ 의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가 다소 크다는 점은 추정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타르 함유량은 평균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떨어뜨리며, 소비자 간에 타르함유량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5) 추가적 설명은 부록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LP(1995)와 Nevo (2000)를 참조.



모든 담배제품 가격이
100원 증가할 경우를 기준으로
흡연율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약 -0.36로 나타났다.

판단된다.

〈표 5〉 추정 결과

파라미터	변수	LOGIT-OLS	LOGIT-IV	BLP
α	price(천원)	-1.8397 (0.4057)	-1.9214 (0.7324)	-2.3581 (0.1242)
β 's	tar(mg)	-0.3353 (0.0863)	-0.3383 (0.0893)	-0.2875 (0.0868)
	menthol	-0.0348 (0.5494)	-0.0419 (0.5520)	-23.2269 (0.4451)
	slim	1.4291 (0.4452)	1.4437 (0.4583)	-24.6740 (0.3673)
	constant	-2.2045 (1.0522)	-2.0182 (1.7450)	-11.0168 (0.6923)
σ 's	tar(mg)			0.0514 (0.5413)
	menthol			15.5358 (1.1891)
	slim			24.6589 (2.1734)
	constant			17.8116 (8.8941)

주: 1. LOGIT-IV는 $\sigma^k=0$ 이라는 제약을 둔 모형의 추정결과이며, LOGIT-OLS는 $\sigma^k=0$ 이면서 가격을 외생변수로 간주한 모형의 추정결과.

실제로 제품 간 대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2005년의 경쟁 상황을 가정하고 각 제품의 가격을 100원 증가시켰을 때, 이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변화하는 정도(%)를 추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보았다. 〈표 6〉에서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체품이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증가하여 개별 대체제의 수요가 바뀌는 효과는 비교적 작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의 결과를 모든 제품에 대해서 구하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100원 상승하였을 경우 흡연율에 미치는 효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담배제품 가격이 100원 증가할 경우를 기준으로 흡연율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약 -0.36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증가(100원)가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효과

(단위: %p)

	라일락	디스	디스+	에썬 Lts	심플	레종	에썬 One	더원	Dunhill 1mg	Dunhill Lts
라일락	-0.0441	0.0000	0.0006	0.0000	0.0056	0.0000	0.0000	0.0001	0.0001	0.0021
디스		-0.0435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64	0.0000
디스+			-0.0664	0.0000	0.0084	0.0000	0.0000	0.0001	0.0002	0.0033
에썬 Lts				-0.0001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심플					-0.5019	0.0000	0.0000	0.0008	0.0020	0.0276
레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에썬 One							-0.0041	0.0000	0.0000	0.0000
더원								-0.0063	0.0000	0.0003
Dunhill 1mg									-0.0417	0.0009
Dunhill Lts										-0.2142

추정 결과에 따르면 슬림형 담배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제품 간 대체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다.

V. 요약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담배제품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상품시장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BLP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슬림형 담배에 대한 선호가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제품 간 대체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율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약 -0.36임을 발견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 결과와 제품 간 대체패턴을 간단하게 보고하였으나, 추가로 정책실험 및 평가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자면, 우선 상품의 품질 개선 또는 신제품의 도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 가치란 신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의 합과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변화가 제품별 수요 및 전체 담배 제품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요추정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언



본고에서는
무엇보다 담배 소비의
중독성으로 인한 비탄력적
수요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것이다.

급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담배 소비의 중독성으로 인한 비탄력적 수요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모형 내에 흡연 습관의 지속을 어떤 식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독성이 매우 중요하다면 기존 흡연자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변화가 별로 없을테고, 비흡연자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중독성으로 인한 효과로 가격상승이 가격에 미친 효과가 단기와 장기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 연구의 실증모형은 이러한 구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 만약 이러한 고려가 담배 수요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 이 연구에서 추정한 가격탄력성을 해석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 및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KIPF

<참고문헌>

김성준,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억제정책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3호, 2002.

김원년, 「도시가구의 인구학적 특성별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 2004.

김원년 · 이충열, 「한국 도시가구의 담배소비와 보건의료지출: 가구 특성을 감안한 수요체계적 분석에 의한 가격탄력성 추정시도」,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 2002.

김원년 · 서정하 · 김양중, 「담배가격인상이 흡연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29권 제2호, 2006.

안중석,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명현 · 성명재,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한국조세연구원, 2002

Berry, S., “Estimating Discrete-Choice Models of Product Differenti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25, 1994.

Berry, S., J. Levinsohn, and A. Pakes, “Automobile Prices in Market Equilibrium,” *Econometrica* 63(4), 1995.

Chaloupka, F. and K. Warner, “The Economics of Smoking,” *The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2000.

Gallet, C. and J. List, “Cigarette demand: a meta-analysis of elasticities,” *Health Economics* 12, 2003.

Kim, S. and B. Seldon, “The demand for cigarett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y to lower cigarette consumption,”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2(2) 2000.

Nevo, A., “A Practitioner’s Guide to Estimation of Random-Coefficients Logit Models of Demand,” *JEMS* 9(4), 2000.

<부록> 추정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추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소비자 선택모형이 의미하는 시장점유율 함수 $s(\cdot)$ 의 역함수를 이용, 추정모형을 선형화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과, 시장점유율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적분을 하는 과정에 시뮬레이션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BLP(1995)에 따라서 ε 은 Type I extreme-value 분포, v 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정의된 효용함수에서 모든 소비자에 대해서 공통인 부분을 - 평균효용(mean utility)을 -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delta_{jt} = \alpha p_{jt} + \sum_k \beta^k x_{jt}^k + \xi_{jt} \quad (A-1)$$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u_{ijt} = \delta_{jt} + \sum_k v_i^k \sigma^k x_{jt}^k + \varepsilon_{ijt} \quad (A-2)$$

이 때 $0, 1, \dots, J$ 의 상품 중 j 로부터 얻는 효용이 가장 높은 소비자의 집합을 편의상 다음에 정의한 A_j 로 나타낼 수 있으며,

$$A_j(x_t, p_t, \delta_t : \sigma) = \{(v_i, \varepsilon_{i0t}, \dots, \varepsilon_{ijt}) \mid u_{ijt} \geq u_{irt}, \forall r = 0, 1, \dots, J\} \quad (A-3)$$

ε 과 v 의 분포에 대해 주어진 가정을 이용하여 A_j 에 해당하는 확률, 즉 상품 j 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함수 $s(\cdot)$ 를 구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단 함수 $s(\cdot)$ 에 대한 closed-form 해가 없으므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함수



값을 계산한다.

$$s_{jt}(x_{jt}, p_{jt}, \delta_{jt} : \sigma) = \int_{A_{jt}} dP_{\varepsilon}(\varepsilon) dP_{\nu}(\nu) \quad (A-4)$$

여기서 함수 $s(\cdot)$ 가 실제 관찰된 시장점유율 S 값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평균 효용 δ 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점유율 함수 $s(\cdot)$ 의 역함수 $\delta(S)$ 로서 관찰된 시장점유율 S 가 의미하는 해당 상품의 평균효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자료 (p, x, S) 그리고 파라미터 $\theta = \{\alpha, \beta, \sigma\}$ 에 대해서 ω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omega_{jt} = \delta(S_{jt} : \sigma) - (\alpha p_{jt} + \sum_k \beta^k x_{jt}^k) \quad (A-5)$$

이는 (A-1)에 따라 상품 j 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 ξ 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추정을 위한 조건은 도구변수 Z 와 관찰되지 않는 특성이 orthogonal하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hat{\theta} = \arg \min_{\theta} \omega(\theta)' Z \Lambda^{-1} Z' \omega(\theta) \quad (A-6)$$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kimjaej@kipf.re.kr)

I.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1999년부터 실시된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 복권제, 예산지출 증빙제도 등 정부 주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깡, 수수료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최근 이슈는 가맹점수수료가 영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거래에서 신용카드거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가맹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수수료를 부담함에 따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은 카드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가져왔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카드발급사는 소수인 반면, 대다수의 국민이 신용카드를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영세가맹점은 협상력의 부재와 경쟁제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수료 책정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인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반면, 영세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가맹

신용카드와 관련한
최근 이슈는 가맹점수수료가
영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 신용카드채권
매입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시장경쟁체제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카드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접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기를 원하지만 수단이 없다. 가맹점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도 없으며, 수수료를 감안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현금과 차별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정부가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시장에 개입하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수수료 책정시 보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카드시장에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안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문 신용카드채권 매입사의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하여 수수료 책정시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경쟁력을 촉진하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전문 신용카드채권 매입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시장경쟁체제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카드산업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신용카드 사용실적

1. 거래실적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현금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1999년에는 약 90조 7,800 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약 622조 9,10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그 후 경기침체로 2003~2004년에는 감소하였고, 2005년부터 다시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6년에는 약 368조 2,700억원을 기록하였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이용실적은 1999년에는 42조 6,300억원이었으나, 그 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약 174조 500억원을 기록하였고, 2003~2004년에는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214조 8,200억원을 기록하였다¹⁾.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1999년 9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2000년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총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매출이 차

1)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물품 구매대금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는 15.57%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47.3%까지 증가하였다²⁾.

〈표 1〉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추이

(단위 : 천억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이용금액(A)	907.8 (42.8)	2,249.1 (147.7)	4,433.7 (97.1)	6,229.1 (40.5)	4,805.4 (-22.9)	3,578.5 (-25.5)	3,638.2 (1.7)	3,682.7 (1.2)
이용금액(B) ¹⁾	426.3 (38.3)	778.7 (86.7)	1,342.3 (72.4)	1,740.5 (29.7)	1,705.3 (-2.0)	1,671.0 (-2.0)	1,904.7 (14.0)	2,148.2 ¹⁾ (12.8)
민간소비지출(C)	2,749.3	3,123.0	3,434.1	3,810.6	3,891.7	4,007.0	4,246.3	4,538.7
A / C	47.0	34.6	30.3	163.5	123.5	89.3	85.7	81.1
B / C	15.5	24.9	39.1	45.7	43.9	41.7	44.8	47.3

주: 1)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 제외(기업구매카드제도 2000년부터 도입)
 1. () 안은 전년대비 비중임.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에 있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가맹점이 약 465만개였으나,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04만개에 이르렀다.

2. 가맹점 수

신용카드 가맹점 수에 있어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가맹점이 약 465만개였으나,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04만개에 이르렀다³⁾. 가맹점의 증가율을 보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전인 1998년에는 9.2%였으나, 그 후 1999~2001년에는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였고, 2005년만 예외적으로 5.7%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기간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2001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46.5%나 증가하였다.

3. 카드발급 수

카드발급 수는 1990년도에는 약 1천만장을 약간 초과한 정도였다. 1998년, 1999년 연속으로 카드발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0년부터 매년 50% 정도씩 증가하였으나 2002년 카드대란 이후 감소하였다가 2006년 소폭 증가하였다. 2005년 기준 카드발급 수는 8,290만매에 이르렀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9,114만매에 이르렀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1990년도 초반까지는 0.6매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4.6매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도 신용카드사의 건전

2)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1999년에는 47.0%이던 것이 2006년 말에는 81.1%까지 증가함.
 3) 2005년도에만 예외적으로 소폭으로 감소.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수는 2002년에는
4.6매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 다시 소폭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3.8매에 이르렀다.

성 강화 정책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 다시 소폭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3.8매에 이르렀다.

〈표 2〉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실적

	카드수 (천매)	가맹점 (천점)	이용금액(천억원)			
			일 반	할 부	현금서비스	합 계
2000	57,881 (48.4)	8,611 (39.1)	556 (24.7)	240 (10.7)	1,453 (64.6)	2,249 (100)
2001	89,330 (54.3)	12,617 (46.5)	1,284 (29.0)	474 (10.7)	2,676 (60.4)	4,434 (100)
2002	104,807 (17.3)	15,612 (23.6)	1,920 (30.8)	732 (11.8)	3,577 (57.4)	6,229 (100)
2003	95,517 (-8.9)	16,949 (8.6)	1,907 (39.7)	504 (10.5)	2,375 (49.8)	4,786 (100)
2004	83,456 (-16.0)	17,095 (8.6)	1,884 (52.6)	418 (11.7)	1,276 (35.7)	3,578 (100)
2005	82,905 (-0.7)	16,124 (-5.7)	2,134 (58.6)	452 (12.4)	1,052 (12.4)	3,638 (100)
2006	91,149 (9.9)	17,037 (5.7)	2,277 (61.8)	490 (13.3)	916 (24.7)	3,683 (100)

주: 1. 카드수와 가맹점항목의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이용금액의 () 안은 총 신용카드 이용액 중 신용카드 거래종류별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여신금융협회, 내부자료

〈표 3〉 인구 대비 신용카드 소지 추이

	추계인구(A) (천명)	경제활동인구(B) (천명)	카드수 (천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 수(매)
1990	42,869	18,539	10,384	0.6
1991	43,296	19,048	12,099	0.6
1992	43,748	19,426	14,705	0.8
1993	44,195	19,803	19,401	1.0
1994	44,642	20,326	25,314	1.2
1995	45,093	20,797	33,278	1.6
1996	45,545	21,188	41,113	1.9
1997	45,991	21,604	45,705	2.1
1998	46,430	21,390	42,017	2.0
1999	46,858	21,143	42,299	2.0
2000	47,275	21,950	57,881	2.6
2001	47,343	22,181	89,330	4.0
2002	47,640	22,877	104,807	4.6
2003	47,925	22,916	95,517	4.1
2004	48,082	23,370	83,456	3.6
2005	48,294	23,743	82,905	3.5
2006	48,497	23,978	91,149	3.8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연도,
여신금융협회, 내부자료

Ⅲ. 우리나라 신용카드산업의 특징

1.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국민의 정부’ 동안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내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였다.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복권제,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개정 등의 정책에 힘입어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거의 시장 포화점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이면에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카드 남발, 소비자의 무절제한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신용대란을 야기했고, 최근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가맹점은 제도적으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는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답습된다고 판단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과다한 수수료 부담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어 현행 수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이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없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카드발급사가 매입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제한되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의하면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비싸다고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할 수 없으며, 수수료를 감안하여 현금결제와 차별하여 가격을 올려받을 수도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시장에서 경쟁이 작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매입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 방안이 도입되는 경우 가맹점은 복수의 신용카드채권매입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매입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체제는 신용카드사 집단과 매입사 집단 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게 되어 신용카드산업을 더욱 경쟁적인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도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수의 매입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되는 경우 가맹점은 복수의 신용카드채권매입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매입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3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카드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위 4개 회사가 전체시장의 약 50%에 달하는 과점적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2. 과점적 산업구조

신용카드 사업자는 현재 신용카드전업사 6개, 겸업은행 15개 등 총 21개이다. 신용카드 총 사업자는 1997년 말 기준으로 8개 전업사, 29개 겸업은행 등 37개사에 달하였으나, 1998년 이후의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6개사가 감소하였다⁵⁾.

카드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위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50%에 달하는 과점적 경쟁(Oligopolistic Competition)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1987년 5월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래 은행계를 제외하고는 신규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1990년대 상반기 이후 카드발급 수 및 이용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카드사의 시장진출은 제한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삼성, LG, 국민, 외환카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집중률은 카드 수 기준으로 53.6%, 이용금액 기준으로 47.1%를 차지한다⁶⁾.

〈표 4〉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단위 : 개)

		사업자수	사업자명
신용카드사	은행계	3	BC, 신한, 산은캐피탈
	기업계	3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계	1	외환
겸업은행	국민카드계	3	국민, 농협(구 축협), 한국씨티(구 한미)
	신한카드계	4	제주, 수협, 전북, 광주
	비씨카드 회원	11	기업, 국민(구 주택), 농협, 제일, 하나, 우리, 대구, 부산, 경남, 한국씨티(구 경기), 신한(구 조흥)

주: 중복 제휴은행 3개사: 국민, 농협, 한국씨티
산은캐피탈: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 1. 25)

하나은행: 구 충청, 구 서울 포함

자료: 여신금융협회, 내부자료.

〈표 5〉 신용카드시장의 시장집중률 현황

(단위 : %)

	삼성	LG	국민	외환	집중률(CR3)	집중률(CR4)
카드 수	17.1	19.9	12.0	4.6	49.0	53.6
이용액	10.7	15.5	16.7	4.2	42.9	47.1

주: 1. 카드 수, 이용액은 2006년 말 기준임

2. CR 3=삼성+엘지+국민, CR4=CR3+외환

3. 일반적으로 CR3(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CR4가 40~60%의 수준을 보이면 과점적 구조로 판단됨.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내부자료.

5) 국민카드 및 외환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모은행으로 흡수 합병됨

6) LG카드와 신한카드사는 2007년 10월 1일부로 통합하였으며, 통합 이후의 정확한 통계치는 2008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시장집중률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1999년 7월 23일 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인허가지침」을 2001년 7월 13일 개정하여 신용카드업의 진입기준을 명확히하고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상기 지침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에 진출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크게 신청인에 관한 사항,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출자자에 관한 사항으로 나뉜다. 이처럼 정부는 2001년 7월 13일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하여 신용카드업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까다로운 지침과 조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다⁷⁾.

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기존 사업자 간의 암묵적인 담합이 가능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폭시킨다. 경쟁에 의한 수수료 책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벽이 「3-당사자」체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는 기존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발급사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⁸⁾. 특히,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가맹점 모집뿐 아니라 금융망 이용대가까지도 지불을 하여야 하는 등의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4-당사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신규 카드발급사는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 매입사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쉽게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4-당사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은행계 발급사가 6,8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2개 발급사만 있다는 사실은 경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 이는 시장 진입에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전문매입사제도가 없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여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V. 수수료 결제구조와 현황

1. 결제구조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결제구조는 개방형(Open System)과 폐쇄형(Closed System)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은 Visa카드, Master카드 등의 카드협회가 운영하는 모형으로, 결제 과정에는 카드발급은행, 가맹점거래은행(매출전표 매입

7) 기존의 상당부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판단자의 의지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카드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도 있음.

8) 최근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가맹점 구축에 2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단적인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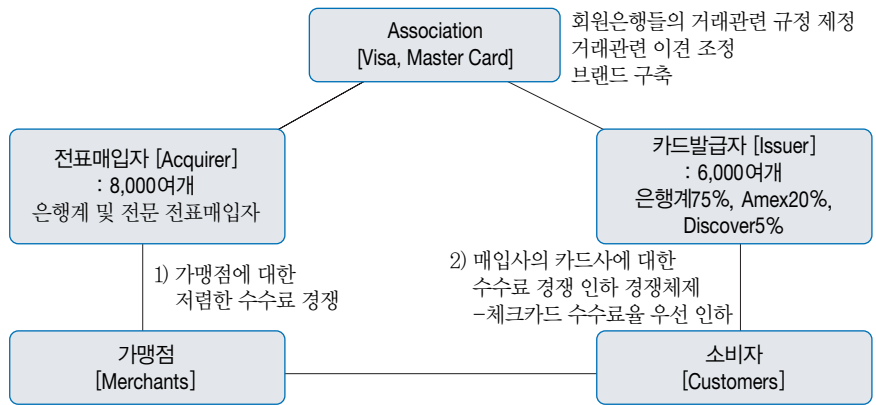


「4-당사자」체제에서는 가맹점과
매입사업자, 매입사업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은행), 가맹점, 카드사용자 등 4당사자가 참가하므로 「4-당사자」체제(multi-party system)라고도 한다.

「4-당사자」체제에서는 가맹점(merchant)과 매입사업자(acquirer), 매입사업자(acquirer)와 신용카드사(issuer)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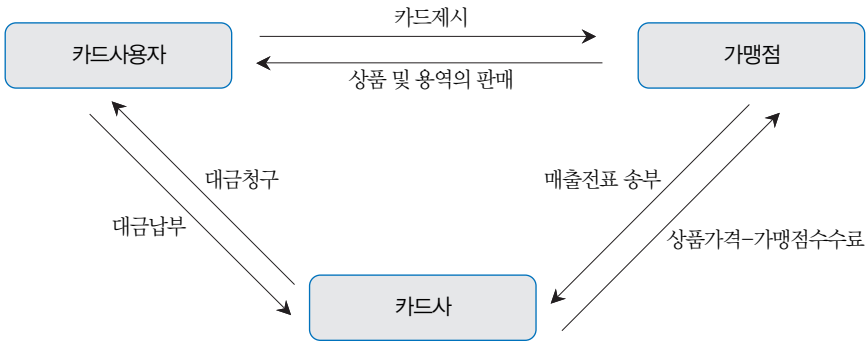
[그림 1] 「4-당사자」체제



자료: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에 관한 산업구조론적 연구』(김명호, 2004)

반면, 폐쇄형은 Discover카드, American Express(Amex) 등이 채택하고 있는 모형으로서 결제 과정에 가맹점, 카드사, 카드사용자(소비자)의 3자가 참가하여 「3-당사자」체제(unitary system)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카드사는 카드발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따라서 가맹점수수료와 카드사용자의 연회비 등을 직접 결정한다.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 롯데 등의 카드 전업사가 폐쇄형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2] 전업계 카드사의 결제구조(폐쇄형)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채택하였던 「3-당사자」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채택하였던 「3-당사자」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다. 「3-당사자」체제는 신용카드 관련 당사자를 ① 매입 및 발급사, ② 프로세서, ③ 가맹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과 채권매입 기능을 모두 겸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⁹⁾. 따라서 「3-당사자」체제에서 가맹점은 단지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수밖에 없고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므로 카드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 수수료의 종류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결제단계에서 각 당사자가 얻는 혜택에 따라 가맹점수수료(Merchant Fee), 은행간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카드발행수수료(Issuing Fee) 등이 부과되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에 대한 이자성 수수료(Interest Fee)를 부담한다. 첫째,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거래금액의 1.5~4.5%를 부담하고 있다. 둘째, 은행간 정산수수료는 가맹점 거래은행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 은행에게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다. 셋째, 카드발행수수료는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드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연회비에 포함된다. 넷째,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카드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성 수수료를 말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영세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3. 가맹점수수료

최근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이지만, 가맹점수수료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부족한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가맹점수수료가 공정하게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드사들이 가맹점을 약 150~200여개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초 신용카드가 국내에 도입·정착되던 시기에 재무부가 당시의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 지금까지도 그 골간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재무부는 당시의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국민편의 업종에는 낮은 수수료율, 유흥 및 사치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3%, 4%, 5%로 책정하였다. 현재 카드사는 업종에 따라 거래금액에 1.5~4.5%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카드발급 은행의 입장에서는 건당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한다.

정부가 1999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카드사들은 피동적으로 수수료를 몇 차례 인하하였지만 가맹점들은 아직도 추가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는 이미 충분히 인하하였으며, 더 이상의 인하는 역마진을 초래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신용카드거래 규모가 정부의 카드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가맹점 가입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따라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소액거래일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익구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사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동종업종, 동일상품, 동일가격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¹⁰⁾. 더구나 최근에 카드사들이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는 수수료를 인하하였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자들에게는 수수료를 인하해주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¹¹⁾.

10)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현대, 기아, 대우 등 대기업자동차 사 산하의 직영정비업체의 수수료는 영세 정비사업체와 같은 법령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2.6%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고, 영세한 정비사업체에게는 3.6%를 부과하고 있음. 서적판매의 경우(동일상품, 동일가격) 대형마트 내 서적판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2.0%인 반면, 동네 서점 판매에 대해서는 3.6%를 부과하고 있음.
11) 2000년 1월 대형백화점 등 BC카드 가맹점과 BC카드사 간에 발생 하였던 수수료 분쟁이 결국 수수료가 매출액의 2%를 넘는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최고 16%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1년 12월 롯데백화점과 카드회사 간에 발생 하였던 수수료 분쟁도 결국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 2002년 3월 롯데백화점과 삼성카드사 간에 발생 하였던 수수료 분쟁도 결국 인하하기로 합의함.

〈표 6〉 업종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단위 : %)

업종	수수료율	최대치와 최저치의 격차비율 (%)	업종	수수료율	최대치와 최저치의 격차비율 (%)
여행업	2.0~3.6	80.0	종합병원·의원	1.5~2.7	80.0
골프장	1.5/2.0	33.3	약국·건강식품	2.5~3.6	44.0
레저업소	2.7~3.6	33.3	백화점	2.7~3.6	33.3
가구·전기업	2.7~3.6	33.3	컴퓨터	2.7~3.6	33.3
서점	2.0~3.6	80.0	자동차, 자동차 정비업	2.6~3.6	38.5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매입사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규 카드발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시장 내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V. 신용카드 매입사업제도 도입의 필요성

1.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카드발급사들이 카드전표 매입업무를 과점 형태로 전담하고 있어 가맹점 확보라는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발급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가맹점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제한적 구조는 국내 카드산업에 X-inefficiency¹²⁾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입사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규 카드발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장벽을 제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시장 내의 경쟁이 촉진되며, 신용카드채권매입사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될 것이다.

2.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억제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에서 매입사업자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쟁 제한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사업자들에게 가맹점 확보를 위한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게 된다. 가맹점 확보를 위한 투자는 일종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피 불가능한 원가이면서, 동시에 매몰원가(sunk cost)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과도한 초기 투자는 가맹점 확보에 소요된 막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과다한 생산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산업에서 과다한 생산규모는 '무분별한 회원 확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길거

12) Leibenstein은 외부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업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기업내부의 비효율성을 X-inefficiency라고 하며,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이윤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 이러한 X-inefficiency는 산업조직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내에서의 경쟁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독점적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 카드사의 평균
카드발급매수가 미국에 비하여
16배 이상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투입된
투자회수를 위하여 회원모집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리 모집 또는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무한경쟁방식의 회원 확보 경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무리하게 신용카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신용카드사의 평균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되고, 신용카드사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과도하게 징구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일차적으로는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를 압박하게 되고, 가맹점이나 회원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말 약 7천개의 발급사가 있으며, 이들 카드사 중 현재 Visa카드 5억 300만매, Master카드 3억 7,500만매, Discover 5,000만매 및 Amex카드 4,000만매 등 총 9억 6,800만매의 카드가 발급되었다. 발급사당 평균적으로 13만 8,000매를 발급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22개의 발급사가 발급한 카드가 9,100만매이며, 따라서 카드사별 평균 발매 수는 222만 3천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카드사의 평균 카드발급매수가 미국에 비하여 16배 이상 많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투입된 투자회수를 위하여 회원모집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발급사가 신용카드 사업에서 확보하는 수익원은 가맹점수수료(Merchant Discount Rate; MDR)이다. 가맹점수수료(MDR)는 IRF(Issuer Ratio Factor)와 ARF(Acquirer Ratio Factor)로 구분된다. 「4-당사자」체제하에서 IRF는 발급사의 수익원이며, ARF는 매입사의 수익원이다. 그러나 「3-당사자」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IRF와 ARF 모두가 발급사의 수익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전문매입사제도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발급사들은 IRF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규 회원의 확보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³⁾. 신용카드시장은 무선통신 서비스와 달리 회원이 복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연회비 납부 등의 경제적인 손실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사들의 무분별한 마케팅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가 발급되었다. 발급사들은 무리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수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가맹점수수료로 보전받고 있는 것이다.

13) 이러한 현상은 무선통신회사들이 과도하게 통신망에 투자한 후 무리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면서 신규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3.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성 확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3-당사자」체제하에서 발급사들은 가맹점수수료

를 인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 확보를 통하여 이미 ARF를 고정 수입원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회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하고 있으나, 가맹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법도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매입사들은 개별 가맹점에 대한 위험분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전문매입사들은 각기 고유한 가맹점 위험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가맹점에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당사자」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딱혀들여지가 없다. 카드사별로 독자적으로 책정한 업종별 수수료를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사업수행 기간, 규모, 재정상태 또는 위치 등에 따라 위험수준이 상이하지만 카드사들이 책정한 수수료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문매입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매입사들은 가맹점에 대한 세밀한 위험관리를 통하여 가맹점별로 상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¹⁴⁾.

개인이 은행거래 시 우대를 받기 위하여 신용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듯이 전문매입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 또는 입금주기 단축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스스로 신용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3-당사자」체제하에서는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가맹점에 대한 위험관리를 세밀하게 수행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개별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 시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맹점에 대한 위험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개별 카드사들은 자사가 발급한 카드결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경쟁사의 정보는 알 수가 없어 제도적으로도 가맹점에 대한 총체적인 위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4-당사자」체제를 채택하면 매입사들은 가맹점에 대한 위험관리가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를 하여야만 한다. 가맹점 계약 시점은 물론이고, 수시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세밀하게 위험관리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매입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 또는 입금주기 단축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스스로 신용관리를 하게 된다.

14)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매입사들은 가맹점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인하시키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주기를 앞당겨 주기도 함.



매입사업자제도를 도입할 경우

Shared System 방식의

운용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중복인 시스템 투자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단말기의 출혈경쟁을

통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업무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4.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낭비요인 제거

우리나라에는 유통계 카드를 포함하여 21개의 발급사가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C, 국민, 삼성, 신한 등 신용카드 브랜드별로 카드사가 별도의 신용카드 채권매입 프로세스를 통하여 매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위하여 12개의 신용카드 VAN사가 가맹점 단말기를 설치하고 각 사가 구축한 신용카드 결제중계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소수의 신용카드사가 다수의 가맹점¹⁵⁾과 별개의 계약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카드사별로 상이한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각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카드사별로 상이한 결제구조에 따라 입금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12개의 신용카드 VAN사는 우량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단말기 무상 공급 등의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매입사업자제도를 도입할 경우 Shared System 방식의 운용으로 신용카드 회사의 중복적인 시스템 투자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단말기의 출혈경쟁을 통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업무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맹점망의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점도 국민경제 차원에서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점망이라는 자산을 각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4-당사자」모델에서 매입사가 관리를 하고, 발급사들이 가맹점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가맹점망의 경제적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신규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원할 경우 현재는 사업자가 7개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4-당사자」체제하에서는 가맹점은 매입사와 단일계약을 체결하여도 신용카드 결제처리가 가능하다.

Ⅶ. 주요 국가들의 신용카드 매입사업 도입 성공 사례

1. 호주

호주의 경우 1974년에 9개 국내은행으로 신용카드산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ANZ, Westpac, CBA 및 NAB 4대 은행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의 발급사는 약 150여개에 이르며 2004년을 기준으로 약

15) 국제청 추산은 약 150만개.

1,700만매의 카드가 발급되어 연간 약 AU\$30조¹⁶⁾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역시 신용카드서비스의 도입 초기에는 「3-당사자」체제로 시작하였으나 호주준비은행이 1999년부터 시장의 가치사슬 및 비용체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매입업무를 인정하는 등의 시장구조를 개선하였다. 즉, 매입부분의 분리와 이의 전담 운영과 함께 자체 매입업무를 금지함으로써 전형적인 「4-당사자」모델로 시장의 구조를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자료에 의하면 건당 매입비용이 약 335원으로(AU\$1=798원)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는 현재 국내 신용카드산업이 매입부분과 발급부분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국민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개선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호주가 「4-당사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낮은 매입비용 수준은, 현재도 4대 발급은행이(자체 매입금지로 제3자를 통한 위탁매입의 형태임) 여전히 매입업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입시장을 발급시장과 분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나타난 산업의 효율성 향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 브라질

브라질의 경우는 호주와는 달리 신용카드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4-당사자」모델을 채택하였으며 1995년에 기존의 4당사자 모델에 있어 「다중매입구조」를 「단일매입구조」로 전환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용카드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산업의 전반적인 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다수의 매입사들을 인정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유인하였으나 매입사들 간의 경쟁으로 각기 다른(호환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운영함에 따라 단말기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중복투자와 신용카드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입사들을 통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매입사마다 각자 다른 단말기를 사용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지출 증가와 가맹점의 단말기 구입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를 단말기의 표준화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입사 통합으로 해결하였다¹⁸⁾.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가맹점 공동 사용으로 이중 단말기간의 호환(VAN사를 바꾸는 것으로 가능)이 보편화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호주의 경우와 같이 매입부분과 발급부분이 분리되도록 하여 매입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호주가 「4-당사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난 낮은 매입 비용 수준은, 현재도 4대 발급은행이 여전히 매입업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입시장을 발급시장과 분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나타난 산업의 효율성 향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6) AU\$1=808원

17) 우리나라의 경우 건당 평균 거래 금액을 45,000원으로 가정하고 평균 가맹점 수수료를 2.5%로 가정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1,125원이 되는데 호주의 경우 건당 약 335원의 매입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18) 이것은 단말기 표준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단말기 교체에 따른 시간적 낭비를 극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됨.



신용카드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용카드채권 전문매입사'의 도입을 통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VII. 맺음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정부 주도로 짧은 기간 내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 신용대란 등의 문제를 야기한 바 있고 최근에는 신용카드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미흡한 경쟁체제, 과도한 회원 발급 경쟁, 사회적인 비용낭비 현상 또는 과도한 가맹점수수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여러 문제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신용카드가 국민의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지금까지 신용카드산업 초기에 도입한 「3-당사자」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데서 문제의 근원이 존재한다. 게다가 가맹점은 현실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가맹점수수료를 감안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현금결제와 차별화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신용카드채권 전문매입사'의 도입을 통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국가의 '신용카드채권 전문매입사'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매입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제안을 계기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KIF

<참고문헌>

- 국민가계경제연구원, 「다기능화되는 현금카드」, 『국민경제리뷰』, 1994. 9.
- 김명호,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에 관한 시장구조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4.
- 김재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 9.
- _____,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11.
- 김재진 · 김진수 · 홍범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 김재진 · 한상국,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 김재진 · 김진수 · 한상국, 『신용카드 거래활성화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3.
- 나승성, 「직불카드 · 체크카드의 이용현황 및 개선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3.
- 녹색소비자연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이후의 신용카드 이용자 실태조사』, 2000.
- _____, 『신대형 음식점의 가맹 실태와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실태조사』, 2000.
- _____, 『병의원에서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조사』, 2001.
- 이재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제34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8.
- 전승훈 · 김재진,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2.
- 한국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여전협통계.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 _____,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2.
- Leibenstein, Harvey,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No. 3, June, 1966. pp. 392~415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자료입니다.
원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정책 ·

美, 민주당 주자들 중산층 논쟁 ... 오바마 과세 확대 주장에 힐러리 반대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중산층의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진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사회보장제 과세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사회보장제를 연간 소득 9만 7,500달러까지만 부과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을 더 늘리지 않고 있다.

이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과세 기준을 높이면 9만 7,000달러를 조금 넘게 버는 중산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오바마는 곧바로 “6% 밖에 되지 않는 9만 7,000달러 이상 연봉자는 중산층이 아니라 상위층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다른 토론회에서 “미국은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두 부류만 있다”며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논쟁에 대해 WP는 “중산층 개념은 거주 장소나 가족 형태, 축적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민의 평균 연봉이 4만 8,201달러(2006년 기준)인 점을 들어 4만~10만

달러 연봉자를 중산층, 10만~20만달러를 중상층으로 분류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9만 7,500달러를 벌어들이는 뉴욕 주민의 생활수준은 6만 7,000달러인 아이오와 주민의 생활수준에 못 미칠 경우가 많다. 14만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상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WP는 이 때문에 에드워드 울프 뉴욕대 교수는 개인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층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상원의원이 1 대 1 가상투표에서 공화당의 모든 후보들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힐러리는 존 매케인 후보에 42% 대 38%, 루디 줄리아니 후보에 43% 대 40%, 미트 롬니 후보에 43% 대 40%로 열세였다.

[국민일보 2007-11-28]

美, 3분기 집값 역대 최대 하락… 세수 감소 초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3/4분기 집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세수도 감소시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P/케이스-실러의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3분기 미국의 집값은 작년 동기보다 4.5% 하락해 조사가 시작된 1988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개 대도시 지역의 집값은 지난 9월까지 1년간 4.9% 하락해 관련 지수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지난 8월에 비해서도 0.9% 하락했다. 8월에는 전 달에 비해 0.7% 떨어졌었다.

20개 대도시 지역 중 15개 지역의 집값이 하락했고, 플로리다주의 탬파가 11%, 마이애미가 10%씩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주택가격 하락세는 심각한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미 시장(Mayors) 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시장 침체는 내년에 주택 가치를 1조 2천억달러나 감소시켜 관련 세수가 66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361개 대도시들은 이로 인한 경제성장 손실이 1,660억달러에 달하고 특히 뉴욕과 북부 뉴저지주의 경우 손실 규모가 10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집값 하락세는 주택압류 증가에 따른 매물 압박과 담보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 따른 매매 감소로 지속될 전망이어서 소비지출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다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집을 사기를 꺼리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세를 장기화

시킬 것이라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도 더욱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1-28]

EU, 탄소세 도입 지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의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귄터 페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7일 내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 회의에 임하는 EU의 입장을 밝히는 연설에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산업체 차원에서 국제협약을 맺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페어호이겐 집행위원은 최근 철강업체들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정한 것처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절감 목표를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집행위 관리들이 전했다.

EU 집행위가 이처럼 탄소세 부과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탄소세 도입안을 주창해 온 프랑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기준을 거부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오는 2012년 이후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교토의정서 서명 국가 가운데 미국과 호주가 기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ETS)을 가동중인 EU는 ETS로 인해 역대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수입상품에도 탄소세로 부



과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복잡한 계산방식과 법적 소송 가능성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탄소세 부과안은 거의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1-27]

에너지·수자원 절약 프로젝트와 관련된 외국기업체에 선별적으로 법인세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경제 2007-11-30]

中, 경제특구 법인세 5년간 단계 인상

중국 국무원은 지난 28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과 동일하게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통과된 실시조례 초안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을 위한 세칙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은 경제특구에서 외국 기업에 적용해 온 15%의 우대세율을 내년 부터 5년 동안 18%, 20%, 22%, 24%, 25%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외국기업 법인세율 인상 조정 일정은 선전 경제특구, 상하이 훙차오 경제기술개발구, 베이징 중관춘 과학파크 등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양쯔강 삼각지역과 주강삼각지 등 동부 개발지역 외국 기업들에 적용돼 온 기존의 24% 법인세율은 2008년부터 25%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최초 5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5년간 최대 50%까지 법인세 감면 약속을 이미 받은 때는 신법 시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은 동부연안 경제특구의 법인세 우대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중서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는 2010년까지 15%의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또 시행세칙은 첨단 기술산업과 사회간접자본, 환경보호,

日, 中企 기업승계 ‘더 쉽게’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소유지분 전량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이 3일 보도했다.

지금은 기업주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법정 상속인들에게 세법에 따라 지분을 나눠주도록 돼 있어 완전한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상속세법상 특례를 마련해 기업승계자가 최대 주주의 지분 모두를 상속받고, 나머지 법정상속인에게 주식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승계자가 금전 보상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정부계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상속 절차와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정리해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연간 폐업하는 29만개사 중 약 7만개사가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업승계를 하는 경우엔 주식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80%까지 깎아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금은 공장 등 부동산 상속 때만 80%를 경감해 주

고, 주식을 상속할 땐 과표를 10%만 깎아주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율은 최저 10%(상속액 과표 1,000만엔 이하)에서 최고 50%(5억엔 이상)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이 같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은 뒤 최소한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8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그 같은 사업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해 2008년 상속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 2007-12-4]

세수격차는 가장 많은 도쿄도와 가장 적은 나가사키(長崎)현의 경우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사업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이 본사나 지점을 둔 지자체에만 납세를 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특히 도쿄도에는 전체 사업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3천억엔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인세를 사업세와 신세로 분리, 신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기업의 본사나 지점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인구 수 등에 따라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도쿄도에서 3천억엔 가량, 도요타자동차 등 굵직한 회사가 많은 아이치(愛知)현도 수백억엔을 지방으로 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7-12-5]

日, 세수격차 해소 위해 법인세 일부 지방이관 검토

일본 정부는 지자체 간 세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현행 법인사업세(지방세)의 일부를 거둬 인구 등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조율중이라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4일 보도했다.

연간 약 5조 6천억엔에 이르는 법인사업세의 절반 정도를 새로운 지방세 항목으로 거둬들여 재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그럴 경우 세수가 많은 도쿄(東京)도에서 연간 3천억엔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예상했다.

정부·여당은 이달 중순 작성되는 2008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본 여당은 도시와 지방의 격차 확대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참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세수 편차 시정을 내년도 세제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재정정책 ·

“노후 걱정 없는 나라… 호주 퇴직연금 들여다 보니”

호주 멜버른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톰 락탐(남, 42세) 씨는 특별히 노후대비를 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그는 회사에서 지정한 산업연금 중 하나에 가입했는데, 회사에서 매달 급여의 9% 가량을 내주고 본인은 이보다 적은 액수를 불입하고 있다. 락탐 씨는 퇴직 후 현재 수입의 65%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드니에서 한식당을 운영중인 김모(남, 53세) 씨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대뜸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기 좋아서”라고 답했다. 그는 “나라(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Age Pension)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하고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는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손자들 간식 사주는 재미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살기좋은 나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호주. 무엇보다 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라는 점에서 호주의 퇴직연금은 국내에서도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의무화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된 것은 물론 증권과 자산운용 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 연금제도 의무화로 사회적 비용 경감

지난 90년대 들어 호주 정부는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공적 연금만으로는 이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령연금과는 별도로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 ‘슈

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사용자)가 통상 임금의 9% 가량을 연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화했다.

물론 사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호주 정부는 이들 기업에게 연금부담을 상쇄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엄격히 추징하는 방법으로 제도 활성화를 유인했다.

사측과는 별도로 개인들은 선택적으로 퇴직연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세(稅) 부담이 높지만, 퇴직연금 납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15%의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한 데 따른 단점도 나타났다. 연금이 확대되면서 호주 국민들의 저축률은 아시아권 다른 국가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호주 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계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해지면서 국민들의 소비를 억제하고, 이것이 호주의 경제성장을 다소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 연금 활성화가 금융시장 발전 이끌어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자산운용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더니, 이 막대한 자금은 다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되면서 전체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바꿔 놓았다.

호주금융건전성감독국(APRA)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급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퇴직연금 규모는 지난해 1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호주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펀드 시장 역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조 990억달러에 달해 미국과 룩셈부르크, 프랑스에 이어 세계 4

위에 올라섰다.

호주투자·금융서비스협회(IFSA)의 존 오쇼네시(John O'Shaughnessy) 부회장은 “전체 자산운용업계 자금의 80% 가량은 퇴직연금 상품들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며 “이들 펀드는 호주 자산운용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을 뿐 아니라 호주 증시를 부흥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 자본시장 통합, 자산운용의 질 높여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 속에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이 제정되면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자 이들은 말 그대로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운용사에 따라 전문적인 운용만을 전담하는 회사와 특정 분야의 자산운용에만 집중하는 회사 등으로 세분화되는가 하면, 아예 사무관리,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겸하는 곳도 생겨났다.

각 운용사의 연금 운용기법과 판매방법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차별화됐다.

일례로 보험사로 출발한 AMP그룹의 경우 호주 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파이낸셜 플래너(Finacial Planner)들을 판매인력으로 활용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약 1,870여명의 FP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연금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현재 호주 퇴직연금 시장의 17.6%를 차지하는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호주 내 가장 큰 산업기금이자 대학교와 연구소 근무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사인 유니수퍼(UniSuper)는 수탁고가 지난 2000년 89억달러에서 올 상반기 237억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이 회사의 폴 멀피(Paul Murphy) 수석매니저는 “자산 투자와 고객서비스, 마케팅, IT 관련시스템 등 모든 역할을 회사 내에서 직접 하고 있다”며 “초창기에는 공적 기금의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받지 않는 독립적인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12-5]

美·중이 ‘발리 기후회의’ 성패 좌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3~14일)의 성패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다.

세계 190개국의 정부와 의회 대표, 과학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발리 회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 환경보호질서 구축 문제를 중점 논의하게 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오는 2012년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의 36개 의무이행 대상국은 2008~2012년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대국’ 들이다.

하지만 미국은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의무이행 대상국에서 제외된 상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은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에 미국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에 비해 1.5%가 줄었다고 밝힌 뒤 “이 시대가 직면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



화라는 양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리 회의의 미 정부 수석 대표인 할란 왓슨은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가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건설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빈 리드 호주 신임 총리가 전날 교토의정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자율적 이행을 주장하며 의정서 서명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지적,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방지 전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며 자국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선진 산업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감축에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대해 미 의회 대표로 발리 회의에 참가한 존 케리 상원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산업국가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수용해야 하며 중국 등 개발도상국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 윌라스 영국 환경부 장관도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세계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2-5]

미국, 부채규모 눈덩이 증가 “사회보장체계 불능화될 것”

미국의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의 AP통신은 국가 부채가 현재 하루 14억달러 규모로 불어나고 있으며, 이는 1분에 100만달러씩 늘어나는 속도라고 국가 부채의 심각성을 전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3일 의회에 전비를 포함한 예산안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 가운데 발표된 이 기사에서 AP측은 “이 같은 부채규모에 대해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남녀는 물론 어린이, 유아들까지 포함된 모든 미국민 한 사람당 3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현재 미국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를 갚느라 힘든 가운데 미국 정부 역시 이 같은 형태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당장은 비교적 적은 이자율을 갖고 있지만 얼마 안 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새로운 금융상 고통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은 주택과 신용경색 문제라는 직접적인 금융고통은 벗어났지만 미국민들은 여전히 처참한 경제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하며, 이는 국가부채의 늘어나는 부채 이자를 위해 빠른 자금조달을 취하고 있으며 이 규모가 ‘생각을 멎게 하는’ 9조 1,30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이어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1년 1월 취임할 당시만 해도 국가부채는 전부 합쳐 5조 7,000억 달러 규모였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시기를 전후해서는 아마도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은 이 같은 현황은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이 없다고 예시하면서, 향후 25년 동안 65세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된 미국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과 의료보험 혜택을 점점 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으로 인한 부

채 증가규모는 중립적인 의회예산회계국의 계산에 의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2조 4,0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록 행정부와 의회가 연방정부의 예산지출 규모를 줄이려 애쓴다고 하지만 국민총생산 대비 부채규모는 지난 1975년 35%선이었던 데에서 현재는 약 65%에 까지 달한 것으로 집계되며, 오는 2050년까지 이 규모는 약 350%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관련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데이비드 위스 수석경제연구원은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무엇인가 바뀌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세금체계에서 만일 베이비부머들이 계속 은퇴하게 될 경우 사회보장체계는 불능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시스 2007-12-4]

中 ‘그린정책’ 대대적 강화

중국이 최근 고강도 환경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주식 시장 상장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21일 국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또 공해산업은 적극적으로 도태시키고 외국기업 유치 때에도 환경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배제시키기로 했다.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저우성셴(周生賢) 국장은 나아가 “이미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도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부터 정부의 환경 관련 허가서를 얻지 못한 기업들은 더 이상 조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10년 말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 기술과 생산 설비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산업들을 정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환경총국은 환경 법규를 어긴 기업에 대해 1~3년 동안 수출 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 면허증 발급을 중단기로 했었다. 이른바 ‘녹색대출’을 적용, 오염 유발기업 12곳에 대해 은행 대출을 중지하기도 했다. 안후이(安徽)의 한 양주 제조기업이 최근 지역은행에서 1,000만위안(12억여원)의 대출을 신청했다가 이 조항에 저촉돼 거절당한 일이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폐수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고 폐수를 직접 배출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지난 7월 환경관련 법률 위반 기업 30곳의 명단을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에 보내고, “오염기업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라도 신용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었다.

중국 정부는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관련 외자 투자를 전면 금지시키고, 친환경 업종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자 유입은 적극 장려하는 등 ‘선별적 외자 유치’ 방안을 내놓았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 세금 부과까지 검토중이다.

내년 2월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순환이용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순환경제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 초안은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폐기물 이용, 재활용품의 시장진입 우대, 인센티브제도, 법적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환경 대란’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대기·수질오염 처리 비용이 연간 1,000억달러(약 92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세계은행(WB)의 경고도 나온 상태다.

세계은행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중국인이 매년 70만명이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온실가스 배출국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과 보건 측면 외에도 수출과 무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벌써 중국은 직접적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올 한 해 중국산 제품은 '안전성' 시비에 휘말려 세계 곳곳에서 리콜 사태를 겪었다.

또한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유럽연합(EU)이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설계 의무화 지침'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 등 '환경 장벽'을 설치, 내년부터는 더욱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환경오염원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주요 임무"라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2007-11-22]

| 정책 흐름 |



-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 2008년 경제전망
-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1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에서 발표한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07년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금) 국회에 제출하였음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른 세금감면(비과세·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준비금)을 의미

- '07년도 총국세감면규모는 22조 7,083억원으로 전망

- 이는 '06년(21조 3,380억원) 대비 6.4%(1조 3,703억원) 증가한 수준

* 매년 국세감면규모는 경제성장 등에 따라 국세수입총액 규모가 증가하면 이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금액의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3.4%에서 12.5%로 하락

* 그간의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과세표준현실화 등의 노력에 따라 국세수입증가율보다 국세감면증가율이 낮은 데 기인

• 국세수입(억원) : 1,380,443('06년) ⇒ 1,583,341('07년)
14.7% 증가

• 국세감면(억원) : 213,380('06년) ⇒ 227,083('07년)
6.4% 증가

국세감면비율 : 12.5%

= 22조 7,083억원 / (158조 3,341억원 + 22조 7,083억원)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총액 국세감면액

- '07년 국세감면액 22조 7,083억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 근로자·농어민 지원과 같은 중산서민층 지원(52.9%, 12조원), 중소벤처·R&D 지원과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29.5%, 6.7조) 등 필수 정책목적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

기능별	2007년 전망	
	금액(억원)	구성비
1.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 저축, 근로자, 농어민	120,182	52.9%
2. 성장잠재력 확충(경제개발) * 벤처중소기업, 투자, R&D, 공공투자	66,994	29.5%
3. 사회개발 지원 * 교육, 문화, 체육, 환경, 사회보장	36,218	15.9%
4. 기타	3,688	1.6%
합 계	227,083	100.0%

-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8%(10.6조원), 법인세가 24.7%(5.6조원), 부가가치세가 17.1%(3.9조원)를 차지

- 전년 대비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 주요 증가항목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4,297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2,041억원), 보험료 특별공제(+1,980억원) 등이며,

- 주요 감소항목은 SOC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4,233억원)^{※1}, 임시투자세액공제(△2,443억원)^{※2},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1,495억원)^{주3} 등임

* 주1 :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원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완공실적이 감소

* 주2 :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축소 10% ⇒ 7%

* 주3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50% 감면 제도 폐지

■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관된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지속 노력중

• 특히 금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07. 1. 1)에 따라 도입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

* 매년 국세수입총액 중 국세감면총액 비율 : 3년간 평균감면율 + 0.5%

- 첫째, 금년도 국세감면율은 12.5%로 국세감면율 한도(13.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직전 3년 평균(13.1%) + 0.5%p = 13.6%

- 둘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감면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비과세·감면제도 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 꼭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계속 유지하면서도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는 적극 정비

<일몰 연장 기준>

-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자원배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폐지·축소 기준>

- 외국에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
-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이 법적 화됨에 따라 금년부터 국세감면율에 대한 통계 기준을 변경

- 종전에는 관련국세* 대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비율)을 사용했으나, 금년부터는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을 사용

종전('06년도까지 작성 기준)	변경('07년 이후 작성 기준)
$\text{조세지출 비율} = \frac{\text{국세감면액}}{\text{국세감면액} + \text{관련국세}}$	$\text{국세감면 비율} = \frac{\text{국세감면액}}{\text{국세감면액} + \text{국세수입총액}}$

* 관련국세 = 국세수입총액 - 과년도수입 - 교육세·농특세

변경 전·후 감면비율 비교

(단위 : 억원, %)

연도	'04 실적	'05 실적	'06 실적	'07전망
국세감면총액(①)	182,862	200,169	213,380	227,083
종전 조세지출비율(①/①+②)	14.2	14.4	14.2	13.3
관련국세(②)	1,101,603	1,193,654	1,288,475	1,480,313
변경 국세감면비율(①/①+③)	13.4	13.6	13.4	12.5
국세수입총액(③)	1,177,957	1,274,657	1,380,443	1,583,341

- 2010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항목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1. 2007년도 조세지출보고서 주요 내용

1. 연도별 국세감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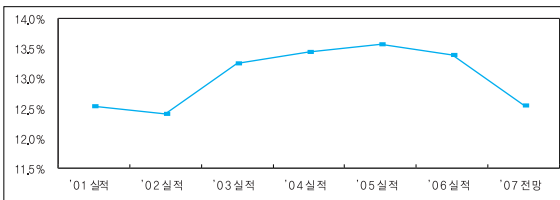
- '07년 국세감면액은 '06년에 비해 1조 3,703억원(6.4%) 증가한 22조 7,083억원(국세수입총액의 12.5%)으로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03 실적	'04 실적	'05 실적	'06 실적	'07 전망
○국세감면액(A)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7,083
전년대비 증액	27,819	7,782	17,307	13,211	13,703
(증감률)	18.9	4.4	9.5	6.6	6.4
- 직접세	123,311	131,485	149,236	152,316	163,161
- 간접세	50,558	50,274	49,262	58,053	60,320
- 관세	1,211	1,103	1,671	3,011	3,602
○국세수입총액(B)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583,341
전년대비 증액	106,964	31,315	96,700	105,786	202,898
(증감률)	10.3	2.7	8.2	8.3	14.7
○국세감면비율	13.2	13.4	13.6	13.4	12.5

* 국세감면비율 = A(국세감면액) / (A+B)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최근 7년간 국세감면비율 추이〉



2. 2007년도 국세감면액 전망
(기능별 · 세목별 · 감면방법별)

(1) 기능별 국세감면 전망

- 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지원 : 총 12조 182억원(52.9%)
 - * () 는 전체 조세지출전망액 중 비중
 - 근로자 지원 : 5조 5,188억원(24.3%)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 농어민 지원 : 5조 2,493억원(23.1%)
 -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가치세·교통세 감면 등
 - 저축 지원 : 1조 2,501억원(5.5%)
 - 농·수협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

세 등

- ② 벤처기업·투자·R&D 등 경제개발 지원 : 총 6조 6,994억원(29.5%)
 - 설비투자 및 R&D 지원 : 3조 8,580억원(16.9%)
 - 임시투자세액공제·R&D 세액공제 등
 -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 2조 143억원(8.9%)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SOC·구조조정·지방이전 등 지원 : 8,271억원(3.7%)
 -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 ③ 교육·문화·환경·사회보장 등 지원: 총 3조 6,218억원(15.9%)
 - 교육·문화·체육 및 환경분야 지원 : 7,917억원(3.5%)
 - 대학교원·연구기관 종사자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비과세,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등
 - 사회보장 분야지원 : 2조 6,612억원(11.7%)
 - 기부금 손금산입, 사용자부담 건강보험료 근소세 비과세 등
 - 주택분야 지원 : 1,689억원(0.7%)
 - 주택 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 ④ 기타 분야 지원 : 총 3,688억원(1.6%)
 - 방위산업 물품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복권당첨소득 분리과세 등
- (2) 「세목별」 국세감면전망
- 소득세 106,376억원(46.8%), 법인세 56,118억원(24.7%), 부가가치세 38,754억원(17.1%)으로
 - 3개 세목이 국세감면총액의 88.6%를 차지

2. 국세감면비율 기준 변경 주요 내용

■ 변경 배경

- 국가재정법 시행('07.1.1)으로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보고서 및 국세감면을 한도제*가 법제 화됨에 따라,

*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해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 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 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국가 재정법§88①).

- 종전에는 관련국세* 대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비율)을 사용했으나, 금년도(2007년도) 조세지출 보고서 작성분부터는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 면액(국세감면비율)으로 변경

* 관련국세 = 국세수입총액 - 과년도수입 - 부가세(sur-tax 인 교육세, 농특세)

■ 변경 내용

종전('06년도까지 작성 기준)	변경('07년 이후 작성 기준)
• 조세지출비율을 관련국세 기준으로 산출	• 국세감면비율을 국세수입총액 기준으로 작성
$\text{조세지출 비율} = \frac{\text{국세감면액}}{\text{국세감면액} + \text{관련국세}}$	$\text{국세감면 비율} = \frac{\text{국세감면액}}{\text{국세감면액} + \text{국세수입총액}}$

■ 변경 전·후 감면비율 비교

(단위 : 억원, %)

연도	'03실적	'04실적	'05실적	'06실적	'07전망	
국세감면총액 (①)	175,080	182,862	200,169	213,380	227,083	
종전 조세지출 비율	중전조세지출비율(①/①+②)	14.0	14.2	14.4	14.2	13.3
	관련국세 (②)	1,075,599	1,101,603	1,193,654	1,288,475	1,480,313
변경 조세지출 비율	국세감면비율(①/①+③)	13.2	13.4	13.6	13.4	12.5
	국세수입총액 (③)	1,146,642	1,177,957	1,274,657	1,380,443	1,583,341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6일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1. OECD 경제전망

① 경제는 주택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실업률은 감소하고, 물가는 고유가 등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美), 환율강세(유로) 등에 힘입어 안정세 유지 전망
- 기간 개선되어 온 재정수지는 경기둔화와 감세, 경직성 지출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악화될 전망

OECD 국가 전체의 경제전망

(전년 대비, %)

	06년	07년 ^{a)}		08년 ^{a)}		09년 ^{a)}
		07.5월 전망	07.5월 전망	07.5월 전망	07.5월 전망	
GDP 증가율	3.1	2.7	2.7	2.3	2.7	2.4
실업률	5.9	5.4	5.6	5.4	5.5	5.3
물가상승률 ¹⁾	2.3	2.3	2.1	2.1	2.0	2.1
재정수지	△1.8	△1.6	△1.6	△2.0	△1.6	△1.9

1) GDP 디플레이터.

- 다만,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가들 성장률 전망치(07년 → 08년, %)
 (브라질) 4.8 → 4.5 (중국) 11.4 → 10.7 (인도) 8.8 → 8.6
 (러시아) 7.3 → 6.5

② 한편, 주택경기 부진 및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소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우려 상존

- 특히, 신흥국들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과 달러 약세, 美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지속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주요국 경제전망

① (미국) 주택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08년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하로 둔화될 것이나, 주택경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09년에는 회복될 전망 (07년 2.2% → 08년 2.0% → 09년 2.2%)

- 경기둔화로 인해 근원 CPI가 2% 미만에 머무는 등 인플레이 압력은 다소 완화되는 반면, 실업률은 5%대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

* 근원 CPI(%) : (07) 2.0 → (08) 1.8 → (09) 1.8

실업률(%) : (07) 4.6 → (08) 5.0 → (09) 5.0

-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증대로 감소 예상

* 경상수지(對 GDP 비율, %) : (07) △5.6 → (08) △5.4 → (09) △5.3

② (유로지역) 금리 인상, 유로화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잠재수준의 성장세는 지속 예상(07년 2.6% → 08년 : 1.9%)

- 고용증가(실업률은 10년래 최저수준 하락),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 확대, 기업투자 증가가 성장세를 주도
- 물가는 유로화 강세 등이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을 흡수하는 데 힘입어 목표수준(2%) 내에서 안정화 될 전망

* 근원 CPI(%) : (07) 1.9 → (08) 2.0 → (09) 2.0
 실업률(%) : (07) 6.8 → (08) 6.4 → (09) 6.4

③ (일본) 수출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투자,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07년 1.9% → 08년 1.6%)

- 특히, 비정규직 감소와 고임금 고령인구의 은퇴에 따른 임금상승이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
- 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08년에 (+)로 전환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7) 0.0 → (08) 0.3 → (09) 0.4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전년 대비, %)

	06년	07년 ^{a)}		08년 ^{a)}		09년 ^{a)}
			07.5월 전망		07.5월 전망	
OECD 전체	3.1	2.7	2.7	2.3	2.7	2.4
- 미국	2.9	2.2	2.1	2.0	2.5	2.2
- 일본	2.2	1.9	2.4	1.6	2.1	1.8
- 유로	2.9	2.6	2.7	1.9	2.3	2.0

3. 한국 경제전망 및 정책 권고

① (전망) 07년 4.9%, 08년 5.2%, 09년 5.1% 성장률 달성 전망

* 07, 08년 성장률은 07. 5월 전망치보다 각각 0.6%p, 0.4%p 상향조정

- 소비, 투자 등 내수회복과 아시아지역의 고성장으로 인한 수출호조로 성장률 상승 예상
- 물가는 인플레이션 목표범위(2.5%~3.5%) 내에서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3%대 초반에서 안정 될 전망
- 경상수지는 08년에 10년래 처음으로 적자전환이 예상(08년 GDP 대비 Δ 0.2%)
- 주택부문 경착륙으로 인한 가계 및 금융부문 악영향, 일본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추가절상 압력, 고유가 지속 등이 하방위험(downside risk)으로 작용 전망
- 긍정적 요인(upside risk)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 전망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한미 FTA 실행에 따른 수출증대와 서비스부문 구조개혁 촉진 가능성 등으로 예상

② (정책권고)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 필요

- 변동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서비스 부문 등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추진이 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

(전년 대비, %)

	06년	07년 ^{a)}		08년 ^{a)}		09년 ^{a)}
			07.5월 전망		07.5월 전망	
• GDP	5.0	4.9	4.3	5.2	4.8	5.1
- 민간소비	4.2	4.4	4.4	4.3	3.6	4.0
- 총고정투자	3.2	4.8	4.2	4.4	3.0	3.9
- 수출 (순수출)	12.4	10.3	10.0	10.6	12.2	11.0
· 실업률	1.6	1.0	0.9	1.4	1.6	1.5
· 소비자물가	3.5	3.3	3.4	3.3	3.4	3.3
· 소비자물가	2.2	2.5	2.5	2.8	3.0	3.0
· 경상수지(對 GDP)	0.7	0.5	Δ 0.0	Δ 0.2	Δ 0.4	Δ 0.2

*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서 발표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여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인 예산(안)이 총계기준으로 160조 8,003억원으로 이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07년도 당초예산(총계기준)보다 11.9%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 국가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08년도 예산(안)이 220조 7,124억원으로 '07년도 200조 9,519억원보다 9.8% 증가한 수준임
- 전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전체 160조 8,003억원 중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예산(안)은 83조 2,677억원(51.8%)이며, 기초자치단체(230개 시군구) 예산(안)은 77조 5,326억원(48.2%) 임
 - '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 시도의 경우 울산광역시(26.7% 증가)로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이 원인이며
 -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43.4% 증가)로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청사 재산매각대금 수입과 세출예산에 신청사 건립비를 반영한 것이 원인임
 - 단체별 예산(안) 규모로는,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특별시(19조 4,343억원), 시군구는 성남시(2조 377억원)이며
 -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광역시(2조 115억원), 시군구는 부산 중구(785억원)임
 - 세입 예산(안)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가능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인 자체재원이 84조 8,13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2.8%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채의 규모와 비중이 '07년보다 줄어들어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5조 9,870억원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음
 - '08년도 예산(안)의 재원배분의 특징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출범 이후 수 십년간 운영되어 오며 어렵게만 느껴진 품목예산서를 '08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가예산·회계제도 혁신에 맞추어 사업예산서로 편성함으로써 조직별로 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임

-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사업예산서로 편성되어 처음에는 다소 낮설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이 조직-사업별로 일목 요연하게 보임으로써 '예산심의가 훨씬 쉬워지고,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등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의견을 개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예산서가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심으로 편성되고, 사업설명자료가 함께 만들어지므로 별도 설명자료 작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감소하게 됨
- 현재 각 자치단체의 '08년도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11월중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확정하게 됨

〈참고 1〉 시도별 '08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시도별	2008(안)	2007	증감액	%
계	1,608,003	1,437,210	170,793	11.9
서울특별시	263,778	227,439	36,339	16.0
부산광역시	91,957	80,937	11,020	13.6
대구광역시	59,307	52,798	6,509	12.3
인천광역시	75,788	66,667	9,121	13.7
광주광역시	35,505	31,186	4,319	13.8
대전광역시	33,609	31,320	2,289	7.3
울산광역시	29,214	23,391	5,823	24.9
경기도	313,829	287,577	26,252	9.1
강원도	78,473	70,815	7,658	10.8
충청북도	61,016	55,394	5,622	10.1
충청남도	93,511	84,679	8,832	10.4
전라북도	84,183	78,404	5,779	7.4
전라남도	112,743	103,457	9,286	9.0
경상북도	119,338	107,075	12,263	11.5
경상남도	131,029	112,948	18,081	16.0
제주도	24,723	23,120	1,603	6.9

※ 2008(안) : 시도 + 시군구 의회제출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 2007 : 시도 + 시군구 당초예산 총계기준 ('07년도 예산개요 기준)

〈참고 2〉 시도별 '08년도 예산(안) 현황(광역·기초)

(단위: 억원, %)

시도별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계	1,608,003	832,677	51.8	775,326	48.2
서울특별시	263,778	194,343	73.7	69,435	26.3
부산광역시	91,957	67,344	73.2	24,613	26.8
대구광역시	59,307	42,466	71.6	16,841	28.4
인천광역시	75,788	55,115	72.7	20,673	27.3
광주광역시	35,505	25,830	72.8	9,675	27.2
대전광역시	33,609	24,021	71.5	9,588	28.5
울산광역시	29,214	20,115	68.9	9,099	31.1
경기도	313,829	123,535	39.4	190,294	60.6
강원도	78,473	28,814	36.7	49,659	63.3
충청북도	61,016	23,545	38.6	37,471	61.4
충청남도	93,511	35,600	38.1	57,911	61.9
전라북도	84,183	32,326	38.4	51,857	61.6
전라남도	112,743	42,331	37.5	70,412	62.5
경상북도	119,338	41,568	34.8	77,770	65.2
경상남도	131,029	51,001	38.9	80,028	61.1
제주도	24,723	24,723	100.0		

※ 작성기준 : 의회제출 예산(총계기준)

〈참고 3〉 사업예산 편성 주요 변경사항

■ 「사업」중심의 예산서 체계로 변경

금년까지(품목별)

세항·세세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3331 도로관리	22,779,000		
220 자체사업	5,76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766,000		
	5,471,000	01 시설비	
		A. 도로사업 공사비	1,586,000
		B. 도로사업 실시설계비	80,000
		토지매입비	2,810,000
		C. 도로사업 토지매입비	995,000
	271,000	02 감리비	
		A. 도로사업	271,000
	24,000	03 시설부대비	
		A. 도로사업	9,000
		B. 도로사업	10,000
		C. 도로사업	5,000

내년부터(사업별)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도로과	
일반도로건설 ⇒ 정책사업	22,779,000
ABC도로사업 ⇒ 단위사업	5,766,000
A도로사업 ⇒ 세부사업	1,866,000
시설비	1,586,000
감리비	271,000
시설부대비	9,000
B도로사업	2,900,000
실시설계비	80,000
토지매입비	2,810,000
시설부대비	10,000
C도로사업	1,000,000
토지매입비	995,000
시설부대비	5,000

■ 사업정보가 집약된 「사업설명서」 작성

사업코드번호	
도시 숲 조성 ⇒ 세부사업	
회계연도 : 2008년	회 계 : 일반회계
조 직 : 건설도시국 도시녹지와	기 능 : 국토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정책사업 : 도시녹화사업	단위사업 : 녹지공간조성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쾌적하고 청량한 도시미관 창출 • 사업기간 : 2007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총사업비 : 2,243,607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1,433,300천원) • 사업규모 : 8개소, 9,85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시 ○○유수지 주변 등 8개소 • 시행주체 : ○○시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 • 추진계획 : '06. 3 도시숲조성 기본계획 수립 	
<p>■ 사전절차이행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반영여부 / 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 표시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원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10,309	1,433,300	△622,991	△43.5%
예산총계	810,309	1,433,300	△622,991	△43.5%
국고보조금				%
균특보조금	391,000	687,000	△296,000	△43.0%
도비보조금	97,750	171,900	△74,150	△43.1%
시비	321,559	574,400	△252,841	△44.0%
?				%
기타(예산외)				%
채무부담				%
?				%

■ 산출근거

(단위: 천원)

편성목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810,309	1,433,300	△622,991	△43.5%
401 시설비및부대비	810,309	1,433,300	△622,991	△43.5%
401-02 실시설계비	23,382	38,361	△14,979	△39.1%
• 도시숲조성 실시설계비				
782,000,000원×2.99/100 =	23,382	38,361	△14,979	△39.1%
401-04 시설비	782,000	1,389,935	△607,935	△43.7%
• 공단유수지 주변 도시숲조성				
100,000,000원×1식 =	100,000	100,000		순증
?				?

2008년 경제전망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5일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2008년 경제전망」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국내의 경제여건

1.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 2008년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제도 높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2.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지속

- 국제유가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수요가 견실한 가운데 산유국의 증산여력 제약, OPEC의 고유가 유지정책, 지정학적 위험 고착화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예측기관들은 2008년중 유가가 Brent유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대 후반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원자재가격은 소맥·대두 등 곡물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 지속

3. 미 달러화 약세

-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경기둔화, 연준의 금리인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할 전망
 - * 상대적으로 절하폭이 컸던 유로화에 대해서는 점차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

4. 중국 인플레이션 우려

-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
 - 그러나 식료품 이외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5. 고용사정 개선

- 도·소매 부문의 구조조정 일단락 등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제조업 부문은 고용 감소세가 둔화될 전망
 - 또한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고용사정이 질적으로도 개선

6. 설비투자 선행지표 양호

- 금년 상반기 이후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균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
 - 또한 설비투자에 선행하는 국내기계수주가 최근 들어 두 자릿수 증가세 회복

7. 국토균형개발사업 본격화, 미분양주택 증가

- 국토균형개발사업의 기반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토목건설이 호조를 보일 전망
 - 주택건설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당분간 부진 예상

II. 2008년 경제전망

전망의 주요 전제

	2006	2007 ¹⁾	2008 ¹⁾
• 세계경제성장률	5.4	5.1	4.6
미 국	2.9	2.1	1.8
일 본	2.2	1.8	1.8
유 로	2.8	2.6	2.2
중 국	11.1	11.3	10.5
• 세계교역신장률(%)	9.2	7.9	7.3
•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¹⁾	63	69	81
•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²⁾	28.4	17.0	6.0
• 엔/달러 환율 ³⁾	116	118	109

주: 1) 원유도입비중: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2) 전년 대비(연평균 기준)

3) 기간중 평균

1. 경제성장

- 2008년중 GDP성장률은 금년(4.8%)과 비슷한 4.7%를 기록할 전망
 - 상·하반기 성장추이를 보면 전년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상반기 4.9%에서 하반기 4.4%로

둔화

- 전기 대비로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질 전망(2008. 상반기 1.1% → 하반기 1.0%)

경제성장 전망

(전기 대비, %)

	2006	2007					2008 ¹⁾		
		1/4	2/4	3/4	4/4 ²⁾	연간 ²⁾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5.0	0.9 (4.0)	1.8 (5.0)	1.3 (5.2)	1.0 (5.1)	4.8	1.1 (4.9)	1.0 (4.4)	4.7
· 민간 소비	4.2	1.5 (4.1)	0.8 (4.2)	1.2 (4.7)	1.3 (4.7)	4.4	1.0 (4.5)	1.0 (4.0)	4.3
· 정부 소비	5.8	0.5 (5.6)	1.9 (5.9)	-0.1 (3.9)	0.4 (3.0)	4.5	1.7 (4.0)	0.9 (5.2)	4.6
· 건설 투자	-0.4	0.8 (3.9)	-1.3 (3.2)	-0.5 (0.9)	0.5 (0.1)	1.8	1.0 (1.6)	1.0 (3.9)	2.8
· 설비 투자	7.6	4.4 (10.8)	3.4 (11.9)	-6.3 (1.6)	4.7 (6.2)	7.6	2.5 (4.5)	0.9 (8.3)	6.4
· 상품 수출	12.6	2.7 (10.8)	5.2 (10.6)	1.5 (9.1)	4.3 (14.3)	11.3	1.7 (9.4)	3.2 (11.1)	10.3
· 상품 수입	10.8	4.5 (10.4)	6.5 (11.3)	-3.7 (5.0)	5.7 (13.2)	10.0	3.4 (8.6)	1.7 (11.7)	10.2

주: 1) 연간 및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 대비

2) 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① 민간소비: 2007년 4.4% → 2008년 4.3%

- 교역조건 악화,富力 효과 축소 및 가계채무부담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 개선, 내구재 소비의 높은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전기비: 2007. 하반기 1.3% → 2008. 상반기 1.0% → 하반기 1.0%)

② 설비투자: 2007년 7.6% → 2008년 6.4%

- 선행지표 개선, IT경기 회복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

(전기비: 2007. 하반기 0.8% → 2008. 상반기 2.5% → 하반기 0.9%)

③ 건설투자 : 2007년 1.8% → 2008년 2.8%

- 주택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토균형개발사업의 본격화 및 비주거용건물 건설 증가 등으로 금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전망
(전기비 : 2007. 하반기 0.0% → 2008. 상반기 1.0% → 하반기 1.0%)

④ 수출(상품물량) : 2007년 11.3% → 2008년 10.3%

-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금년보다 증가율은 낮아지나 안정적인 수출구조, 주력품목의 품질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전기비 : 2007. 하반기 2.9% → 2008. 상반기 1.7% → 하반기 3.2%)

2. 고용

- 2008년중 취업자 수 증가규모는 금년(29만명)보다 소폭 늘어난 30만명(+1.3%) 내외로 전망
-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
- 다만 고유가 및 원화 강세 지속에 따른 수익성 전망 불투명 등으로 수출 제조업의 신규 고용여력은 약화
- 내년 연간 실업률은 금년(3.3%)보다 소폭 하락한 3.2% 수준 예상

고용 전망

(전년동기 대비, 만명, %)

	2006	2007					2008 ^{o)}		
		1/4	2/4	3/4	4/4 ^{o)}	연간 ^{o)}	상반	하반	연간
• 취업자 수 증감	29 (1.3)	26 (1.2)	29 (1.2)	30 (1.3)	30 (1.3)	29 (1.2)	31 (1.3)	30 (1.3)	30 (1.3)
• 실업률(연계열)(S.A.)	3.5 -	3.6 3.2	3.2 3.3	3.1 3.3	3.1 3.2	3.3 -	3.3 3.2	3.1 3.2	3.2 -

주: () 내는 취업자 수 증감률(%)

3. 물가

- 2008년중 소비자물가(연평균 기준)는 해외요인으로 인한 비용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압력의 시차효과도 가시화됨으로써 금년(2.5%)보다 크게 높아진 3.3% 내외 상승 전망
- 특히 상반기중에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파급영향, 등록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집중인상 등으로 3.5% 내외의 높은 오름세 예상
-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기타공업제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세 확대 등으로 2.9% 전망(2007년 2.4%)

물가 전망

(전년동기 대비, %)

	2006	2007					2008 ^{o)}		
		1/4	2/4	3/4	4/4 ^{o)}	연간 ^{o)}	상반	하반	연간
• 소비자물가	2.2 (2.1)	2.1 (1.5)	2.4 (0.5)	2.3 (1.1)	3.3 (0.5)	2.5 (3.5)	3.5 (1.9)	3.1 (1.1)	3.3 (2.9)
• 근원인플레이션	1.8 (2.1)	2.3 (1.3)	2.3 (0.4)	2.3 (0.4)	2.4 (0.4)	2.4 (2.4)	2.8 (2.1)	3.0 (0.8)	2.9 (3.0)

주: () 내는 전기 말월 대비

4. 대외거래

- 2008년중 경상수지는 3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전망

- 수출이 미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 등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수입이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금년(315억달러)보다 축소된 26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해외여행지급 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290억달러 내외로 확대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달러)

	2007					2008 ^{a)}		
	1/4	2/4	3/4	4/4 ^{b)}	연간 ^{b)}	상반	하반	연간
• 경상수지	△17	0	46	36	65	△85	55	△30
• 상품수지	60	70	98	87	315	73	187	260
• 수출(통관) (증가율, %) ^{c)}	847 (14.7)	930 (14.1)	906 (9.5)	1,022 (16.9)	3,705 (13.8)	1,980 (11.4)	2,160 (12.0)	4,140 (11.6)
• 수입(통관) (증가율, %) ^{c)}	823 (13.4)	878 (14.5)	860 (7.2)	976 (22.1)	3,535 (14.3)	1,970 (15.8)	2,040 (11.2)	4,010 (13.4)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77	△70	△52	△51	△250	△158	△132	△290

주: 1)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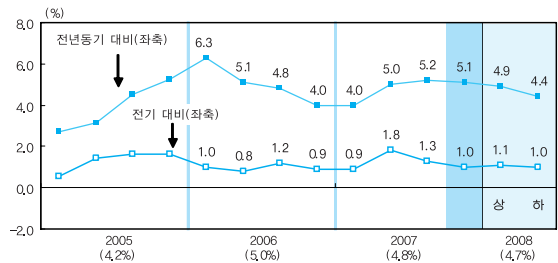
III. 경제상황 종합판단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금까지는 고유가 충격이 선진국 경기호조, 신흥시장국 고성장 등에 의해 상당 부분 흡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불안 심리 확산 등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현 재화될 가능성
- 서브프라임 자산가치의 재평가 및 부실 증가 등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우려
- 그러나 이 같은 리스크요인으로 인해 국내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현재 예상되는 유가 경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진전, 원화 환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미국 경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서브프라임 부실의 영향이 악화되면서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08년중 GDP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7%를 기록하여 당초 예상한 대로 경기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상반 4.9% → 하반 4.4%)
- 수출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도 소비를 중심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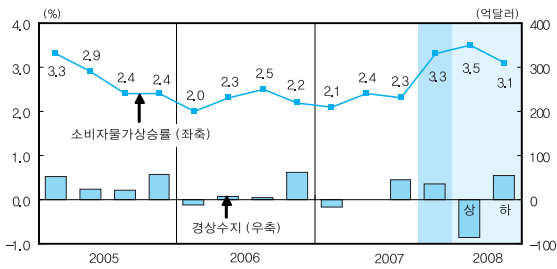
GDP성장률 전망



- 다만 유가 상승세 지속,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의 확산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예상 외로 악화될 경우 국내경기의 상승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우려
-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등 공급측 상승요인과 함께 내수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현재화되면서 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될 전망
- 부동산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大選,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

-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는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늘어나 소폭 적자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경상수지 추이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3일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에서 발표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소비자물가가 11월중 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하는 등 최근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고유가와 농산물 작황 부진 등 비용측 요인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
- 다만, 물가변동의 장기적 기초를 의미하는 근원물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풍부한 유동성과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 비용상승요인으로 인해 최근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
 - 아울러,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trade-off)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정부는 향후에도 비용과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유가 등 비용측 상승요인은 시장원리에 따라, 상품가격에 반영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수요측 요인은 상승압력을 적절히 관리

1.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소비자물가가 10월 이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 유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까지 2%대의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10월 3.0%에 이어 11월에는 3.5% 상승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구분	04	05	06	07										
				1	2	3	4	5	6	7	8	9	10	11
전월비	-	-	-	0.2	0.7	0.6	0.4	0.1	0.0	0.4	0.1	0.6	0.2	0.0
전년동월비	-	-	-	1.7	2.2	2.2	2.5	2.3	2.5	2.5	2.0	2.3	3.0	3.5
전년동기비	3.6	2.8	2.2	1.7	2.0	2.1	2.1	2.2	2.2	2.4	2.3	2.3	2.3	2.4

- 소비자물가 부문별로는,
 -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
 - 집세는 지난해 전·월세 가격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 모습
 - 지방공공요금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서비스 요금도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요측 압력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부문별 물가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

	06.11월	07.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축수산물	1.6	2.4	3.5	△2.6	0.7	4.4	4.5
공업제품	0.8	1.6	1.4	1.4	1.8	2.8	4.1
- 석유류	△2.3	1.6	0.8	0.1	1.8	7.3	14.1
집세	1.1	1.9	1.9	2.0	2.0	1.8	1.9
공공요금	3.8	3.5	3.1	3.1	2.6	2.6	3.4
- 중앙공공요금	2.0	1.4	1.4	1.4	0.6	0.8	0.8
- 지방공공요금	6.8	6.8	5.5	5.5	6.3	5.0	7.6
개인서비스	2.9	3.0	3.1	3.2	3.2	3.3	3.2

2.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고유가와 농산물 작황 부진 등 비용측 요인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요인이 가세한 데 기인

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 최근 국제유가(Dubai 기준)가 85~9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석유제품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

국제유가 동향

(단위: 현물, \$/b)

	2006	2007	07.9월	07.10월	07.11월	11.9	11.16	11.23	11.30
Dubai	61.6	66.0	73.3	77.2	86.9	87.5	85.2	88.7	84.1
Brent	65.1	70.2	77.5	82.8	92.9	93.6	91.8	95.7	88.8
WTI	66.0	69.5	80.0	85.9	94.7	95.5	95.1	-	88.7
싱가폴(휘발유)	72.5	80.6	81.4	87.5	97.1	99.5	97.8	101.3	96.6

- 이에 따라, 11월중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 확대

국내 석유제품 가격변동률

(단위: 전년동기·월 대비, %)

	2006	07.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휘발유	4.2	△1.6	0.5	0.2	2.2	8.1	13.5
경유	13.7	0.3	△3.0	△0.7	1.8	10.8	18.4
등유	7.0	△5.7	△4.3	△3.9	△2.3	6.4	18.3

②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 통상 농산물 가격은 가을물량이 출하되는 10월부터는 가격이 크게 하락하나, 금년에는 하락폭 축소
- 특히 배추·무 등 채소류가 장마(8~9월), 생산량 감소¹⁾ 등의 영향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계속 유지²⁾ 하고 있는 상황

1) 추정 생산량(평년 대비 증감률, %) : 배추 108만톤(△11.7), 무 44만톤(△34.4)

2) 농산물유통공사 소매가격 (원/포기)

배추 : (06. 11) 1,207 → (07. 6) 1,419 → (9) 3,156 → (10) 3,451
→ (11) 2,934

무 : (06. 11) 716 → (07. 6) 989 → (9) 1,553 → (10) 1,747
→ (11) 1,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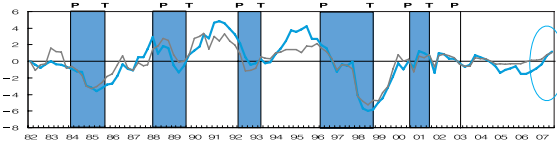
③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 증대

- 국내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물가에 대한 총수요압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

* 소비자재판매(%) : (06. 4/4) 4.5 → (07. 1/4) 7.1 → (2/4) 5.3
→ (3/4) 8.6, (9) 8.5 → (10) 7.9

-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측정된 총수요 압력이 상반기중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3/4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

총수요 압력 추이(KDI, 07. 11월)



* 붉은 선은 GDP deflator, 가는 선은 근원물가를 각각 이용한 총수요 압력 추정치

④ 작년 10·11월 물가상승 수준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 지난해 11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1%로 최근 5년간 11월 상승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10~11월의 경우 여름휴가철 이후 하락

석유류 가격 변동률

(단위: %)

	06년						7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 월 비	13	04	△14	△39	△21	△03	05	△04	04	13	41
전년동월비	89	74	27	△13	△23	△19	08	01	18	73	141

- 농산물 가격의 경우에도 지난해 10·11월중 계절 물량이 대규모로 출하되면서 크게 하락

농산물 가격 변동률

(단위: 전월비, %)

	2005		2006		2007			
	10	11	10	11	10	11		
전 월 비	△3.0	△6.7	△2.6	△8.0	△4.6	△5.9	0.8	△5.8
전년동월비	0.4	△2.6	0.8	△0.7	△0.7	1.6	7.9	8.1

3. 물가상승에 대한 평가

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의

장기적 기초를 의미하는 근원물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

-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고유가 지속 등 외부 불안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한편,
-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점을 시사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 대비, %)

	05년	06년	07.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8	2.2	2.5	2.5	2.0	2.3	3.0	3.5
근원물가	2.4	1.8	2.3	2.3	2.3	2.3	2.4	2.4

*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산정

② 풍부한 유동성과 국제유가·곡물 가격 상승 등 비용상승요인으로 인해 최근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전년동월·기비, %)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폴	홍콩	미국	유로지역	독일	프랑스	영국
06년(A)	2.2	1.5	0.6	1.0	2.0	3.2	2.2	1.7	1.7	2.3
07. 8월	2.0	6.5	1.6	2.9	1.6	2.0	1.7	1.9	1.2	1.8
07. 9월	2.3	6.2	3.1	2.7	1.6	2.8	2.1	2.4	1.5	1.8
07.10월(B)	3.0	6.5	5.3	3.6	3.2	3.5	2.6	2.4	2.0	2.1
B-A	0.8	5.0	4.7	2.6	1.2	0.3	0.4	0.7	0.3	△0.2

③ 내수회복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

- 경기회복으로 국내소비가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수요측 압력으로 물가가 어느정도 상승(trade-off)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

4.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 유가 등 비용측 상승요인은 시장원리에 따라 상품가격에 반영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수요측 요인은 상승압력을 적절히 관리

①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 12월 소비자물가도 고유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 기저효과(06.12월 2.1%) 등의 영향으로 3%대의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금년 연간으로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인 「2.5% 내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07. 1~1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4% 상승하였으며, 12월중 3% 중반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연간으로는 2.5% 내외 상승하는 결과

② 정부는 향후에도 비용과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

- ① 원유·곡물가격 상승 등 비용측 상승요인은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조절 추진
- 석유시장 유통구조 투명화 등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선별적 지원대책(11. 13일)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
 - 1) 기초수급자 가계의 난방비 추가지원(7만원)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12월중 우선 2.2만원(총 140억원) 지급 계획
 - 2)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30%)는 07. 12월중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여 08. 1월부터 시행 예정
 - 주요 곡물 생산국과의 정부 간 협력채널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 (농림부에서 T/F 운영중)

*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단기간 할당관세 적용 등 충격 완화방안 강구

②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 가격은 중점적으로 관리

〈공공요금〉

- 중앙공공요금(소비자물가 가중치 7.7%)의 원가상승 요인은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
 - 수도·가스·대중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가중치 5.4%)의 경우에도 지자체와의 협조하에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
- * 11. 27일 시도 부지사회의(행자부 주관)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

〈농축수산물 가격〉

- 김장철 배추·무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방출, 산지출하 독려, 생육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최소화
 - 계약재배물량(07년 배추 7만톤, 무 4만톤)을 조기에 최대한 방출
 - 배추·무의 조기출하 및 산지출하 확대를 독려
- * 계약재배물량 방출, 산지출하 확대 등으로 11월 들어 배추 △15.0%, 무 △5.8% 가격 하락(농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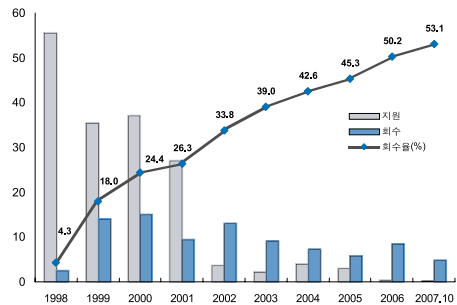
③ 수요측 상승압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통해 적절히 관리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이 자료는 2007년 11월 30일 공자위사무국 의사총괄과에서 발표한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97. 11~'07. 10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4조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89.3조원 회수
 ⇒ '07. 10월말 현재 회수율(누계)은 53.1%(전월 대비 0.2%p 증가)
 ※ '04년말 42.6%, '05년말 45.3%, '06년말 50.2%

- '07년 10월중에는 9억원 지원, 2,143억원 회수
 - 지원내역 : (구)현투증권 관련 사후손실보전*(예보 : 5억원) 소송결과에 따른 사후정산 등**(예보 : 4억원)
 - * 법인세 환급 소송관련 비용
 - **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순자산 부족분 사후정산
 - 회수내역 : 제일은행 자산매각* (1,459억원 : 예보), 울산북부신협 등 파산배당 (176억원 : 예보), 대투증권 출연금정산(2억원 : 예보), 부실채권 회수 등(506억원 : 캠프)
 - * 정리금융공사 보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3.8백만주) 매각



참고 2 공적자금 통계자료

※ '04. 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시 수치 표기방법 변경)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7. 10월말, 단위: 조원)

구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7.8	3.2	7.4	6.7	17.1	42.2
공공자금	13.4	-	-	6.4	-	19.8
기타자금 ^{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참고 1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1~10	계
지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09	168.4
회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4.8	89.3
회수율(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1	53.1

나. 금융권별

(’97. 11월~’07. 10월말, 단위: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행	34.0	13.9	-	14.4	24.6	86.9	
제2금융권	종금	2.7	0.7	18.3	-	1.2	22.9
	증권·투신	10.9	0.3	0.01	2.0	8.5	21.7
	보험	15.9	3.1	-	0.3	1.8	21.2
	신협	-	-	4.8	0.05	-	4.8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계	29.5	4.6	30.3	3.0	11.7	79.1
해외금융기관 등	-	-	-	-	2.4	2.4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다. 기관별

(’97. 11월~’07. 10월말, 단위: 조원)

기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5	30.3	11.0	-	110.7
자산관리공사	-	-	-	-	38.6	38.6
정부	11.8	-	-	6.4	-	18.1
한국은행	0.9	-	-	-	-	0.9
계	63.5	18.5	30.3	17.4	38.6	168.4

라. 연도별

(’97. 11월~’07. 10월말, 단위: 조원)

연도	채권발행	회수자금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 0.2	△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 0.5	1.0	2.1	
2004년	-	4.0	△ 0.1	-	3.9	
2005년	-	3.3	△ 0.4	-	2.9	
2006년	-	0.4	△ 0.1	-	0.3	
2007년	1/4	-	0.08	△ 0.06	-	0.02
	2/4	-	0.04	-	-	0.04
	3/4	-	0.04	△ 0.01	-	0.03
	4/4	-	-	-	-	-
	계	-	0.16	△ 0.07	-	0.09
누계	102.1	42.2	19.8	4.3	168.4	

2. 공적자금 회수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7. 10월말, 단위: 조원)

구분	회수 방법						소계
	출자금회수	파산배당 등	자산매각 등	-			
예금보험공사	16.0	17.2	6.2	-			39.4
자산관리공사	국제입찰	ABS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계
	1.6	5.1	2.5	12.5	9.4	10.3	41.4
정부	출자금회수	후순위채권회수	-			소계	
	2.0	6.6	-			8.6	
계							89.3

나. 연도별

(’97. 11월~’07. 10월말, 단위: 조원)

연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계	
	출자금회수	파산배당 등	자산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1/4	1.12	-	0.28	1.4	0.11	0.13	1.64
	2/4	1.34	0.13	0.09	1.56	0.32	0.12	2.00
	3/4	0.53	0.22	0.15	0.89	0.10	-	0.99
	4/4	-	0.02	0.15	0.16	0.05	-	0.21
	계	2.98	0.37	0.66	4.01	0.58	0.25	4.83
누계	16.0	17.2	6.2	39.4	41.4	8.6	89.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 이 자료는 2007년 11월 29일 기획예산처 평가분석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예산처는 11월 28일 15시 30분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회의실에서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공청회에서는 기획예산처가 한국능률협회 연구용역, 10여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시안)」이 제시되었으며,
 • 학계, 공공기관, 노동계, 감사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이에 대해 토론하였음

■ 이동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경희대 교수, 경영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시안을 발표하였음

① 현재 기능별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과정별 지표 체계*로 변경하여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개선

*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결과) 3개 부문

②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던 과정과 성과를 분리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을 유도

*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계량지표 비중을 기존 30~40% → 40~45%로 확대

③ 비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객관성 제고

* 해당 영역에 대한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 경영개선 추진의 일관성, 학습과 혁신을 통한 개선 정도 등 3개 기준으로 6단계로 평가

④ 평가결과를 순위와 점수로 발표하던 종전방식에서 6단계로 등급화하여 기관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⑤ 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 평가단계별 지표별 필수 점검사항 확인

⑥ 경영평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책임성 강화

* 경영평가단 내부에서 활용하던 평가절차와 주요점검사항 등을 매뉴얼화

* 기관 실적제출, 평가단의 평가, 결과 집계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화

■ 기획예산처는 금번 공청회 결과와 현재 추진중인 모의평가(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한 뒤,

• 12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부터 적용할 예정

참고 1 경영평가제도 주요개편사항 대비표

구분	현행	개편
공공기관 성과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별 지표구성 * 종합경영 - 주요사업 - 경영관리 3개부문 • 하나의 지표에 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 * 예시) 「... 노력과 성과」(5점) * 성과비중 3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과정별 지표구성 * 리더십·전략(계획) - 경영시스템(집행) - 경영성과(결과) 3개 부문 • 과정과 성과를 별도의 지표로 분리하고 성과평가비중 확대 * 예시) 「... 노력」(2점), 「... 성과」(3점) * 성과비중 40~45%
중복평가 해소 및 지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를 별개로 평가 • 과다한 세부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평가 중 리더십관련 지표로 기관장 평가 • 지표를 간소화하고 개별 지표 정의를 명확히 규정
경영평가 객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량지표 평가시 구체적 기준 모호 *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등으로 9단계 등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량지표 평가시 평가기준을 구체화 * ①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 ② 경영개선 추진의 일관성 ③ 학습과 혁신을 통한 개선 정도를 6단계로 등급화
서열화 부작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위와 점수로 발표로 기관 간 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 평가결과는 점수와 순위로 제시 * 0.1점차이에도 순위와 성과급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단계 등급으로 발표하여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 평가결과는 경영수준으로 제시 * 유사한 수준인 경우 동일한 등급 부여
검증절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절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지표별 필수점검사항 확인 의무화
평가제도 운영상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된 절차 없이 경영평가단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전산화 * 평가절차와 주요 점검사항 매뉴얼화 * 기관실적 제출, 평가단 평가 등 경영평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화

참고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시안)

I. 추진경과

1. 추진배경

① 그동안 경영평가제도는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경영 견제역할을 수행

* 정부투자기관(14개)은 '84년, 정부산하기관(90여개)은 '04년부터 도입

② 공공기관운영법 시행('07. 4)으로 경영평가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정 필요

* 투자기관·산하기관 2원화된 경영평가시스템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여 평가기준·방법 일원화

③ 경영평가제도의 타당성·효율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 제기

• 공기업 운영에 대한 국민인식과 경영평가 결과 간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으며, 방만경영 차단에 있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 최근 알리오시스템상 직원 평균임금, 기관장 연봉 등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급증("멋대로 경영", "신들의 직장") →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

• 평가를 위한 투입노력·비용에 비해 실질적 성과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비판

• 현행 평가모델의 변경 필요성과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평가모델 도입·적용의 필요성도 제기

2. 추진 경과

① '06. 12월, 경영평가단을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 재설계 방향 마련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

- ① 평가지표체계를 핵심 경영성과 측정에 용이한 구조로 재편
- ②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위주로 간소화하고, 중복성 조정
- ③ 평가단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제고
- ④ 평가결과 순위도출방식 개선을 통한 기관 간 과열 경쟁 완화

② '07년 5~9월, 전문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혁신 방안 구체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해외·민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수렴 등(6차례)
- 피평가기관 평가업무 담당자 심층 인터뷰, 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문제점 진단·대안 마련

* 총 14개 기관 인터뷰와 9차례의 T/F회의를 개최

③ '07. 10월, 혁신방안 시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각 계의견 수렴

- 공공기관운영위 정책자문단 평가제도분과위(경영평가단장 및 전문가 등 8인)를 중심으로 대안의 타당성 검증
- 혁신방안에 따른 시범사업(Pilot Test) 추진 및 투자기관평가단·산하기관평가단과 혁신방안에 따른 평가지표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담당자, 학계, 노조 등을 대상으로 비공식 의견수렴절차 추진중

II. 현행 경영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경영평가제도 개요

① 평가지표 체계

- 경영평가단 검토, 부처·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표 개선 후 공공기관운영위 의결로 확정(전년도 말까지)
- 종합경영·주요사업·경영관리 3개 부문, 100여개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

부문	평가내용	지표명
종합경영	경영총 리더십과 기관의 종합적 혁신노력, 생산성 등을 평가	책임경영, 경영혁신, 이사회·감사기능 활성화, 고객만족도 등
주요사업	개별 사업의 실적을 평가	해당기관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2~4개의 사업을 선정
경영관리	인사·조직·재무 등 일반적인 기관 관리 측면을 평가	조직 및 인사, 보수 및 노사관리, 재무 및 예산관리

-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실시
- 기관장 평가체계는 책임경영·혁신경영·윤리경영 등 개인평가 및 기관 종합평가의 비율을 각기 50%씩 반영

지표분야(배점)	평가지표
책임경영(20)	· 책임경영 노력과 성과 등
혁신경영(15)	· 혁신 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 등
윤리경영(15)	· 윤리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등
조직 경영성과(50)	·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② 평가방법

- 지표의 성격·계량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계량평가/비계량평가 방법을 적용
- 비계량평가는 9개 등급(A+~Eo)으로 구분하여 평점을 부여

등급	A+	Ao	B+	Bo	Co	D+	Do	E+	Eo
평점	100	87.5	75.0	62.5	50.0	37.5	25.0	12.5	0

- 계량평가는 지표별로 다음 5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

평가방법	구체적 평가내용	적용대상
추세치 평가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범위 내에 분포하는지 측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10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β분포 평가	최상·최하·직전연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범위 내에 분포하는지 측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10년 이하로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부여 평가	실적/목표의 비율로 측정하되, 최저목표(90~80%)와 최고목표(110%) 간 득점구간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또는 10년 이하 실적치가 있으나 신뢰 곤란한 경우
목표부여 평가(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이상 축적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목표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 여부를 점검	평가대상 실적치가 5년 미만인 경우

* 지표별 평가방법은 기관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평가편람에서 규정

③ 평가절차

- 평가편람 확정(운영위 의결) : 전년도 말
- 경영평가단 구성(기획예산처장관) : 차년도 2월
-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공공기관) : 차년도 3. 20일
- 경영실적평가 실시(경영평가단) : 차년도 3~6월
-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운영위 의결) : 차년도 6. 20일까지
- 평가결과 대통령 및 국회 보고(기획예산처 장관)

④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매년 2월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 * 부처·기관·단체 추천 인력 풀(1,000여명) 활용, 주무부처 추천, 평가단장 협의 등을 거쳐 각 분야 전문가 선임
- 평가단장을 중심으로 총괄반과 각 유형별 평가팀으로 운영

⑤ 평가결과 후속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 산정(참고 2)
- 우수기관 표창 및 부진기관 경고 등
 - 우수기관에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 수여(관련 유공자 표창 포함)
 - 부진기관은 기관경고,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점검 등 실시
- 평가결과 피드백
 - 경영평가결과 설명회를 통해 개선사항·우수기관 사례 등 설명

2.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①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성과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 ① 평가지표 수가 많고 중복되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에 곤란
 - 평가결과 우수 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의문
- ② 노력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에 포함(과정과 결과가 혼재)하여 성과달성에 있어 노력과 성과를 분리하기 곤란
- ③ 순위·점수로 평가결과를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개선보다는 과다경쟁 등 부작용 유발
 - * '06년 투자기관 평가결과 1·2위 간 점수차는 0.1점, 2·3위 간은 0.2점

② 평가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이 일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

- ① 지표별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미흡
 - 세부 평가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관측의 사전준비가 어렵고, 평가위원 간 지표 해석에 차

이도 발생

- ② 비계량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이 없어 동일 지표에 대해 평가자별 평가결과가 상이할 가능성
- ③ 평가절차상 오류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평가단의 검증과정이 비공식적

③ 평가를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

- ① 평가지표 수가 민간기업 평가(10개 내외)에 비해 과다
 - 별도평가의 실익이 크지 않은 사항까지 지표로 반영하여 중요한 경영성과 평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
 - 평가과정에서도 과도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비용 소요
- ② 기관평가·기관장평가·혁신평가 간 지표 중복으로 공공기관 평가부담 과중
 - 혁신평가(1~4월), 경영평가(3~6월)가 이어지는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이 평가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비판

④ 평가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

- ① 피평가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부재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지 못함
- ② 평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움
 - 평가과정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평가위원별 성향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위원 별로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파악 곤란

Ⅲ. 혁신방안

1. 기본방향

① 공공기관의 실질적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설계

- 효율성 등 경영성과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표를 기존 기능별 → 과정별 지표로 변경하고 핵심지표로 간소화
- 과정과 성과를 분리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성과향상 유도

②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객관성 제고를 위해 6단계 비계량지표 평가기준 마련
- 평가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제도화

③ 평가제도 운영 효율화

- 평가결과를 경영성과와 개선도 등을 감안, 6단계로 등급화
- 여타평가와 중복 방지를 위해 평가지표 조정

④ 평가시스템 운영상 책임성 강화

- 평가 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획예산처의 점검을 강화
-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

2. 경영성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① 경영효율화와 체계적인 경영개선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 경영효율성을 평가하는 공통 계량지표(6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여 방만경영 견제기능 강화
- * 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인건비 인상률, 자본생산성, 계량관

리업무비, 고객만족도 개선도 등 6개 지표 비중을 기존 16~25점에서 21~26점으로 확대

- 재무(예산) 성과지표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화

② 경영성과 측정에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고, 지표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

- 공통 비계량지표를 세부지표 기준 27개 → 12개 핵심지표로 축소
- 경영혁신 관련 5개 세부지표는 여타지표 평가시 포함, 조직·재무·예산 관련 10개 세부지표는 분야별로 통합
- 12개 비계량지표의 평가대상을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별로 사전적인 경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 규정

③ 주요사업 지표는 사업추진 과정(활동)과 성과를 분리하여 보다 객관적인 노력과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지표 구분	평가내용
주요사업 추진전략(5%)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관리
주요사업 활동(10~15%)	해당 주요사업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주요사업 성과(20%)	해당 주요사업 성과를 평가

④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경영과정별로 구성

- 현행 평가지표 배치는 경영층(종합경영), 사업부서(주요사업), 관리부서(경영관리)가 각각 기능별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중점
-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각 부문별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 종합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가지는지 납득하기에 어려움
- 앞으로는 『계획 — 집행 — 성과도출』이라는 업무과정에 따라 『리더십·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 3부문을 지표로 재편

- 평가결과가 제시되었을 때, 경영과정 중 어느 단계가 잘 되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대국민 수용도 제고

※ 해외 우수평가모델(말콤 볼드리지, EFQM)과 국내 여타 평가제도(국가경영품질상, 정부업무평가, 혁신평가)도 이러한 과정별로 평가지표 배치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평가지표
리더십·전략 (Driver)	비전, 목표, 전략, 리더십 등 조직을 이끄는 동인(動因)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층 리더십 • 이사회·감사 • CS경영, 투명·윤리 경영 • 비전 및 전략 • 사업추진전략
경영시스템 (Infra&Activity)	사업 추진활동의 효율성 및 조직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활동 •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보수관리, 재무관리, 노사관계, 성과관리체계 등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Result)	주요사업 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를 제대로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성과 • 고객만족도 개선도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 계량인건비, 인건비 인상률 • 재무예산 성과, 계량관리업무비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3. 경영평가의 신뢰성 제고

① 비계량지표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 마련

- ① 해당 영역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경영시스템의 구축 여부, ② 추진방법의 타당성·일관성, ③ 학습과 혁신을 통한 개선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6등급으로 평가

등급	E	D	C	B	A	S
접근 방법	• 임의적 접근	•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단계	•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 사용 •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일부 있음	• 몇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접근방법 사용 •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다수 있음	• 대부분 영역에서 필요한 접근방법 사용 • 체계적·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많음	•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접근방법 사용 •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효과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증거가 있음
추진 방법	• 임의적 추진방법만 실행	• 기본적 접근방법이 적용되는 초기 단계. 실질적 효과는 미약	• 일부 영역에서 체계적인 추진방법을 개발·적용	•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체계적 추진 방법을 다수 실행	• 대부분 업무영역에서 체계적 추진 방법이 실행	• 모든 업무영역에서 체계적 추진방법이 일관성 있게 실행
학습과 혁신	•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만 대응	• 개선 지향적 체계로 변화하는 초기 단계	• 핵심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시작	• 핵심 프로세스의 효과성, 효율성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 활용. • 이로 인한 조직학습이 일부 이루어짐	• 체계적인 접근과 이로 인한 조직 학습이 경영틀로 정착 •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개선이 일부 조직에서는 이루어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	• 체계적인 접근과 이로 인한 조직 학습이 모든 조직단위에 걸쳐 주요한 경영틀로 정착 • 혁신과 개선이 모든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② 평가단의 지표별 평가과정에 대한 점검과정 신설

- 지표별 필수 점검사항 점검 여부, 절차의 적정성 등 단계별 평가결과 점검과정을 신설
- 지표별로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평가토록 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오류발생 최소화

* 평가위원별로 평가시트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평가근거 명확화

4. 경영평가제도 운영 효율화

① 평가결과는 6단계로 등급화하여 발표

- 등급은 말콤볼드리지 평가방법 및 혁신평가 등급 등을 감안 6단계로 설계
- 등급제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상향 평준화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 강구
- 성과급은 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평가등급 및 수준정의안

등급	수준 정의
S 등급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A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대부분의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남에 따라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B 등급	일부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일부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남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C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부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습과 혁신이 초기 단계에 있고 일반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단계
D 등급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수준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초기 단계에 있고 성과창출이 미흡한 단계
E 등급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습과 혁신이 필요하고 성과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계

② 평가유형 구분 합리화

• 공기업은 업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토대로 SOC

와 서비스·진흥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

유형	유형구분 기준
SOC 유형 (14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서비스·진흥·제조 유형(10개)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 준정부기관은 현행 유형분류틀(5개 유형) 유지

유형	유형구분 기준
1. 검사·검증 (12개)	수수료를 받고, 기계·장비·시설·부품 등의 기능·성능·안전도에 대한 검사·진단을 하면서, 수익활동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기관
2. 문화·국민생활(15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및 홍보, 체육진흥 등 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공익사업 수행
3. 산업진흥 (26개)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정보제공, 기술지원, 지도·자문, 품질 및 가격 표준화 등 주로 공익적 사업 수행 * 정원 300인을 기준으로 1·2 유형구분
4. 교육훈련·연구지원(11개)	재정지원 또는 교육비 등 자체 수입으로 연수, 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등 주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 및 자금·기술지원, 연구사업 평가 등을 통해 학술 및 과학기술을 지원·촉진하는 기능 수행
5. 연·기금운용 (13개)	보증·보험·상호부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구 및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운용평가대상

③ 기관장 평가와의 중복 해소

• 기관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요소는 과감히 배제하고 별도평가 실익이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기관 평가와 유사한 지표는 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평가부담 완화

기관장 평가지표 개선안

평가영역	현행 지표	개선안 지표
기관장 역량평가 (50%)	책임경영 노력과 성과 (8)	비전 및 전략개발 (10)
	지배구조 적정화 (3)	CS경영 (10)
	고객만족경영 실천노력과 성과 (4)	윤리·투명경영 (10)
	혁신 리더십 및 비전과 전략 (7)	성과관리체계 (5)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 (8)	노사관계 (10)
	윤리경영 실천 노력과 성과 (5)	사회적 책임성 강화 (5)
	사회적 책임성 강화노력과 성과 (5)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10)	
기관 운영성과 (50%)	기관 경영평가 결과 (50)	기관 경영평가 결과 (50)

* 밑줄친 지표는 기관 평가결과를 활용

※ 경영평가와 혁신평가 간 중복 해소방안은 내년

이후 혁신전략과 연계하여 추가 검토

5. 경영평가제도 운영상 책임성 강화

① 평가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화하여 관리

- 기관의 실적 제출, 평가단의 평가, 집계 등 평가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평가과정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② 경영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 개발·보급

- 평가단에서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평가과정 및 지표별 주요 점검사항 등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공식화

③ 기획예산처의 평가과정에 대한 점검 강화

- 평가과정에서 매뉴얼 등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④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도입

- 평가결과 확정 전에 기관이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
-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한정하여 무분별한 문제제기는 사전에 예방

IV. 향후 추진계획

① 실제 적용을 위한 시범평가 실시(10.15~12월초)

- 2개 기관에 대해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따라 실적 보고서 작성, 평가단의 평가,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등 추진중
- 시범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의 현실 적용성 강화

② 이해관계자 설명 및 공청회 개최(10~11월말)

- 공청회 개최(11. 28)

③ 관계기관 협의(12월초)

④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과 평가편람 확정(12월말)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 이 자료는 2007년 11월 19일 기획예산처 경영지원4팀에서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제도를 실시 (2004년)한 이후 각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이 향상되고 있음
- 한국행정학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성과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 조사대상 공공기관(175개) 중 57%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 *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 중 성과관리 도입기관 86%
 - 정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 중 성과관리 도입기관 36%
 - ☞ 성과관리제도 :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보상과 연계시키는 시스템
 -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기관이 경영평가 결과도 우수
 - * 경영평가 평균점수('06년기준) : 도입기관 74.9 미도입기관 68.2
 - 성과평가의 조직발전 기여도, 구성원의 신뢰도도 긍정적이어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성과평가의 조직발전 기여도 : 영향을 미친다 62%,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 *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도 : 신뢰한다 58%, 신뢰할 수 없다 8%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성과관리제도가 실질적

- 인 성과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
 - 평가결과를 의식하여 도전적인 목표보다는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
 - 성과급 배분격차가 미미해서 일을 잘 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경우

* 성과급 최고-최저 간 배분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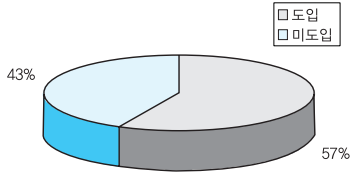
	50%p 미만	50~100%p	100~200%p	200%p 이상	기타
기관수 (175)	56 32%	41 23%	33 19%	12 7%	33 19%

- 향후 기획예산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 조직 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급 지급격차를 확대해 나가고
 - 전체 기관으로 성과관리제도를 확산시키며,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유인하는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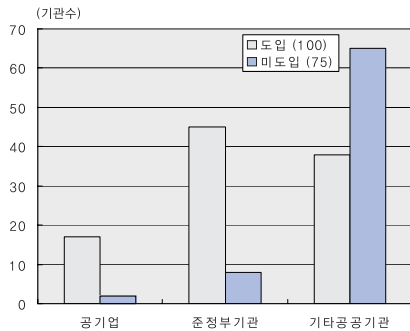
공공기관 성과관리 설문조사 주요 결과

- 조사개요
 - 대상 : 298개 공공기관
 - 기간 : '07. 10. 2 ~ 10. 25
 - 내용 : 성과관리 실태 및 인식
 - 응답 : 실태(175개 기관), 인식(130개 기관 2750명)

■ 성과관리제도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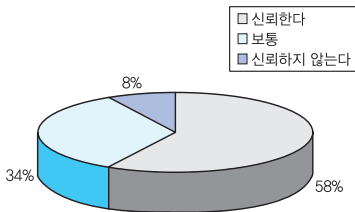


성과관리제도 도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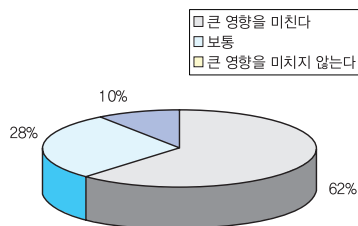


기관유형별 도입 현황

■ 평가결과 신뢰도 및 성과관리 조직발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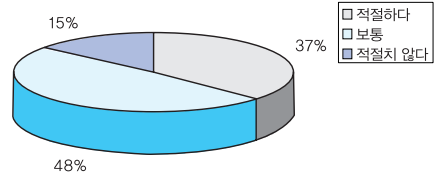


성과평가결과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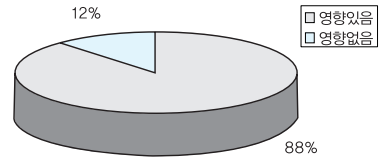


성과관리 조직발전 기여도

■ 부진부서 관리프로그램 및 승진·전보 반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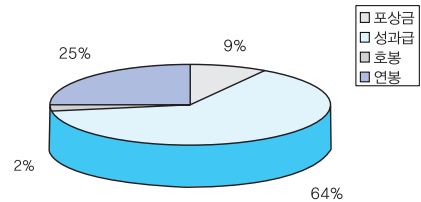


부진부서 관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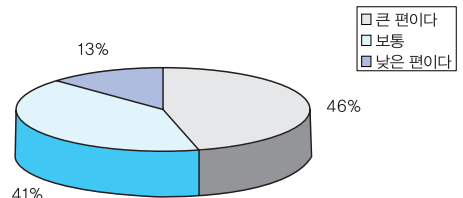


승진·전보 반영 여부

■ 금전적 보상 활용분야 및 인센티브 배분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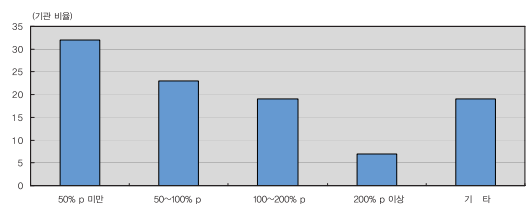


금전적 보상 활용분야



인센티브 배분격차

■ 성과급 최고-최저간 배분격차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
(공기업특별회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22,914,045	9,617,851	5,132,197	1,401,590	918,591	871,530	624,255	669,689	
	지방세수입	6,378,583	3,594,902	2,091,676	547,630	327,268	315,094	146,884	166,351	
	세외수입	9,323,964	4,228,601	2,286,521	568,948	401,749	389,775	260,330	321,279	
	지방교부세	2,764,654	115,165	14,954	10,725	13,044	7,143	47,079	22,220	
	지방양여금	-	-	-	-	-	-	-	-	-
	조정교부금	53,806	53,806	53,806	-	-	-	-	-	-
	보조금	2,136,803	468,101	178,146	99,609	62,144	43,683	39,291	45,228	
	지방채	2,256,235	1,157,276	507,094	174,678	114,386	115,836	130,671	114,611	
	지정재원	-	-	-	-	-	-	-	-	-
1991	합계	29,742,208	11,948,767	6,301,167	1,772,761	1,122,278	1,129,087	875,544	747,931	
	지방세수입	8,035,075	4,469,149	2,540,753	688,096	408,667	408,686	191,700	231,246	
	세외수입	15,291,635	6,351,969	3,202,450	915,516	573,895	671,240	558,040	430,827	
	지방교부세	3,452,403	139,803	-	26,193	25,586	9,156	47,343	31,525	
	지방양여금	557,031	111,406	-	39,508	23,432	16,956	18,064	13,445	
	조정교부금	-	-	-	-	-	-	-	-	-
	보조금	2,406,063	876,440	557,964	103,447	90,697	23,049	60,396	40,887	
	지방채	-	-	-	-	-	-	-	-	-
	지정재원	-	-	-	-	-	-	-	-	-
1992	합계	34,691,954	14,334,005	7,272,161	2,437,969	1,386,057	1,376,173	924,841	936,804	
	지방세수입	9,462,206	5,198,540	2,907,143	819,874	484,873	475,758	237,356	273,536	
	세외수입	15,528,603	7,074,630	3,545,061	1,389,767	506,718	754,504	435,441	443,139	
	지방교부세	3,925,064	127,030	1,145	15,914	23,021	7,683	49,199	30,068	
	지방양여금	1,230,602	140,729	-	53,414	35,341	26,307	-	25,667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750,414	547,183	210,435	89,822	98,985	17,965	93,040	36,936	
	지방채	2,795,065	1,245,893	608,377	69,178	237,119	93,956	109,805	127,458	
	지정재원	-	0	-	-	-	-	-	-	-
1993	합계	37,794,508	15,448,133	7,596,889	2,539,978	1,546,269	1,716,332	1,068,753	979,912	
	지방세수입	11,025,781	5,949,789	3,259,783	953,140	578,199	547,762	259,406	351,499	
	세외수입	15,564,527	6,824,401	3,069,675	1,289,896	601,259	985,592	411,423	466,556	
	지방교부세	4,412,413	151,341	750	22,836	20,140	8,855	68,536	30,224	
	지방양여금	1,421,075	189,614	-	60,250	39,083	28,731	34,557	26,993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2,169,097	523,109	216,856	88,763	95,841	30,428	63,856	27,365	
	지방채	3,201,615	1,809,879	1,049,825	125,093	211,747	114,964	230,975	77,275	
	지정재원	-	0	-	-	-	-	-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296,194	3,263,787	1,215,469	871,631	1,090,527	1,123,162	1,515,391	1,525,013	2,422,398	268,816
2,783,681	997,724	181,500	150,544	169,577	196,986	197,511	316,979	505,589	67,270
5,095,363	1,402,095	358,793	295,187	417,867	353,067	515,336	503,214	1,176,502	73,302
2,649,489	250,459	383,668	242,480	275,723	293,859	408,306	426,177	288,925	79,892
-	-	-	-	-	-	-	-	-	-
-	-	-	-	-	-	-	-	-	-
1,668,702	245,123	213,168	150,246	179,210	174,898	239,536	209,007	224,721	32,792
1,098,960	368,385	78,341	33,174	48,150	104,351	154,702	69,636	226,661	15,559
-	-	-	-	-	-	-	-	-	-
17,793,441	4,610,901	1,501,436	1,102,730	1,452,873	1,649,458	2,010,325	2,123,563	2,965,871	376,284
3,565,926	1,283,473	215,272	197,812	232,676	238,397	240,164	407,807	660,687	89,638
8,939,666	2,736,781	691,786	504,649	636,825	805,446	930,662	873,751	1,618,503	141,264
3,312,600	316,643	418,173	256,091	363,243	378,919	532,719	551,337	393,285	102,189
445,625	45,655	48,077	36,166	53,805	41,524	65,480	78,291	60,933	15,694
-	-	-	-	-	-	-	-	-	-
1,529,623	228,349	128,129	108,013	166,323	185,172	241,300	212,376	232,463	27,499
-	-	-	-	-	-	-	-	-	-
-	-	-	-	-	-	-	-	-	-
20,357,949	5,346,206	1,635,600	1,338,207	1,715,252	1,849,515	2,115,154	2,557,030	3,293,375	507,610
4,263,666	1,572,193	257,006	231,560	267,187	275,798	286,557	475,797	787,918	109,650
8,453,973	2,616,541	653,657	607,577	686,282	672,108	759,974	894,888	1,384,497	178,449
3,798,034	319,630	445,131	291,892	422,389	433,473	619,479	660,300	485,783	119,957
1,089,873	189,239	103,072	82,755	106,280	118,429	136,166	164,767	154,855	34,310
-	-	-	-	-	-	-	-	-	-
1,203,231	144,094	102,989	69,076	149,156	169,702	205,044	150,193	188,000	24,977
1,549,172	504,509	73,745	55,347	83,958	180,005	107,934	211,085	292,322	40,267
-	-	-	-	-	-	-	-	-	-
22,346,375	5,918,444	1,759,657	1,421,285	2,015,076	2,058,808	2,255,321	2,701,432	3,658,382	557,970
5,075,992	2,060,568	276,471	275,170	312,369	317,940	306,830	538,626	867,134	120,884
8,740,126	2,775,034	605,408	555,459	775,771	785,946	758,219	853,353	1,429,619	201,317
4,261,072	358,067	510,524	324,630	472,171	492,783	702,408	724,966	539,814	135,709
1,231,461	191,504	133,360	99,749	132,508	126,572	130,535	192,823	188,413	35,997
-	-	-	-	-	-	-	-	-	-
1,645,988	199,159	139,479	88,648	182,819	216,202	280,281	252,632	255,807	30,961
1,391,736	334,112	94,415	77,629	139,438	119,365	77,048	139,032	377,595	33,102
-	-	-	-	-	-	-	-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4	합계	44,417,354	17,769,358	8,749,353	2,730,229	2,254,224	1,846,272	999,324	1,189,956		
	지방세수입	13,227,759	6,995,341	3,849,975	1,071,900	723,620	617,049	322,050	410,747		
	세외수입	17,930,484	7,348,298	3,180,814	1,186,749	1,055,266	984,032	388,209	553,228		
	지방교부세	4,821,432	153,920	30	26,778	19,956	8,072	67,232	31,852		
	지방양여금	1,696,086	173,379	-	49,603	36,430	30,869	32,902	23,575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3,131,765	911,303	395,951	176,279	155,560	84,207	69,767	29,539		
	지방채	3,609,828	2,187,117	1,322,583	218,920	263,392	122,043	119,164	141,015		
	지정재원	-	0	-	-	-	-	-	-	-	
1995	합계	52,378,910	20,267,400	9,332,198	3,332,665	2,641,369	2,338,869	1,361,804	1,260,495		
	지방세수입	15,316,913	7,948,568	4,339,477	1,214,752	814,937	767,113	368,391	443,898		
	세외수입	20,746,487	8,413,744	3,629,132	1,233,129	1,195,733	1,199,500	655,908	500,342		
	지방교부세	5,674,580	242,505	1,800	31,860	42,753	58,103	82,891	25,098		
	지방양여금	1,870,124	207,740	-	57,558	46,321	33,130	39,849	30,882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4,109,221	1,041,847	423,185	160,089	211,950	132,047	60,210	54,366		
	지방채	-	0	-	-	-	-	-	-	-	
	지정재원	4,661,585	2,412,996	938,604	635,277	329,675	148,976	154,555	205,909		
1996	합계	63,085,526	24,110,541	11,254,545	4,142,677	2,935,172	2,717,920	1,759,951	1,300,276		
	지방세	17,396,462	8,977,825	4,892,331	1,423,591	925,755	852,739	413,812	469,597		
	세외수입	27,611,045	11,103,512	4,921,897	2,035,865	1,324,974	1,332,815	891,146	596,815		
	법정교부세	6,372,664	262,208	1,097	47,479	36,801	67,644	81,611	27,576		
	증액교부금	151,157	6,280	-	1,780	116	4,114	89	181		
	지방양여금	2,574,420	284,919	-	74,691	68,106	47,331	50,056	44,735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4,930,017	1,328,761	493,628	234,183	248,527	198,335	83,904	70,184		
	지방채	4,049,761	2,147,036	945,592	325,088	330,893	214,942	239,333	91,188		
1997	합계	69,571,628	26,815,416	11,538,833	4,405,460	3,409,744	2,847,398	1,980,334	1,403,280	1,230,367	
	지방세	18,497,728	9,990,511	5,332,578	1,407,263	895,671	953,300	476,171	488,283	437,245	
	세외수입	31,163,235	12,280,344	5,072,565	2,091,765	1,455,655	1,329,855	1,045,626	597,961	686,917	
	지방교부세	6,785,682	309,065	2,786	54,708	43,382	69,265	85,729	35,320	17,875	
	증액교부금	228,909	8,300	-	2,391	253	5,052	94	372	138	
	지방양여금	2,877,166	357,589	-	106,093	68,129	53,755	48,961	52,327	28,324	
	조정교부금	15,300	15,300	-	-	-	-	-	-	15,300	
	보조금	5,545,567	1,486,135	393,984	354,821	205,816	229,833	146,520	125,791	29,370	
	지방채	4,458,041	2,368,175	736,923	388,419	740,838	206,338	177,233	103,226	15,198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647,996	7,358,174	1,971,658	1,608,533	2,214,032	2,512,552	2,674,711	3,305,260	4,372,228	630,848
6,232,418	2,608,438	341,101	316,781	384,713	360,933	345,683	657,724	1,074,677	142,368
10,582,186	3,558,210	684,607	589,559	776,608	1,028,146	891,949	1,079,407	1,732,955	240,745
4,667,512	378,655	550,695	395,485	484,316	559,420	778,714	799,323	580,199	140,705
1,522,707	208,646	164,082	111,702	159,398	173,756	219,126	245,176	200,310	40,511
-	-	-	-	-	-	-	-	-	-
2,220,462	245,300	166,773	136,547	229,255	281,338	353,785	375,527	389,107	42,830
1,422,711	358,925	64,400	58,459	179,742	108,959	85,454	148,103	394,980	23,689
-	-	-	-	-	-	-	-	-	-
32,111,510	9,092,824	2,448,222	2,089,754	2,879,247	3,003,393	3,348,111	3,595,926	4,934,701	719,332
7,368,345	3,152,186	401,597	392,668	466,587	455,512	411,100	723,592	1,195,509	169,594
12,332,743	4,392,201	762,674	783,910	927,386	1,107,637	1,071,181	1,107,110	1,964,690	215,954
5,432,075	382,113	657,843	448,143	602,008	643,973	903,425	922,489	707,255	164,826
1,662,384	213,739	188,501	129,984	160,340	183,265	236,785	267,662	236,938	45,170
-	-	-	-	-	-	-	-	-	-
3,067,374	277,347	276,187	165,695	542,351	412,451	517,340	376,769	424,489	74,745
-	-	-	-	-	-	-	-	-	-
2,248,589	675,238	161,420	169,354	180,575	200,555	208,280	198,304	405,820	49,043
38,974,995	11,189,228	3,269,127	2,517,141	3,360,802	3,629,460	4,101,958	4,257,832	5,789,684	861,763
8,418,647	3,561,393	455,980	452,698	553,161	480,275	502,836	845,786	1,387,076	179,442
16,507,533	6,053,656	1,097,353	1,094,237	1,355,926	1,447,507	1,418,647	1,375,751	2,405,601	258,855
6,110,456	401,065	767,555	476,619	682,635	729,023	1,026,466	1,053,248	795,614	178,231
144,877	9,470	19,768	6,064	27,192	14,130	20,494	12,464	31,688	3,607
2,289,501	292,773	259,072	182,480	208,347	266,575	333,980	359,641	330,120	58,513
-	-	-	-	-	-	-	-	-	-
3,601,256	428,904	491,411	200,139	410,861	481,195	618,542	422,323	434,470	113,411
1,902,725	441,967	177,988	104,904	122,680	210,755	180,993	188,619	405,115	69,704
42,756,212	12,734,211	3,805,162	2,683,447	3,554,542	3,906,884	4,784,267	4,660,274	5,423,434	1,203,991
8,507,220	3,801,646	500,236	451,421	586,642	517,613	506,554	864,496	1,082,939	195,673
18,882,891	7,103,617	1,582,118	1,138,158	1,286,551	1,643,498	1,835,149	1,540,575	2,413,589	339,636
6,476,617	411,827	831,575	506,651	724,545	770,540	1,102,086	1,103,858	830,733	194,802
220,609	12,328	37,188	18,352	40,122	22,584	28,342	16,834	40,549	4,310
2,519,577	335,910	280,211	200,592	234,054	260,531	376,697	401,850	352,212	77,520
-	-	-	-	-	-	-	-	-	-
4,059,432	404,883	427,133	264,703	507,279	545,555	764,672	528,523	466,421	150,263
2,089,866	664,000	146,701	103,570	175,349	146,563	170,767	204,138	236,991	241,787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8	합계	69,120,908	25,764,132	10,612,820	4,473,804	3,421,869	2,862,465	1,968,342	1,429,345	995,487
	지방세	17,148,290	9,235,517	4,944,434	1,310,666	825,578	867,296	445,580	443,743	398,220
	세외수입	29,370,420	10,876,233	4,404,543	1,806,163	1,411,488	1,276,109	1,027,650	537,620	412,660
	지방교부세	7,039,526	316,000	3,145	44,754	38,293	79,678	85,559	37,469	27,102
	증액교부금	294,976	19,136	-	12,470	98	4,977	588	132	871
	지방양여금	2,885,525	347,047	-	91,175	72,641	54,178	44,772	51,697	32,584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7,766,452	2,290,661	554,907	547,442	326,649	349,986	233,691	212,585	65,401
	지방채	4,618,519	2,682,338	708,791	661,134	747,122	230,241	130,502	146,099	58,449
1999	합계	73,125,735	28,166,737	11,581,131	5,271,005	3,507,752	2,882,873	1,995,188	1,662,924	1,265,864
	지방세 수입	18,568,564	10,086,023	5,566,120	1,383,722	869,229	888,653	435,397	507,336	435,566
	세외수입	29,751,086	11,044,257	4,018,964	2,221,283	1,490,525	1,225,105	914,523	691,576	482,281
	법정교부세	6,535,394	432,836	80,948	56,090	48,947	91,969	83,991	35,515	35,376
	증액교부금	382,781	60,003	-	33,622	2,201	2,799	8,873	11,067	1,441
	지방양여금	2,906,139	344,553	-	91,482	63,247	55,537	45,286	47,499	41,502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9,687,534	2,986,368	897,490	643,976	430,171	398,354	304,681	223,697	87,999
	지방채	5,293,697	3,212,157	1,017,609	840,830	603,432	220,456	202,437	145,694	181,699
2000	합계	77,176,148	28,902,257	12,618,608	4,558,139	3,529,097	2,992,045	2,021,281	1,825,320	1,357,767
	지방세	20,361,600	11,087,542	6,204,198	1,431,784	931,264	1,015,241	484,269	555,673	465,113
	세외수입	31,531,452	11,886,685	4,801,587	2,220,367	1,370,710	1,303,564	912,702	763,214	514,541
	지방교부세	8,244,954	403,040	9,493	66,072	50,830	92,332	100,258	46,290	37,765
	증액교부금	204,442	21,987	-	2,026	154	3,116	77	15,183	1,431
	지방양여금	3,713,447	399,707	-	88,449	89,715	68,830	48,568	48,845	55,300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9,892,702	3,150,717	796,939	566,943	593,770	399,769	326,953	268,801	197,542
지방채	3,227,551	1,952,579	806,391	182,498	492,654	109,193	148,454	127,314	86,075	
2001	합계	93,995,619	33,893,385	14,619,028	5,517,992	3,985,007	3,743,200	2,400,419	2,082,892	1,544,847
	지방세	26,639,924	13,956,551	7,934,081	1,782,620	1,107,077	1,292,829	583,547	687,863	568,534
	세외수입	35,983,274	13,288,683	5,247,900	2,426,882	1,461,259	1,606,428	1,083,012	873,387	589,815
	지방교부세	12,209,985	829,006	6,010	201,974	103,427	169,245	152,632	91,798	103,920
	증액교부금	140,063	20,949	-	1,053	5,788	2,167	32	11,083	826
	지방양여금	4,628,105	518,988	-	112,774	98,867	87,562	58,427	54,903	106,455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11,177,968	3,250,582	700,120	681,237	673,286	394,088	399,870	300,657	101,324
지방채	3,216,300	2,028,626	730,917	311,452	535,303	190,881	122,899	63,201	73,973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3,356,776	12,497,352	3,832,278	2,874,793	3,598,315	3,869,590	4,971,004	5,150,433	5,403,126	1,159,885
7,912,773	3,520,308	469,462	415,483	550,901	509,453	479,463	804,323	962,431	200,949
18,494,187	6,653,439	1,555,074	1,193,295	1,289,363	1,555,822	1,927,130	1,517,164	2,351,220	451,680
6,723,526	427,552	826,103	520,554	734,615	821,337	1,149,733	1,160,985	885,342	197,305
275,840	9,243	21,230	96,017	39,751	1,739	40,104	22,561	37,753	7,442
2,538,478	331,114	279,308	196,052	247,399	271,218	373,391	387,864	371,482	80,650
-	-	-	-	-	-	-	-	-	-
5,475,791	827,997	512,935	351,441	614,531	585,231	861,198	930,069	646,497	145,802
1,936,181	727,699	168,166	101,951	121,755	124,700	139,985	327,467	148,401	76,057
44,958,998	13,209,538	3,888,255	2,834,733	3,766,330	3,677,611	5,119,802	5,451,817	5,845,764	1,165,148
8,482,541	3,917,932	470,683	452,825	576,775	509,389	513,022	859,062	971,728	211,125
18,706,829	6,406,002	1,407,110	1,294,200	1,393,618	1,359,955	1,996,121	2,015,215	2,476,641	357,967
6,102,558	397,335	767,726	489,676	647,306	739,739	1,039,860	1,044,361	808,573	167,982
322,778	42,835	27,759	23,378	39,959	37,932	57,298	39,528	45,055	9,034
2,561,586	340,103	264,628	181,305	251,430	285,500	365,205	391,136	390,966	91,313
-	-	-	-	-	-	-	-	-	-
6,701,166	1,372,888	780,702	361,557	657,081	625,216	1,020,125	852,537	809,225	221,835
2,081,540	732,443	169,647	31,792	200,161	119,880	128,171	249,978	343,576	105,982
48,273,891	14,258,187	4,152,722	2,902,714	4,104,700	3,962,660	5,646,804	5,757,033	6,203,851	1,285,220
9,274,058	4,331,141	498,120	474,337	633,908	530,669	562,045	948,694	1,060,249	234,895
19,644,767	7,103,919	1,638,359	1,200,797	1,404,400	1,310,727	1,981,415	1,980,614	2,647,231	377,305
7,841,914	532,920	986,292	603,939	852,503	944,656	1,349,348	1,323,464	1,019,866	228,926
182,455	7,367	18,952	12,731	19,113		64,846	25,589	28,403	5,454
3,313,740	468,044	370,391	245,874	338,750	341,779	461,734	514,248	464,871	108,049
-									
-									
6,741,985	1,290,321	561,270	357,625	653,375	682,991	1,124,132	886,741	933,073	252,457
1,274,972	524,475	79,338	7,411	202,651	151,838	103,284	77,683	50,158	78,134
60,102,234	17,659,609	5,125,246	3,572,881	5,130,495	5,026,229	7,008,173	7,079,104	7,878,379	1,622,118
12,683,373	6,431,974	643,919	603,108	801,859	658,176	702,773	1,151,559	1,362,461	327,544
22,694,591	8,001,626	1,552,453	1,251,468	1,751,680	1,597,435	2,449,550	2,334,900	3,333,253	422,226
11,380,979	789,964	1,430,307	896,425	1,214,304	1,314,469	1,903,250	1,905,377	1,568,089	358,794
119,114	4,949	7,149	3,334	9,642	22,573	45,890	11,602	11,753	2,222
4,109,117	567,976	441,353	312,998	429,982	438,321	603,512	620,145	571,038	123,792
-	-	-	-	-	-	-	-	-	-
-	-	-	-	-	-	-	-	-	-
7,927,386	1,405,353	925,644	453,396	810,077	874,002	1,184,377	986,634	970,404	317,499
1,187,674	457,767	124,421	52,152	112,951	121,253	118,821	68,887	61,381	70,041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2	합계	110,507,834	38,496,064	17,180,106	6,559,000	3,759,085	4,363,312	2,612,495	2,267,100	1,754,965
	지방세	31,583,550	16,625,168	9,430,644	2,223,482	1,292,069	1,530,259	673,652	840,070	634,991
	세외수입	42,284,635	14,946,858	5,963,709	2,729,837	1,365,487	2,049,930	1,240,885	918,718	678,292
	지방교부세	12,060,352	874,491	11,544	200,152	138,107	164,706	160,447	93,355	106,180
	증액교부금	418,729	42,407	-	3,975	223	4,378	20,086	11,287	2,456
	지방양여금	4,190,050	412,912	-	88,053	77,079	66,609	39,553	40,311	101,306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6,218,848	3,071,063	664,961	643,475	565,918	368,582	387,627	309,746	130,754
지방채	3,751,669	2,523,165	1,109,249	670,026	320,202	178,847	90,244	53,612	100,985	
2003	합계	122,725,967	40,618,901	18,498,124	6,238,852	3,992,477	4,835,313	2,712,931	2,440,279	1,900,924
	지방세	33,061,987	17,412,021	9,813,152	2,233,431	1,466,046	1,550,667	723,551	904,146	721,027
	세외수입	53,123,913	17,006,024	7,325,508	2,774,113	1,392,065	2,496,565	1,271,251	997,093	749,429
	지방교부세	13,397,334	960,767	4,564	215,537	227,841	132,589	162,721	103,918	113,598
	증액교부금	1,640,422	58,168	-	25,890	168	8,889	12,084	211	10,926
	지방양여금	4,412,010	427,680	-	94,415	85,125	70,551	43,186	46,173	88,230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4,254,518	3,382,147	750,871	719,910	638,927	372,184	408,374	327,059	164,823
지방채	2,835,782	1,372,094	604,030	175,556	182,306	203,868	91,764	61,680	52,892	
2004	합계	125,843,536	42,249,286	19,067,667	6,528,917	4,212,206	5,067,425	2,764,425	2,500,870	2,107,775
	지방세	34,159,391	17,256,280	9,726,335	2,196,824	1,401,591	1,565,749	699,005	873,172	793,603
	세외수입	56,387,543	18,501,891	7,967,555	3,161,042	1,641,751	2,574,332	1,306,570	1,004,260	846,382
	지방교부세	14,234,544	979,530	10,813	219,707	184,335	133,455	174,703	112,659	143,858
	증액교부금	240,744	7,244	-	724	1,427	2,731	56	111	2,196
	지방양여금	3,848,942	382,650	-	82,103	77,205	75,711	39,885	46,369	61,377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3,496,361	3,703,895	874,646	711,637	635,157	473,297	427,455	381,511	200,192
지방채	3,476,010	1,417,796	488,319	156,881	270,740	242,150	116,752	82,789	60,166	
2005	합계	128,414,560	43,530,203	19,463,126	6,779,761	4,182,332	5,521,745	2,707,949	2,600,709	2,274,581
	지방세	35,976,900	18,069,827	10,011,732	2,265,338	1,523,228	1,739,789	773,481	919,761	836,498
	세외수입	51,863,067	17,699,880	7,687,322	2,988,414	1,520,987	2,596,542	1,057,886	975,809	872,919
	지방교부세	20,025,251	1,737,849	189,842	360,598	317,188	205,379	269,946	167,039	227,85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6,945,663	4,202,397	845,126	869,139	665,009	625,604	489,099	473,705	234,71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603,678	1,820,250	729,104	296,272	155,919	354,431	117,536	64,395	102,592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011,770	20,908,735	7,614,646	4,176,497	5,551,445	5,454,700	8,282,547	8,286,327	9,974,188	1,762,686
14,958,382	8,031,222	709,718	670,854	883,520	698,245	766,044	1,196,264	1,625,931	376,584
27,337,777	9,716,237	2,182,566	1,469,068	2,178,212	1,778,030	2,997,978	2,697,782	3,825,067	492,837
11,185,861	804,523	1,413,751	910,819	1,195,152	1,263,006	1,905,572	1,831,300	1,537,445	324,294
376,322	11,720	110,226	6,484	15,213	33,349	83,947	38,725	73,162	3,496
3,777,139	617,018	450,456	258,239	342,906	394,270	534,126	518,786	507,491	153,846
-	-	-	-	-	-	-	-	-	-
-	-	-	-	-	-	-	-	-	-
13,147,785	1,256,744	2,628,615	773,790	847,861	1,205,906	1,876,555	1,873,509	2,312,434	372,370
1,228,504	471,270	119,315	87,243	88,580	81,895	118,325	129,961	92,657	39,258
82,107,065	23,349,815	8,818,209	4,790,869	6,355,554	5,984,685	8,927,028	9,798,771	12,109,734	1,972,399
15,649,966	8,205,187	762,126	732,413	1,072,721	742,063	773,130	1,260,963	1,714,012	387,351
36,117,890	11,717,578	4,276,773	2,034,278	2,494,174	2,334,464	3,614,282	3,786,322	5,170,529	689,490
12,436,566	912,577	1,541,509	1,033,826	1,342,709	1,430,012	2,088,641	1,994,418	1,715,812	377,063
1,582,254	13,434	312,412	15,226	14,090	37,983	120,326	397,649	655,319	15,815
3,984,330	765,974	413,583	277,877	355,606	389,887	521,995	639,160	469,362	150,885
-	-	-	-	-	-	-	-	-	-
-	-	-	-	-	-	-	-	-	-
10,872,372	1,287,929	1,322,249	621,028	869,014	966,201	1,689,601	1,581,438	2,221,039	313,871
1,463,688	447,136	189,556	76,222	207,240	84,075	119,054	138,821	163,661	37,924
83,594,250	24,652,692	7,709,212	5,195,991	7,323,808	6,044,275	8,996,664	9,727,781	11,850,342	2,093,486
16,903,111	8,544,628	852,108	817,383	1,415,892	796,940	844,079	1,384,874	1,841,483	405,723
37,885,652	11,992,519	3,686,570	2,141,846	3,073,818	2,272,369	3,592,148	4,192,342	6,150,315	783,725
13,255,015	903,493	1,638,519	1,139,513	1,461,460	1,520,020	2,208,014	2,214,120	1,783,918	385,957
233,500	5,204	39,111	8,374	1,934	11,035	62,102	37,778	64,374	3,587
3,466,292	511,921	393,216	276,642	316,203	335,863	480,404	452,659	565,129	134,255
-	-	-	-	-	-	-	-	-	-
-	-	-	-	-	-	-	-	-	-
9,792,466	1,592,566	936,076	734,231	962,566	1,005,789	1,679,184	1,317,304	1,216,242	348,507
2,058,215	1,102,361	163,611	78,002	91,934	102,258	130,733	128,704	228,882	31,731
84,884,357	24,807,248	7,080,679	5,384,677	7,876,400	6,929,457	9,615,701	9,927,758	11,095,486	2,166,952
17,907,073	8,968,589	889,276	828,296	1,419,054	834,923	921,432	1,583,213	2,061,170	401,121
34,163,187	11,366,891	2,719,831	2,189,636	3,230,883	2,193,663	3,550,763	3,360,602	4,866,659	684,257
18,287,402	1,529,989	2,172,987	1,519,152	1,900,643	2,086,738	3,055,600	3,065,640	2,374,178	582,475
-	-	-	-	-	-	-	-	-	-
12,743,267	2,129,975	1,113,018	772,090	1,207,585	1,727,830	1,959,433	1,761,747	1,615,528	456,060
1,783,429	811,803	185,566	75,503	118,235	86,303	128,473	156,556	177,950	43,038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15,491,028	6,085,913	3,258,347	928,920	620,910	548,490	411,537	317,709	
	지방세수입	6,378,583	3,594,902	2,091,676	547,630	327,268	315,094	146,884	166,351	
	세외수입	3,979,614	1,785,650	1,049,785	219,424	144,919	168,719	112,940	89,864	
	지방교부세	2,764,654	115,165	14,954	10,725	13,044	7,143	47,079	22,220	
	지방양여금	-	-	-	-	-	-	-	-	-
	조정교부금	53,806	53,806	53,806	-	-	-	-	-	-
	보조금	1,988,026	319,325	45,121	99,609	62,144	36,074	39,291	37,086	
	지방채	326,345	217,065	3,005	51,533	73,535	21,461	65,343	2,188	
	지정재원	-	-	-	-	-	-	-	-	-
1991	합계	19,903,784	7,680,652	3,936,848	1,209,139	853,893	745,972	477,863	456,937	
	지방세수입	8,035,075	4,469,149	2,540,753	688,096	408,667	408,686	191,700	231,246	
	세외수입	6,071,682	2,607,832	1,300,462	362,039	312,239	294,392	178,844	159,856	
	지방교부세	3,452,403	139,803	-	26,193	25,586	9,156	47,343	31,525	
	지방양여금	557,031	111,406	-	39,508	23,432	16,956	18,064	13,445	
	조정교부금	-	-	-	-	-	-	-	-	-
	보조금	1,787,592	352,462	95,633	93,303	83,969	16,782	41,912	20,864	
	지방채	-	-	-	-	-	-	-	-	-
	지정재원	-	-	-	-	-	-	-	-	-
1992	합계	22,078,671	8,719,335	4,300,570	1,444,432	1,048,923	868,216	503,189	554,005	
	지방세수입	9,462,206	5,198,540	2,907,143	819,874	484,873	475,758	237,356	273,536	
	세외수입	6,658,109	2,674,428	1,348,393	427,877	248,652	345,299	135,582	168,625	
	지방교부세	3,925,064	127,030	1,145	15,914	23,021	7,683	49,199	30,068	
	지방양여금	53,414	53,414	-	53,414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335,933	284,984	42,650	79,377	92,016	13,992	39,647	17,302	
	지방채	643,945	380,939	1,239	47,976	200,361	25,484	41,405	64,474	
	지정재원	-	0	-	-	-	-	-	-	
1993	합계	23,700,272	9,057,446	4,510,906	1,586,062	836,295	966,758	608,119	549,306	
	지방세수입	11,025,781	5,949,789	3,259,783	953,140	578,199	547,762	259,406	351,499	
	세외수입	5,993,498	2,466,908	1,197,443	446,589	182,455	343,576	161,101	135,744	
	지방교부세	4,412,413	151,341	750	22,836	20,140	8,855	68,536	30,224	
	지방양여금	60,250	60,250	-	60,250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743,491	267,632	48,523	75,332	42,862	25,295	55,015	20,605	
	지방채	464,839	161,526	4,407	27,915	12,639	41,270	64,061	11,234	
	지정재원	-	0	-	-	-	-	-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405,115	2,005,083	1,013,892	686,495	825,559	861,587	1,128,026	1,217,414	1,437,854	229,206
2,783,681	997,724	181,500	150,544	169,577	196,986	197,511	316,979	505,589	67,270
2,193,964	483,937	228,527	140,538	185,987	175,726	271,818	252,354	408,936	46,141
2,649,489	250,459	383,668	242,480	275,723	293,859	408,306	426,177	288,925	79,892
-	-	-	-	-	-	-	-	-	-
-	-	-	-	-	-	-	-	-	-
1,668,702	245,123	213,168	150,246	179,210	174,898	239,536	209,007	224,721	32,792
109,280	27,839	7,029	2,688	15,062	20,118	10,855	12,896	9,682	3,111
-	-	-	-	-	-	-	-	-	-
12,223,132	2,861,142	1,184,584	859,843	1,027,897	1,123,451	1,338,692	1,645,384	1,876,802	305,338
3,565,926	1,283,473	215,272	197,812	232,676	238,397	240,164	407,807	660,687	89,638
3,463,850	989,074	377,167	269,462	228,648	299,224	284,095	395,572	548,610	71,999
3,312,600	316,643	418,173	256,091	363,243	378,919	532,719	551,337	393,285	102,189
445,625	45,655	48,077	36,166	53,805	41,524	65,480	78,291	60,933	15,694
-	-	-	-	-	-	-	-	-	-
1,435,130	226,296	125,895	100,312	149,524	165,388	216,234	212,376	213,286	25,818
-	-	-	-	-	-	-	-	-	-
-	-	-	-	-	-	-	-	-	-
13,359,336	3,305,922	1,172,600	875,799	1,090,081	1,206,062	1,452,259	1,837,007	2,071,923	347,683
4,263,666	1,572,193	257,006	231,560	267,187	275,798	286,557	475,797	787,918	109,650
3,983,681	1,220,983	356,831	285,173	257,976	326,766	358,364	489,213	593,414	94,961
3,798,034	319,630	445,131	291,892	422,389	433,473	619,479	660,300	485,783	119,957
-	-	-	-	-	-	-	-	-	-
-	-	-	-	-	-	-	-	-	-
1,050,949	128,607	90,651	59,981	130,024	146,794	177,515	129,479	164,825	23,073
263,006	64,509	22,981	7,193	12,505	23,231	10,344	82,218	39,983	42
-	-	-	-	-	-	-	-	-	-
14,642,826	3,823,445	1,204,425	917,983	1,259,360	1,361,588	1,592,799	1,872,905	2,244,563	365,758
5,075,992	2,060,568	276,471	275,170	312,369	317,940	306,830	538,626	867,134	120,884
3,526,590	1,141,437	282,255	227,974	288,027	340,164	325,949	333,521	507,640	79,623
4,261,072	358,067	510,524	324,630	472,171	492,783	702,408	724,966	539,814	135,709
-	-	-	-	-	-	-	-	-	-
-	-	-	-	-	-	-	-	-	-
1,475,859	176,266	124,657	79,269	163,348	191,611	251,123	226,969	234,174	28,442
303,313	87,107	10,518	10,940	23,445	19,090	6,489	48,823	95,801	1,100
-	-	-	-	-	-	-	-	-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4	합계	30,279,950	10,688,205	5,008,445	1,851,019	1,295,710	1,050,650	752,958	729,423		
	지방세수입	13,227,759	6,995,341	3,849,975	1,071,900	723,620	617,049	322,050	410,747		
	세외수입	7,737,981	2,783,381	1,094,299	449,538	477,237	373,918	216,953	171,436		
	지방교부세	4,821,432	153,920	30	26,778	19,956	8,072	67,232	31,852		
	지방양여금	1,696,086	173,379	-	49,603	36,430	30,869	32,902	23,575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2,337,104	323,683	58,641	129,984	29,531	19,062	63,604	22,861		
	지방채	459,588	258,501	5,500	123,216	8,936	1,680	50,217	68,952		
	지정재원	-	0	-	-	-	-	-	-	-	
1995	합계	36,667,355	12,786,252	6,017,341	2,142,485	1,575,329	1,367,770	855,190	828,137		
	지방세수입	15,316,913	7,948,568	4,339,477	1,214,752	814,937	767,113	368,391	443,898		
	세외수입	9,032,482	3,244,402	1,425,433	448,284	468,308	422,029	266,958	213,390		
	지방교부세	5,671,326	239,251	1,800	31,860	39,499	58,103	82,891	25,098		
	지방양여금	1,870,124	207,740	-	57,558	46,321	33,130	39,849	30,882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3,218,960	355,915	76,913	81,002	49,244	54,307	49,678	44,771		
	지방채	-	0	-	-	-	-	-	-	-	
	지정재원	1,557,550	790,376	173,718	309,029	157,020	33,088	47,423	70,098		
1996	합계	44,995,294	15,333,931	7,729,809	2,375,327	1,727,233	1,538,781	1,065,771	897,010		
	지방세수입	17,394,727	8,976,080	4,890,596	1,423,581	925,755	852,739	413,812	469,597		
	세외수입	13,888,685	5,037,468	2,673,839	697,408	532,977	481,271	372,946	279,027		
	법정교부세	6,372,664	262,208	1,097	47,479	36,801	67,644	81,611	27,576		
	증액교부금	151,157	6,280	-	1,780	116	4,114	89	181		
	지방양여금	2,574,420	284,919	-	74,691	68,106	47,331	50,056	44,735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3,868,386	510,460	153,627	99,321	57,548	78,112	63,040	58,812		
	지방채	745,255	256,516	10,650	31,067	105,930	7,570	84,217	17,082		
1997	합계	50,764,997	17,664,175	8,296,579	2,476,712	2,190,424	1,612,342	1,284,613	906,176	897,329	
	지방세수입	18,497,728	9,990,508	5,332,575	1,407,263	895,671	953,300	476,171	488,283	437,245	
	세외수입	16,691,729	5,727,491	2,842,178	753,052	572,601	422,034	504,946	258,827	373,853	
	지방교부세	6,784,682	308,065	2,786	54,708	42,382	69,265	85,729	35,320	17,875	
	증액교부금	228,909	8,300	-	2,391	253	5,052	94	372	138	
	지방양여금	2,876,361	357,589	-	106,093	68,129	53,755	48,961	52,327	28,324	
	조정교부금	15,300	15,300	-	-	-	-	-	-	15,300	
	보조금	4,333,185	570,992	108,640	139,170	82,112	88,561	76,487	51,428	24,594	
	지방채	1,336,103	684,930	10,400	14,035	528,276	20,375	92,225	19,619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591,745	5,080,767	1,621,038	1,267,273	1,607,635	1,837,274	2,111,737	2,628,505	2,979,023	458,493
6,232,418	2,608,438	341,101	316,781	384,713	360,933	345,683	657,724	1,074,677	142,368
4,954,600	1,647,912	391,249	299,661	337,777	466,052	420,229	560,187	744,022	87,511
4,667,512	378,655	550,695	395,485	484,316	559,420	778,714	799,323	580,199	140,705
1,522,707	208,646	164,082	111,702	159,398	173,756	219,126	245,176	200,310	40,511
-	-	-	-	-	-	-	-	-	-
2,013,421	212,174	154,290	124,184	206,716	257,542	325,511	344,566	349,112	39,326
201,087	24,942	19,621	19,460	34,715	19,571	22,474	21,529	30,703	8,072
-	-	-	-	-	-	-	-	-	-
23,881,103	6,260,976	2,019,798	1,635,954	2,178,068	2,234,070	2,622,490	2,909,008	3,451,884	568,855
7,368,345	3,152,186	401,597	392,668	466,587	455,512	411,100	723,592	1,195,509	169,594
5,788,080	2,104,567	454,845	434,935	371,044	503,773	492,587	585,969	748,751	91,609
5,432,075	382,113	657,843	448,143	602,008	643,973	903,425	922,489	707,255	164,826
1,662,384	213,739	188,501	129,984	160,340	183,265	236,785	267,662	236,938	45,170
-	-	-	-	-	-	-	-	-	-
2,863,045	244,733	261,909	149,463	520,908	386,086	487,159	346,284	394,443	72,060
-	-	-	-	-	-	-	-	-	-
767,174	163,638	55,103	80,761	57,181	61,461	91,434	63,012	168,988	25,596
29,661,363	7,928,857	2,682,182	2,010,058	2,658,277	2,701,174	3,267,914	3,558,486	4,161,702	692,713
8,418,647	3,561,393	455,980	452,698	553,161	480,275	502,836	845,786	1,387,076	179,442
8,851,217	3,171,202	662,918	672,573	770,698	691,283	737,676	849,334	1,156,060	139,473
6,110,456	401,065	767,555	476,619	682,635	729,023	1,026,466	1,053,248	795,614	178,231
144,877	9,470	19,768	6,064	27,192	14,130	20,494	12,464	31,688	3,607
2,289,501	292,773	259,072	182,480	208,347	264,575	333,980	359,641	330,120	58,513
-	-	-	-	-	-	-	-	-	-
3,357,926	391,131	471,831	183,798	384,040	457,485	577,765	384,537	397,644	109,695
488,739	101,823	45,058	35,826	32,204	64,403	68,697	53,476	63,500	23,752
33,100,822	8,997,322	3,223,624	2,161,588	2,838,940	3,000,863	3,859,740	3,980,258	4,161,841	876,646
8,507,220	3,801,646	500,236	451,421	586,642	517,613	506,554	864,496	1,082,939	195,673
10,964,238	3,873,442	1,120,900	706,058	738,099	862,210	1,069,659	1,023,695	1,356,892	213,280
6,476,617	411,827	831,575	506,651	724,545	770,540	1,102,086	1,103,858	830,733	194,802
220,609	12,328	37,188	18,352	40,122	22,584	28,342	16,834	40,549	4,310
2,518,772	335,910	280,211	200,592	234,054	260,531	376,697	401,850	351,407	77,520
-	-	-	-	-	-	-	-	-	-
3,762,193	348,979	403,391	244,694	476,517	520,692	720,787	481,524	421,326	144,283
651,173	213,190	50,123	33,820	38,961	46,693	55,615	87,998	77,995	46,778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8	합계	50,989,344	16,481,747	7,446,959	2,321,811	2,203,387	1,647,326	1,201,343	943,108	717,813
	지방세수입	17,148,290	9,235,517	4,944,434	1,310,666	825,578	867,296	445,580	443,743	398,220
	세외수입	15,443,117	4,484,351	2,141,808	504,412	609,596	429,663	443,404	198,712	156,756
	지방교부세	7,036,326	315,600	2,995	44,754	38,043	79,678	85,559	37,469	27,102
	증액교부금	294,976	19,136	-	12,470	98	4,977	588	132	871
	지방양여금	2,879,549	347,047	-	91,175	72,641	54,178	44,772	51,697	32,584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6,175,440	1,115,886	235,304	266,431	143,609	202,563	99,640	110,059	58,280
	지방채	2,011,646	964,210	122,418	91,903	513,822	8,971	81,800	101,296	44,000
1999	합계	53,772,612	17,951,972	7,960,849	2,745,226	2,251,445	1,829,585	1,216,766	1,013,288	934,813
	지방세수입	18,568,517	10,086,010	5,566,120	1,383,722	869,229	888,640	435,397	507,336	435,566
	세외수입	15,758,596	4,373,552	1,654,440	592,090	772,389	466,765	410,601	223,611	253,656
	지방교부세	6,512,926	410,368	80,948	33622	48,947	91,969	83,991	35,515	35,376
	증액교부금	383,321	60,543	-	33,622	2,201	2,799	8,873	11,607	1,441
	지방양여금	2,906,139	344,553	-	91,482	63,247	55,537	45,286	47,499	41,502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7,891,281	1,771,528	484,729	426,882	253,882	255,117	161,376	111,320	78,222
	지방채	1,728,641	882,227	174,612	160,615	241,550	68,758	71,242	76,400	89,050
2000	합계	57,653,225	19,003,302	8,924,257	2,744,160	1,983,198	1,975,390	1,269,409	1,085,589	1,021,299
	지방세	20,361,411	11,087,473	6,204,198	1,431,715	931,264	1,015,241	484,269	555,673	465,113
	세외수입	16,653,692	5,044,213	2,300,015	725,516	591,244	487,673	385,191	255,237	299,337
	지방교부세	8,244,954	403,040	9,493	66072	50,830	92,332	100,258	46,290	37,765
	증액교부금	204,442	21,987	-	2,026	154	3,116	77	15,183	1,431
	지방양여금	3,713,447	399,707	-	88,449	89,715	68,830	48,568	48,845	55,300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7,652,942	1,682,122	392,111	370,995	230,747	282,014	181,232	128,745	96,278
지방채	822,337	364,760	18,440	59,387	89,244	26,184	69,814	35,616	66,075	
2001	합계	71,460,746	23,195,410	11,063,993	3,223,402	2,451,756	2,462,432	1,478,284	1,335,946	1,179,597
	지방세	26,639,725	13,956,551	7,934,081	1,782,620	1,107,077	1,292,829	583,547	687,863	568,534
	세외수입	18,337,574	5,444,144	2,655,766	652,694	563,754	564,705	395,182	322,497	289,546
	지방교부세	12,209,985	829,006	6,010	201974	103,427	169,245	152,632	91,798	103,920
	증액교부금	140,063	20,949	-	1,053	5,788	2,167	32	11,083	826
	지방양여금	4,628,105	518,988	-	112,774	98,867	87,562	58,427	54,903	106,455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8,690,642	1,905,599	465,156	419,481	279,243	270,540	231,061	161,152	78,966
지방채	814,652	520,173	2,980	52,806	293,600	75,384	57,403	6,650	31,350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507,597	9,067,193	3,261,450	2,376,116	2,995,430	3,075,465	4,071,455	4,507,714	4,223,483	929,291
7,912,773	3,520,308	469,462	415,483	550,901	509,453	479,463	804,323	962,431	200,949
10,958,766	3,737,096	1,073,717	737,610	783,860	857,214	1,163,525	1,046,257	1,304,352	255,135
6,720,726	427,352	826,103	520,554	733,115	821,337	1,149,733	1,160,985	884,242	197,305
275,840	9,243	21,230	96,017	39,751	1,739	40,104	22,561	37,753	7,442
2,532,502	326,974	279,308	196,052	247,399	271,218	373,391	387,864	369,646	80,650
-	-	-	-	-	-	-	-	-	-
5,059,554	741,287	480,052	326,272	575,114	546,006	791,927	869,295	590,929	138,672
1,047,436	304,933	111,578	84,128	65,290	68,498	73,312	216,429	74,130	49,138
35,820,640	9,804,871	3,350,591	2,306,268	3,114,565	2,935,704	4,104,634	4,725,817	4,510,277	967,913
8,482,507	3,917,932	470,654	452,820	576,775	509,389	513,022	859,062	971,728	211,125
11,385,044	3,580,613	1,008,758	804,406	927,385	738,818	1,184,933	1,484,487	1,460,003	195,641
6,102,558	397,335	767,726	489,676	647,306	739,739	1,039,860	1,044,361	808,573	167,982
322,778	42,835	27,759	23,378	39,959	37,932	57,298	39,528	45,055	9,034
2,561,586	340,103	264,628	181,305	251,430	285,500	365,205	391,136	390,966	91,313
-	-	-	-	-	-	-	-	-	-
6,119,753	1,272,388	738,337	327,927	601,979	569,145	891,378	772,131	733,897	212,571
846,414	253,665	72,729	26,756	69,731	55,181	52,938	135,112	100,055	80,247
38,649,923	10,601,568	3,570,900	2,336,275	3,388,552	3,261,095	4,656,397	4,903,539	4,831,593	1,100,004
9,273,938	4,331,141	498,120	474,337	633,788	530,669	562,045	948,694	1,060,249	234,895
11,609,479	4,074,610	1,134,007	685,995	907,960	762,187	1,177,253	1,255,820	1,380,128	231,519
7,841,914	532,920	986,292	603,939	852,503	944,656	1,349,348	1,323,464	1,019,866	228,926
182,455	7,367	18,952	12,731	19,113		64,846	25,589	28,403	5,454
3,313,740	468,044	370,391	245,874	338,750	341,779	461,734	514,248	464,871	108,049
-									
-									
5,970,820	1,060,854	511,788	311,128	588,247	610,282	1,010,803	789,614	847,977	240,127
457,577	126,632	51,350	2,271	48,191	71,522	30,368	46,110	30,099	51,034
48,265,336	12,952,261	4,481,444	2,931,919	4,278,488	4,223,694	5,891,272	5,985,097	6,084,532	1,436,629
12,683,174	6,431,974	643,919	603,108	801,859	658,176	702,574	1,151,559	1,362,461	327,544
12,893,430	4,086,445	1,056,072	728,694	1,075,484	980,724	1,560,027	1,420,204	1,697,242	288,538
11,380,979	789,964	1,430,307	896,425	1,214,304	1,314,469	1,903,250	1,905,377	1,568,089	358,794
119,114	4,949	7,149	3,334	9,642	22,573	45,890	11,602	11,753	2,222
4,109,117	567,976	441,353	312,998	429,982	438,321	603,512	620,145	571,038	123,792
-	-	-	-	-	-	-	-	-	-
-	-	-	-	-	-	-	-	-	-
6,785,043	1,017,995	852,514	386,510	724,915	758,616	1,050,307	848,816	850,181	295,189
294,479	52,958	50,130	850	22,302	50,815	25,712	27,394	23,768	40,550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2	합계	84,508,229	26,541,566	12,769,823	4,087,976	2,513,436	2,765,585	1,556,589	1,531,871	1,316,287
	지방세	31,583,550	16,625,168	9,430,644	2,223,482	1,292,069	1,530,259	673,652	840,070	634,991
	세외수입	22,118,158	6,372,715	2,945,436	991,500	592,634	702,430	406,389	383,026	351,300
	지방교부세	12,050,563	869,548	8,501	200,152	137,107	164,206	160,447	92,955	106,180
	증액교부금	418,729	42,407	-	3,975	223	4,378	20,086	11,287	2,456
	지방양여금	4,021,827	409,247	-	88,053	73,414	66,609	39,553	40,311	101,306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3,742,185	1,800,731	385,242	405,963	244,338	257,602	236,712	163,621	107,253
	지방채	573,216	421,750	-	174,850	173,650	40,100	19,750	600	12,800
2003	합계	96,503,974	29,455,120	14,232,954	4,368,908	2,792,548	3,097,623	1,745,613	1,720,982	1,496,493
	지방세	33,061,987	17,412,021	9,813,152	2,233,431	1,466,046	1,550,667	723,551	904,146	721,027
	세외수입	31,926,358	8,307,801	3,977,495	1,221,609	697,999	979,368	510,961	488,992	431,377
	지방교부세	13,370,311	938,475	4,564	215,537	207,788	131,749	162,721	102,518	113,598
	증액교부금	1,593,122	48,168	-	15,890	168	8,889	12,084	211	10,926
	지방양여금	4,280,867	422,307	-	94,415	81,612	70,551	43,186	44,313	88,230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1,715,739	2,086,362	437,742	507,969	313,985	245,099	270,630	180,802	130,135
	지방채	555,589	239,986	-	80,057	24,950	111,300	22,479	-	1,200
2004	합계	97,230,960	30,688,076	14,911,557	4,539,400	2,806,437	3,235,469	1,832,157	1,715,835	1,647,222
	지방세	34,159,382	17,256,280	9,726,335	2,196,824	1,401,591	1,565,749	699,005	873,172	793,603
	세외수입	33,507,014	9,519,490	4,661,101	1,477,398	829,086	1,011,780	579,695	494,072	466,359
	지방교부세	14,228,845	975,278	8,761	219,707	183,335	133,455	174,703	111,459	143,858
	증액교부금	200,705	7,244	-	724	1,427	2,731	56	111	2,196
	지방양여금	3,775,315	382,650	-	82,103	77,205	75,711	39,885	46,369	61,377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0,774,053	2,291,264	515,359	495,929	304,643	321,594	293,258	190,652	169,828
	지방채	585,647	255,870	-	66,715	9,150	124,450	45,555	-	10,000
2005	합계	99,714,240	31,422,044	14,935,292	4,632,732	2,936,371	3,482,986	1,823,846	1,763,288	1,847,529
	지방세	35,976,900	18,069,827	10,011,732	2,265,338	1,523,228	1,739,789	773,481	919,761	836,498
	세외수입	29,104,657	8,516,134	4,227,134	1,181,195	756,763	901,503	438,044	471,622	539,872
	지방교부세	20,018,269	1,732,448	189,842	360,598	311,787	205,379	269,946	167,039	227,85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13,797,816	2,574,637	506,585	602,889	343,343	409,823	311,281	204,366	196,35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16,598	528,999	-	222,713	1,250	226,493	31,093	500	46,950

주 :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7,966,663	15,215,139	6,729,084	3,437,344	4,497,489	4,554,173	6,894,945	7,035,989	8,056,367	1,546,133
14,958,382	8,031,222	709,718	670,854	883,520	698,245	766,044	1,196,264	1,625,931	376,584
15,745,443	4,895,323	1,527,550	857,188	1,321,112	1,085,327	1,882,132	1,709,511	2,140,154	327,146
11,181,015	803,503	1,413,617	910,819	1,193,402	1,263,006	1,904,772	1,831,300	1,537,145	323,452
376,322	11,720	110,226	6,484	15,213	33,349	83,947	38,725	73,162	3,496
3,612,581	529,891	393,917	258,239	342,305	394,270	528,020	511,381	500,711	153,846
-	-	-	-	-	-	-	-	-	-
-	-	-	-	-	-	-	-	-	-
11,941,454	928,879	2,545,439	704,412	735,762	1,073,227	1,708,522	1,725,067	2,167,751	352,395
151,466	14,600	28,617	29,349	6,175	6,750	21,508	23,741	11,512	9,214
67,048,854	17,390,073	7,839,610	3,934,356	5,132,950	4,959,852	7,494,679	8,333,935	10,318,673	1,644,725
15,649,966	8,205,187	762,126	732,413	1,072,721	742,063	773,130	1,260,963	1,714,012	387,351
23,618,557	6,466,060	3,538,898	1,324,271	1,546,999	1,511,543	2,576,675	2,632,999	3,605,341	415,771
12,431,836	912,577	1,539,982	1,033,826	1,342,409	1,429,512	2,088,341	1,993,218	1,715,812	376,161
1,544,954	13,434	312,412	15,226	14,090	37,983	83,026	397,649	655,319	15,815
3,858,560	701,202	386,778	277,877	355,606	389,887	520,670	616,463	459,192	150,885
-	-	-	-	-	-	-	-	-	-
-	-	-	-	-	-	-	-	-	-
9,629,377	1,038,066	1,236,232	543,744	758,882	836,165	1,440,096	1,420,310	2,067,612	288,269
315,603	53,546	63,182	7,000	42,243	12,700	12,741	12,333	101,385	10,473
66,542,884	17,710,591	6,666,382	4,204,586	5,901,816	4,807,594	7,436,859	8,139,544	10,016,222	1,659,289
16,903,102	8,544,628	852,108	817,383	1,415,892	796,940	844,069	1,384,874	1,841,483	405,723
23,987,524	6,460,213	2,857,240	1,301,118	1,856,415	1,254,582	2,361,775	2,912,058	4,585,454	398,669
13,253,567	903,424	1,638,440	1,139,513	1,461,460	1,519,520	2,207,914	2,213,420	1,783,918	385,957
193,461	5,204	39,111	8,374	1,934	11,035	22,063	37,778	64,374	3,587
3,392,664	491,729	368,069	276,642	312,899	335,863	479,910	441,306	551,992	134,255
-	-	-	-	-	-	-	-	-	-
-	-	-	-	-	-	-	-	-	-
8,482,789	1,251,691	851,261	660,355	850,669	856,154	1,496,824	1,143,108	1,049,729	322,998
329,777	53,702	60,152	1,200	2,546	33,500	24,304	7,001	139,272	8,100
68,292,196	18,467,269	6,002,899	4,344,736	6,392,928	5,720,766	7,966,672	8,383,341	9,230,746	1,782,839
17,907,073	8,968,589	889,276	828,296	1,419,054	834,923	921,432	1,583,213	2,061,170	401,121
20,588,523	6,071,572	1,814,620	1,320,542	1,985,835	1,232,371	2,236,110	2,186,861	3,314,988	425,625
18,285,822	1,528,944	2,172,987	1,519,152	1,900,643	2,086,738	3,055,200	3,065,640	2,374,043	582,475
-	-	-	-	-	-	-	-	-	-
11,223,179	1,799,909	1,046,972	676,746	1,083,577	1,560,434	1,741,124	1,527,627	1,427,607	359,183
287,599	98,256	79,043	-	3,819	6,300	12,807	20,000	52,938	14,436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3,665,176	1,879,106	636,413	381,757	145,638	257,001	142,708	315,589	
	지방세수입	-		-	-	-	-	-	-	
	세외수입	2,195,179	1,103,699	293,541	264,712	104,787	160,566	85,070	195,024	
	지방교부세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14,478	14,478	-	-	-	6,336	-	8,142	
	지방채	1,455,519	760,930	342,873	117,045	40,851	90,100	57,638	112,423	
지정재원	-		-	-	-	-	-	-		
1991	합계	5,584,111	2,690,846	1,336,550	337,172	191,104	266,985	337,257	221,778	
	지방세수입	-		-	-	-	-	-	-	
	세외수입	5,258,353	2,365,088	1,026,550	337,172	191,104	266,985	322,817	220,460	
	지방교부세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325,758	325,758	310,000	-	-	-	14,440	1,318	
	지방채	-		-	-	-	-	-	-	
지정재원	-		-	-	-	-	-	-		
1992	합계	5,719,240	2,645,888	1,216,242	258,385	231,928	300,343	346,857	292,133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3,990,242	1,825,735	636,466	253,983	197,970	231,871	266,829	238,616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9,700	19,700	-	-	-	-	19,700	-	
	지방채	1,709,298	800,453	579,776	4,402	33,958	68,472	60,328	53,517	
지정재원	-	0	-	-	-	-	-	-		
1993	합계	6,917,077	3,524,049	1,542,141	343,387	468,772	532,666	292,806	344,277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4,451,400	1,939,871	461,691	293,175	225,014	458,972	207,888	293,131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23,640	123,640	75,000	-	45,000	-	3,640	-	
	지방채	2,342,037	1,460,538	1,005,450	50,212	198,758	73,694	81,278	51,146	
지정재원	-	0	-	-	-	-	-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86,069	847,461	87,657	90,017	80,997	113,547	207,939	92,237	257,503	8,711
-	-	-	-	-	-	-	-	-	-
1,091,480	552,088	47,743	71,619	50,634	52,962	86,432	53,269	168,371	8,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4,590	295,373	39,913	18,398	30,363	60,586	121,508	38,968	89,131	350
-	-	-	-	-	-	-	-	-	-
2,893,265	1,298,163	170,477	111,011	187,584	272,271	306,184	121,148	387,953	38,475
-	-	-	-	-	-	-	-	-	-
2,893,265	1,298,163	170,477	111,011	187,584	272,271	306,184	121,148	387,953	38,4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73,352	1,183,961	220,348	233,300	183,000	278,684	279,784	178,610	434,076	81,589
-	-	-	-	-	-	-	-	-	-
2,164,507	860,434	187,720	192,887	134,648	170,128	200,383	96,439	276,918	44,9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8,845	323,527	32,628	40,413	48,352	108,556	79,401	82,171	157,158	36,639
-	-	-	-	-	-	-	-	-	-
3,393,028	1,203,167	233,202	280,999	273,944	279,696	266,255	263,464	491,333	100,968
-	-	-	-	-	-	-	-	-	-
2,511,529	962,012	164,041	219,539	171,331	212,151	202,521	180,909	322,925	76,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1,499	241,155	69,161	61,460	102,613	67,545	63,734	82,555	168,408	24,868
-	-	-	-	-	-	-	-	-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4	합계	6,815,681	2,674,628	528,870	399,617	544,701	605,670	168,698	427,072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011,907	1,881,109	442,092	333,615	196,245	441,267	112,881	355,009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69,928	169,000	-	-	111,000	58,000	-	-	
	지방채	1,633,846	624,519	86,778	66,002	237,456	106,403	55,817	72,063	
지정재원	-	0	-	-	-	-	-	-		
1995	합계	8,487,429	3,174,707	583,758	352,548	883,931	803,554	233,772	317,144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6,325,846	2,337,423	490,187	282,799	576,857	619,666	177,381	190,533	
	지방교부세	3,254	3,254	-	-	3,254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219,923	217,373	-	-	147,914	68,000	959	500	
	지방채	-	0	-	-	-	-	-	-	
지정재원	1,938,406	616,657	93,571	69,749	155,906	115,888	55,432	126,111		
1996	합계	9,018,407	3,092,707	664,107	454,522	361,004	955,927	287,335	369,812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6,980,426	2,328,603	519,013	357,135	280,810	677,335	200,227	294,083	
	법정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154,398	154,398	-	25,312	17,461	108,010	1,992	1,623	
지방채	1,883,583	609,706	145,094	72,075	62,733	170,582	85,116	74,106		
1997	합계	9,484,577	3,469,024	671,649	562,276	439,629	1,020,752	264,814	309,816	200,088
	지방세수입	-	0	-	-	-	-	-	-	-
	세외수입	7,585,694	2,711,567	531,618	513,761	289,310	715,389	230,762	245,837	184,890
	지방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84,108	184,108	-	5,567	51,191	119,400	3,078	4,872	-
지방채	1,714,775	573,349	140,031	42,948	99,128	185,963	30,974	59,107	15,198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141,053	1,565,807	212,485	259,247	310,560	356,665	301,799	300,407	714,463	119,620
-	-	-	-	-	-	-	-	-	-
3,130,798	1,250,647	173,706	221,536	182,569	286,731	250,367	209,831	450,445	104,96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8	603	-	-	-	-	-	-	325	-
1,009,327	314,557	38,779	37,711	127,991	69,934	51,432	90,576	263,693	14,654
-	-	-	-	-	-	-	-	-	-
5,312,722	2,155,401	248,205	361,557	395,280	407,723	386,302	350,535	912,623	95,096
-	-	-	-	-	-	-	-	-	-
3,988,423	1,664,034	173,207	277,541	284,362	305,380	286,489	235,363	688,482	73,5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0	-	-	2,550	-	-	-	-	-	-
-	-	-	-	-	-	-	-	-	-
1,321,749	491,367	74,998	81,466	110,918	102,343	99,813	115,172	224,141	21,531
6,025,700	2,524,485	386,800	393,120	324,736	446,482	417,276	343,895	1,080,555	108,351
-	-	-	-	-	-	-	-	-	-
4,751,823	2,192,680	272,166	331,485	243,289	325,441	331,720	231,744	754,161	69,1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73,877	331,805	114,634	61,635	81,447	121,041	85,556	112,151	326,394	39,214
6,015,553	2,869,398	354,332	369,700	368,455	467,151	441,191	285,766	754,959	104,601
-	-	-	-	-	-	-	-	-	-
4,874,127	2,424,916	281,946	309,177	245,812	378,416	361,333	195,530	605,669	71,3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1,426	444,482	72,386	60,523	122,643	88,735	79,858	90,236	149,290	33,273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8	합계	8,523,215	3,349,401	685,833	564,165	458,800	981,372	248,343	214,944	195,944
	지방세수입	-	0	-	-	-	-	-	-	-
	세외수입	7,033,421	2,680,736	577,833	526,719	320,040	640,335	229,455	196,126	190,228
	지방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93,146	193,146	-	81	59,666	125,436	3,176	4,787	-
	지방채	1,296,028	474,899	108,000	37,365	79,094	215,601	15,712	14,031	5,096
1999	합계	8,745,024	3,386,962	697,968	634,503	573,896	827,073	214,691	220,063	218,768
	지방세수입	-	0	-	-	-	-	-	-	-
	세외수입	7,017,570	2,788,941	667,097	580,650	429,039	566,349	196,838	182,969	165,999
	지방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75,619	175,619	-	5,638	50,000	110,068	3,258	6,655	-
	지방채	1,551,835	422,402	30,871	48,215	94,857	150,656	14,595	30,439	52,769
2000	합계	8,866,793	3,347,020	695,388	742,076	671,901	555,317	186,949	241,688	253,701
	지방세	-	0	-	-	-	-	-	-	-
	세외수입	7,703,630	2,917,802	683,388	681,098	524,896	492,672	172,121	198,901	164,726
	지방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167,772	167,771	-	6,867	63,040	2,100	29	6,760	88,975
지방채	995,391	261,447	12,000	54,111	83,965	60,545	14,799	36,027	-	
2001	합계	10,092,778	3,619,415	765,854	817,805	652,257	693,310	221,626	210,991	257,572
	지방세	-	0	-	-	-	-	-	-	-
	세외수입	8,931,223	3,304,529	713,754	754,420	602,553	623,776	204,754	190,323	214,949
	지방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49,004	49,004	-	18,324	21,535	2,301	2,376	4,468	-
지방채	1,112,551	265,882	52,100	45,061	28,169	67,233	14,496	16,200	42,623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73,814	2,452,452	352,048	336,893	256,184	310,798	393,338	275,444	701,671	94,986
-	-	-	-	-	-	-	-	-	-
4,352,685	2,033,409	297,780	321,462	211,225	260,556	332,160	190,599	636,264	69,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1,129	419,043	54,268	15,431	44,959	50,242	61,178	84,845	65,407	25,756
5,358,062	2,459,415	312,928	366,583	270,524	300,886	437,050	316,299	590,615	60,868
-	-	-	-	-	-	-	-	-	-
4,228,629	1,996,609	235,432	361,547	149,771	243,481	375,113	215,1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9,433	462,806	77,496	5,036	120,753	57,405	61,937	101,106	219,719	23,175
5,519,773	2,493,506	335,320	383,100	273,247	366,816	403,861	397,007	775,548	91,368
-	-	-	-	-	-	-	-	-	-
4,785,828	2,120,455	309,875	377,960	141,027	293,294	339,847	378,154	757,353	67,8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733,944	373,051	25,445	5,140	132,220	73,522	64,013	18,853	18,195	23,505
6,473,363	2,993,830	348,840	393,874	372,572	433,590	421,611	499,709	914,963	94,374
-	-	-	-	-	-	-	-	-	-
5,626,694	2,613,651	276,098	342,707	283,545	364,530	330,563	466,511	881,506	67,5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6,669	380,179	72,742	51,167	89,027	69,060	91,048	33,198	33,457	26,791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2	합계	11,405,364	3,625,224	815,992	798,272	502,211	833,863	220,497	190,878	263,510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9,995,368	3,318,841	777,875	697,864	478,556	764,502	208,629	177,091	214,324
	지방교부세	2,593	-	-	-	-	-	-	-	-
	증액교부금	-	-	-	-	-	-	-	-	-
	지방양여금	32,411	3,665	-	-	3,665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28,903	23,764	-	9,445	6,591	1,578	1,374	4,775	-
	지방채	1,346,091	278,954	38,118	90,964	13,398	67,783	10,494	9,012	49,185
2003	합계	12,011,187	3,648,033	803,062	851,519	393,363	922,148	218,334	191,711	267,896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0,501,346	3,352,326	763,062	753,603	367,905	854,749	207,873	188,929	216,204
	지방교부세	1,230	-	-	-	-	-	-	-	-
	증액교부금	37,300	-	-	-	-	-	-	-	-
	지방양여금	46,010	3,513	-	-	3,513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26,501	14,896	-	4,517	8,051	1,050	1,176	102	-
	지방채	1,398,801	277,298	40,000	93,399	13,894	66,349	9,285	2,680	51,692
2004	합계	13,306,615	3,880,280	808,738	914,154	406,506	959,086	229,218	259,688	302,890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1,460,580	3,603,016	808,738	822,043	372,031	894,662	217,863	234,955	252,724
	지방교부세	749	-	-	-	-	-	-	-	-
	증액교부금	40,040	-	-	-	-	-	-	-	-
	지방양여금	24,395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56,418	25,804	-	1,945	21,111	645	158	1,944	-
	지방채	1,724,434	251,461	-	90,166	13,364	63,780	11,197	22,789	50,166
2005	합계	13,876,667	4,252,435	853,891	937,238	380,100	1,176,439	288,381	320,093	296,293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2,086,770	3,836,074	853,891	845,015	348,565	1,039,986	240,107	274,704	233,806
	지방교부세	32	-	-	-	-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83,884	61,534	-	18,665	17,178	8,515	4,830	5,494	6,85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05,981	354,827	-	73,559	14,357	127,938	43,443	39,895	55,635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780,141	3,493,795	496,293	456,164	474,581	546,766	639,306	645,046	905,964	122,225
-	-	-	-	-	-	-	-	-	-
6,676,526	3,016,531	402,901	398,814	388,632	474,621	542,989	531,984	828,716	91,338
2,593	-	-	-	1,750	-	-	-	-	843
-	-	-	-	-	-	-	-	-	-
28,746	20,594	746	-	-	-	-	7,405	-	-
-	-	-	-	-	-	-	-	-	-
-	-	-	-	-	-	-	-	-	-
5,139	-	2,394	-	2,745	-	-	-	-	-
1,067,137	456,670	90,252	57,350	81,454	72,145	96,317	105,657	77,248	30,044
8,363,154	3,807,042	576,881	510,932	587,521	507,670	681,958	746,860	805,519	138,770
-	-	-	-	-	-	-	-	-	-
7,149,020	3,394,295	446,387	439,927	436,991	436,240	538,345	598,245	749,289	109,300
1,230	-	328	-	-	-	-	-	-	902
37,300	-	-	-	-	-	37,300	-	-	-
42,497	19,158	-	-	-	-	-	22,697	642	-
-	-	-	-	-	-	-	-	-	-
-	-	-	-	-	-	-	-	-	-
11,605	-	7,917	1,783	733	55	-	-	-	1,117
1,121,503	393,590	122,250	69,222	149,797	71,375	106,313	125,918	55,588	27,451
9,426,335	4,062,121	581,715	589,577	767,520	655,596	867,732	857,208	898,426	146,440
-	-	-	-	-	-	-	-	-	-
7,857,564	3,191,906	486,002	512,775	678,706	588,434	732,664	726,616	817,651	122,809
749	49	-	-	-	-	-	700	-	-
40,040	-	-	-	-	-	40,040	-	-	-
24,395	14,786	-	-	-	-	-	9,609	-	-
-	-	-	-	-	-	-	-	-	-
-	-	-	-	-	-	-	-	-	-
30,615	26,470	-	-	300	-	-	419	3,426	-
1,472,972	828,909	95,713	76,802	88,515	67,162	95,028	119,864	77,349	23,631
9,624,232	4,177,247	552,801	562,244	877,370	684,909	914,451	772,234	944,064	138,912
-	-	-	-	-	-	-	-	-	-
8,250,696	3,576,269	446,528	486,741	771,255	608,506	800,509	626,685	823,894	110,309
32	32	-	-	-	-	-	-	-	-
-	-	-	-	-	-	-	-	-	-
22,350	1,000	8,728	-	-	-	3,129	9,493	-	-
1,351,154	599,946	97,545	75,503	106,116	76,403	110,813	136,056	120,169	28,602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3,757,841	1,652,832	1,237,436	90,913	152,043	66,039	70,009	36,391	
	지방세수입	-		-	-	-	-	-	-	
	세외수입	3,149,172	1,339,253	943,195	84,813	152,043	60,491	62,319	36,391	
	지방교부세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134,299	134,299	133,025	-	-	1,273	-	-	
	지방채	474,371	179,281	161,216	6,100	-	4,275	7,690	-	
	지정재원	-		-	-	-	-	-	-	
1991	합계	4,254,313	1,577,268	1,027,769	226,450	77,280	116,130	60,423	69,216	
	지방세수입	3,961,599	1,379,049	875,439	216,305	70,552	109,863	56,379	50,511	
	세외수입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지방양여금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292,713	198,220	152,331	10,145	6,728	6,267	4,044	18,705	
	지방채	-		-	-	-	-	-	-	
	지정재원	-		-	-	-	-	-	-	
1992	합계	6,894,043	2,968,782	1,755,349	735,152	105,206	207,614	74,795	90,666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4,880,252	2,574,467	1,560,202	707,907	60,096	177,334	33,030	35,898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1,177,188	87,315	-	-	35,341	26,307	-	25,667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394,781	242,499	167,785	10,445	6,969	3,973	33,693	19,634	
	지방채	441,822	64,501	27,362	16,800	2,800	-	8,072	9,467	
	지정재원	-	0	-	-	-	-	-	-	
1993	합계	7,177,159	2,866,638	1,543,842	610,529	241,202	216,908	167,828	86,329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119,629	2,417,622	1,410,541	550,132	193,790	183,044	42,434	37,681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1,360,825	129,364	-	-	39,083	28,731	34,557	26,993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301,966	131,837	93,333	13,431	7,979	5,133	5,201	6,760	
	지방채	394,739	187,815	39,968	46,966	350	-	85,636	14,895	
	지정재원	-	0	-	-	-	-	-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05,009	411,242	113,920	95,119	183,971	148,027	179,426	215,362	727,042	30,898
-	-	-	-	-	-	-	-	-	-
1,809,919	366,069	82,523	83,031	181,246	124,380	157,087	197,590	599,194	18,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5,090	45,173	31,398	12,089	2,725	23,648	22,340	17,772	127,847	12,099
-	-	-	-	-	-	-	-	-	-
2,677,044	451,597	146,375	131,877	237,392	253,736	365,449	357,032	701,116	32,471
2,582,551	449,544	144,142	124,177	220,593	233,951	340,383	357,032	681,939	30,7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494	2,053	2,233	7,700	16,798	19,784	25,066	-	19,177	1,681
-	-	-	-	-	-	-	-	-	-
-	-	-	-	-	-	-	-	-	-
3,925,261	856,323	242,652	229,108	442,171	364,769	383,111	541,413	787,376	78,338
-	-	-	-	-	-	-	-	-	-
2,305,785	535,124	109,106	129,517	293,658	175,214	201,227	309,236	514,165	38,538
-	-	-	-	-	-	-	-	-	-
1,089,873	189,239	103,072	82,755	106,280	118,429	136,166	164,767	154,855	34,310
-	-	-	-	-	-	-	-	-	-
152,282	15,487	12,338	9,095	19,132	22,908	27,529	20,714	23,175	1,904
377,321	116,473	18,136	7,741	23,101	48,218	18,189	46,696	95,181	3,586
-	-	-	-	-	-	-	-	-	-
4,310,521	891,832	322,030	222,303	481,772	417,524	396,267	565,063	922,486	91,244
-	-	-	-	-	-	-	-	-	-
2,702,007	671,585	159,112	107,946	316,413	233,631	229,749	338,923	599,054	45,594
-	-	-	-	-	-	-	-	-	-
1,231,461	191,504	133,360	99,749	132,508	126,572	130,535	192,823	188,413	35,997
-	-	-	-	-	-	-	-	-	-
170,129	22,893	14,822	9,379	19,471	24,591	29,158	25,663	21,633	2,519
206,924	5,850	14,736	5,229	13,380	32,730	6,825	7,654	113,386	7,134
-	-	-	-	-	-	-	-	-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4	합계	7,321,723	4,406,525	3,212,038	479,593	413,813	189,952	77,668	33,461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180,606	2,683,808	1,644,423	403,596	381,784	168,847	58,375	26,783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624,733	418,620	337,310	46,295	15,029	7,145	6,163	6,678	
	지방채	1,516,384	1,304,097	1,230,305	29,702	17,000	13,960	13,130	-	
지정재원	-	0	-	-	-	-	-	-		
1995	합계	7,224,126	4,306,441	2,731,099	837,632	182,109	167,545	272,842	115,214	
	지방세수입	-	0	-	-	-	-	-	-	
	세외수입	5,388,159	2,831,919	1,713,512	502,046	150,568	157,805	211,569	96,419	
	지방교부세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670,338	468,559	346,272	79,087	14,792	9,740	9,573	9,095	
	지방채	-	0	-	-	-	-	-	-	
지정재원	1,165,629	1,005,963	671,315	256,499	16,749	-	51,700	9,700		
1996	합계	9,071,825	5,783,893	2,860,629	1,312,818	846,935	223,212	406,845	133,454	
	지방세수입	1,735	1,735	1,735	-	-	-	-	-	
	세외수입	6,741,934	3,837,441	1,729,045	981,322	511,187	174,209	317,973	123,705	
	법정교부세	-	0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보조금	907,233	663,903	340,001	109,550	173,518	12,213	18,872	9,749	
지방채	1,420,923	1,280,814	789,848	221,946	162,230	36,790	70,000	-		
1997	합계	9,322,054	5,682,217	2,570,605	1,366,472	779,691	214,304	430,907	187,288	132,950
	지방세수입	-	0	-	-	-	-	-	-	-
	세외수입	6,885,812	3,841,286	1,698,769	824,952	593,744	192,432	309,918	93,297	128,174
	법정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805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028,274	731,035	285,344	210,084	72,513	21,872	66,955	69,491	4,776
	지방채	1,107,163	1,109,896	586,492	331,436	113,434	-	54,034	24,500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15,198	711,600	138,135	82,013	295,837	318,613	261,175	376,348	678,742	52,735
-	-	-	-	-	-	-	-	-	-
2,496,798	659,661	119,652	68,362	256,262	275,363	221,353	309,389	538,488	48,2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6,113	32,523	12,483	12,363	22,539	23,796	28,274	30,961	39,670	3,504
212,287	19,416	6,000	1,288	17,036	19,454	11,548	35,998	100,584	963
-	-	-	-	-	-	-	-	-	-
2,917,685	676,447	180,219	92,243	305,899	361,600	339,319	336,383	570,194	55,381
-	-	-	-	-	-	-	-	-	-
2,556,240	623,600	134,622	71,434	271,980	298,484	292,105	285,778	527,457	50,7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79	32,614	14,278	13,682	21,443	26,365	30,181	30,485	30,046	2,685
-	-	-	-	-	-	-	-	-	-
159,666	20,233	31,319	7,127	12,476	36,751	17,033	20,120	12,691	1,916
3,287,932	735,886	200,145	113,963	377,789	479,804	416,768	355,451	547,427	60,699
-	-	-	-	-	-	-	-	-	-
2,904,493	689,774	162,269	90,179	341,939	430,783	349,251	294,673	495,380	50,2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330	37,773	19,580	16,341	26,821	23,710	40,777	37,786	36,826	3,716
140,109	8,339	18,296	7,443	9,029	25,311	26,740	22,992	15,221	6,738
3,639,837	867,491	227,206	152,159	347,147	438,870	483,336	394,250	506,634	222,744
-	-	-	-	-	-	-	-	-	-
3,044,526	805,259	179,272	122,923	302,640	402,872	404,157	321,347	451,028	55,028
-	-	-	-	-	-	-	-	-	-
-	-	-	-	-	-	-	-	-	-
805	-	-	-	-	-	-	-	805	-
-	-	-	-	-	-	-	-	-	-
297,239	55,904	23,742	20,009	30,762	24,863	43,885	46,999	45,095	5,980
297,267	6,328	24,192	9,227	13,745	11,135	35,294	25,904	9,706	161,736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8	합계	9,608,769	5,933,404	2,480,028	1,587,828	759,682	233,767	518,656	271,293	82,150
	지방세수입	-	0	-	-	-	-	-	-	-
	세외수입	6,890,882	3,708,146	1,681,902	775,032	481,852	206,111	354,791	142,782	65,676
	법정교부세	3,200	400	150	-	250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5,976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397,866	981,629	319,603	280,930	123,374	21,987	130,875	97,739	7,121
	지방채	1,310,845	1,243,229	478,373	531,866	154,206	5,669	32,990	30,772	9,353
1999	합계	10,608,099	6,827,803	2,922,314	1,891,276	682,411	226,215	563,731	429,573	112,283
	지방세수입	47	13	-	-	-	13	-	-	-
	세외수입	6,974,197	3,881,041	1,697,427	1,047,820	289,097	191,991	307,084	284,996	62,626
	법정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보조금	1,620,634	1,039,221	412,761	211,456	126,289	33,169	140,047	105,722	9,777
	지방채	2,013,221	1,907,528	812,126	632,000	267,025	1,042	116,600	38,855	39,880
2000	합계	10,656,130	6,551,935	2,998,963	1,071,903	873,998	461,338	564,923	498,043	82,767
	지방세	189	69		69					
	세외수입	7,174,130	3,924,670	1,818,184	813,753	254,570	323,219	355,390	309,076	50,478
	지방교부세	-	0							
	증액교부금	-	0							
	지방양여금	-	0							
	조정교부금	-	0							
	재정보전금	-	0							
	보조금	2,071,988	1,300,824	404,828	189,081	299,983	115,655	145,692	133,296	12,289
지방채	1,409,823	1,326,372	775,951	69,000	319,445	22,464	63,841	55,671	20,000	
2001	합계	12,442,095	7,078,560	2,789,181	1,476,785	880,994	587,458	700,509	535,955	107,678
	지방세	199	0	-	-	-	-	-	-	-
	세외수입	8,714,477	4,540,010	1,878,380	1,019,768	294,952	417,947	483,076	360,567	85,320
	지방교부세	-	0	-	-	-	-	-	-	-
	증액교부금	-	0	-	-	-	-	-	-	-
	지방양여금	-	0	-	-	-	-	-	-	-
	조정교부금	-	0	-	-	-	-	-	-	-
	재정보전금	-	0	-	-	-	-	-	-	-
	보조금	2,438,322	1,295,979	234,964	243,432	372,508	121,247	166,433	135,037	22,358
지방채	1,289,097	1,242,571	675,837	213,585	213,534	48,264	51,000	40,351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75,365	977,707	218,780	161,784	346,701	483,327	506,211	367,275	477,972	135,608
-	-	-	-	-	-	-	-	-	-
3,182,736	882,934	183,577	134,223	294,278	438,052	431,445	280,308	410,604	127,315
2,800	200	-	-	1,500	-	-	-	1,100	-
-	-	-	-	-	-	-	-	-	-
5,976	4,140	-	-	-	-	-	-	1,836	-
-	-	-	-	-	-	-	-	-	-
416,237	86,710	32,883	25,169	39,417	39,315	69,271	60,774	55,568	7,130
67,616	3,723	2,320	2,392	11,506	5,960	5,495	26,193	8,864	1,163
3,780,296	945,252	224,736	161,882	381,241	441,021	578,118	409,701	525,153	113,192
34	-	29	5	-	-	-	-	-	-
3,093,156	828,780	162,920	128,247	316,462	377,656	436,075	315,535	426,023	101,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1,413	100,500	42,365	33,630	55,102	56,071	128,747	80,406	75,328	9,264
105,693	15,972	19,422	-	9,677	7,294	13,296	13,760	23,802	2,470
4,104,195	1,163,113	246,502	183,339	442,901	334,749	586,546	456,487	596,710	93,848
120				120					
3,249,460	908,854	194,477	136,842	355,413	255,246	464,315	346,640	509,750	77,923
-									
-									
-									
-									
-									
771,164	229,467	49,482	46,497	65,128	72,709	113,328	97,127	85,096	12,330
83,451	24,792	2,543		22,240	6,794	8,903	12,720	1,864	3,595
5,363,535	1,713,518	294,962	247,088	479,435	368,945	695,290	594,298	878,884	91,115
199	-	-	-	-	-	199	-	-	-
4,174,467	1,301,530	220,283	180,067	392,651	252,181	558,960	448,185	754,505	66,1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2,343	387,358	73,130	66,886	85,162	115,386	134,070	137,818	120,223	22,310
46,526	24,630	1,549	135	1,622	1,378	2,061	8,295	4,156	2,700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2	합계	14,594,241	8,329,274	3,594,291	1,672,752	743,439	763,863	835,409	544,351	175,169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0,171,110	5,255,302	2,240,398	1,040,473	294,297	582,998	625,867	358,601	112,667
	지방교부세	7,197	4,943	3,043	-	1,000	500	-	400	-
	증액교부금	-	-	-	-	-	-	-	-	-
	지방양여금	135,812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2,447,760	1,246,568	279,718	228,067	314,988	109,402	149,542	141,350	23,501
	지방채	1,832,362	1,822,461	1,071,131	404,212	133,154	70,964	60,000	44,000	39,000
2003	합계	14,210,806	7,515,748	3,462,109	1,018,425	806,566	815,542	748,985	527,586	136,535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0,696,210	5,345,897	2,584,950	798,902	326,161	662,448	552,417	319,171	101,847
	지방교부세	25,793	22,293	-	-	20,053	840	-	1,400	-
	증액교부금	10,000	10,000	-	10,000	-	-	-	-	-
	지방양여금	85,133	1,860	-	-	-	-	-	1,860	-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2,512,278	1,280,889	313,129	207,423	316,891	126,035	136,568	146,155	34,688
	지방채	881,392	854,810	564,030	2,100	143,462	26,219	60,000	59,000	-
2004	합계	15,305,961	7,680,929	3,347,372	1,075,363	999,263	872,870	703,051	525,347	157,663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1,419,959	5,379,385	2,497,715	861,601	440,634	667,891	509,012	275,233	127,299
	지방교부세	4,951	4,252	2,052	-	1,000	-	-	1,200	-
	증액교부금	-	-	-	-	-	-	-	-	-
	지방양여금	49,232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2,665,890	1,386,827	359,286	213,762	309,403	151,059	134,039	188,915	30,364
	지방채	1,165,930	910,465	488,319	-	248,226	53,920	60,000	60,000	-
2005	합계	14,823,653	7,855,724	3,673,943	1,209,790	865,861	862,320	595,723	517,329	130,759
	지방세	-	-	-	-	-	-	-	-	-
	세외수입	10,671,640	5,347,673	2,606,297	962,204	415,659	655,053	379,735	229,483	99,241
	지방교부세	6,950	5,402	-	-	5,402	-	-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	-	-	-	-	-	-	-
	보조금	3,063,964	1,566,225	338,541	247,586	304,488	207,267	172,988	263,845	31,51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81,099	936,424	729,104	-	140,312	-	43,000	24,000	7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도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264,967	2,199,800	389,269	282,989	579,375	353,761	748,296	605,292	1,011,857	94,328
-	-	-	-	-	-	-	-	-	-
4,915,808	1,804,383	252,115	213,066	468,469	218,081	572,857	456,286	856,197	74,354
2,254	1,020	134	-	-	-	800	-	300	-
-	-	-	-	-	-	-	-	-	-
135,812	66,532	55,793	-	601	-	6,106	-	6,780	-
-	-	-	-	-	-	-	-	-	-
-	-	-	-	-	-	-	-	-	-
1,201,191	327,865	80,781	69,379	109,354	132,679	168,033	148,442	144,683	19,975
9,901	-	446	544	951	3,000	500	563	3,897	-
6,695,058	2,152,700	401,718	345,581	635,083	517,162	750,391	717,975	985,542	188,904
-	-	-	-	-	-	-	-	-	-
5,350,313	1,857,223	291,488	270,080	510,184	386,681	499,261	555,078	815,899	164,419
3,500	-	1,200	-	300	500	300	1,200	-	-
-	-	-	-	-	-	-	-	-	-
83,273	45,614	26,806	-	-	-	1,325	-	9,528	-
-	-	-	-	-	-	-	-	-	-
-	-	-	-	-	-	-	-	-	-
1,231,390	249,863	78,100	75,501	109,399	129,981	249,505	161,127	153,427	24,485
26,582	-	4,124	-	15,200	-	-	570	6,688	-
7,625,032	2,879,981	461,115	401,828	654,471	581,084	692,073	731,029	935,693	287,757
-	-	-	-	-	-	-	-	-	-
6,040,573	2,340,400	343,327	327,953	538,697	429,353	497,718	553,669	747,209	262,247
699	20	79	-	-	500	100	-	-	-
-	-	-	-	-	-	-	-	-	-
49,232	5,406	25,147	-	3,304	-	495	1,744	13,137	-
-	-	-	-	-	-	-	-	-	-
-	-	-	-	-	-	-	-	-	-
1,279,062	314,405	84,816	73,875	111,597	149,635	182,360	173,777	163,087	25,510
255,465	219,750	7,746	-	873	1,596	11,400	1,839	12,261	-
6,967,929	2,162,732	524,980	477,697	606,102	523,782	734,577	772,183	920,676	245,201
-	-	-	-	-	-	-	-	-	-
5,323,967	1,719,051	458,683	382,353	473,794	352,786	514,143	547,057	727,777	148,323
1,549	1,014	-	-	-	-	400	-	135	-
-	-	-	-	-	-	-	-	-	-
1,497,738	329,067	57,318	95,344	124,008	167,396	215,181	224,626	187,921	96,878
144,675	113,601	8,978	-	8,300	3,600	4,853	500	4,843	-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세·재정 관련 내용을 발췌, 소개하고 있으며 『재정포럼』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의견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 주 -

대선과 새해 예산안

내년도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이 정치에 발목을 잡혔다. 헌법(54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국회는 이미 이틀이나 시한을 넘겼고 앞으로 언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없다.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를 무시한다는 증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사실상 대선일인 19일 이전에는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도 대통령 당선 축하행사나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 연말연시 행사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해 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한 뒤 내년에 다시 추경예산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로 직결된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셈이다.

특히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주요 사업과 복지정책이 최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수만명의 정부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덩달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이 예산에서 사업비 형태로 월급을 지급하는 탓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2일부터 출근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동 1번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해야 할 일들만이라도 해 달라는 것뿐이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많은 국민이 그들의 '칙무유기' 현장을 감시하고 있음을 잊어서 안 된다.

윤경현(파이낸셜 기자)

(파이낸셜 2007년 12월 5일 '기자수첩')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내년도 국가 살림과 관련된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법정 기한을 넘긴 것은 둘째치고 어떤 당에서는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의 의도를 반영해 다시 편성하자며 야에 심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으니 이게 사실이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해 처리하면 될 사안을 대선 당선자와 연계시키는 발상 자체가 우선 전혀 납득(納得)이 안된다. 정권을 잡은 것으로 착각해 나온 것이라면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다. 대선과 연계시키는 것은 야에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새로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연 그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가. 과거 대

선이 있는 해에는 그나마 앞당겨 보통 11월에 예산안을 처리해 왔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물건너 갔다.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사업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로 행정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소연 하다가시피 하고 있겠는가.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이 대선이 끝나고 보자는 것은 결국 다른 의도(意圖)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선 후 바로 닥칠 총선을 겨냥해 지역과 관련한 여러 이해가 걸린 사업들을 반영해 보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국가 예산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예산안 확정이 늦어진 만큼 국가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대선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

〈한국경제 2007년 12월 1일 '사설'〉

증부세를 위한 변명

지난해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뒤 국세청 직원들은 '무응답' 과도 같은 얘기를 쏟아냈다.

이들의 무응답은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 에도 불구하고 증부세 납부율을 98%로 끌어올렸다는 자화자찬이기도 했다. 사연은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지역 세무서 직원일수록 풍성했다.

“지병으로 해외에 머물며 요양 중이던 증부세 대상자에게 수차례 국제 전화를 걸어 설득한 끝에 자진신고케 했다”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을 만나 신도들에게 증부세 납부를 독려해달라고 부탁했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는 ‘증부세 반대 서명 안내문’ 을 떼어내고 ‘납세 안내문’ 을 붙이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증부세 신고·납부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올해도 증부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부산을 떨 모양이다. 증부세 납세자들이 몰려 있는 고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 전담반을 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광고용 전광판을 활용해 증부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는 케이블TV를 통해서도 증부세 납부를 홍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쓸 요량이다.

이달 17일까지 주택분 증부세를 내야 하는 개인은 37만 9,000명으로 전국 1,855만 가구의 2.0%에 해당한다. 개인 증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59.9% 늘었고, 이들의 증부세액은 1조 2천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 증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22.8% 오른 데다 과

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 주택분 증부세는 전국 가구의 2.0%가 내는 세금이다. 증부세는 올해 보급생활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13조 5,833억원)의 8.8%,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5조 6,814억원)의 21.1%에 불과하다. 세액만 놓고 볼 때 다른 국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증부세를 놓고 국세청이 매년 12월만 되면 납부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의 ‘집단 반발’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증부세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

매년 증부세 신고·납부기간이 돌아오면 보수언론에는 ‘징벌적 세금’, ‘세금폭탄’, ‘부유층 죽이기’ 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린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정작 증부세를 내야 할 고가주택 보유자들보다 증부세 걱정을 더 많이 한다. 희한한 일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증부세를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 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증부세는 특정계층에게만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 이 아니다. 납부대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증부세가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보유기간이나 소유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되면 ‘징벌적 세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증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세 부담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한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종부세액은 그만큼 적어지고, 납부 대상자도 줄게 돼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감면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가 두 채를 판 뒤 10억원짜리 주택 1채를 구입했을 경우 1가구 1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고령 은퇴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시세로 8억원이 넘는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8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 은퇴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령 1주택자는 2만명에 불과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시세 8억원 미만인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이 없는 서민은 1,000만가구가 넘는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올해로 3년째가 된다. 주변에는 “종부세를 내더라도 집 값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게 서민들의 솔직한 속내일 게다. 지난 2년간 종부세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납부율은 97%를 웃돈다. 다른 세목에 비해 납부율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전국 가구의

2%에 불과한 부동산 부자들이 응답해야 할 종부세 납부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써가며 홍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예산을 아껴 저소득층의 조세 지원에 쓰고,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부유층의 도덕적 의무)의 실천을 촉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박구재(경향신문 경제부장)
 〈경향신문 2007년 12월 3일 ‘하침을 열며’〉

‘눈덩이’ 종부세 완화방안 마련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또다시 위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3만명(38%)이나 증가한 48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액이 2조 8,000억원으로 65%가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 주택은 무려 3배 가까운 172%나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은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데도 종부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22%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강남·서초구는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실정이고 심한 경우 세액이 6배 가까이 늘어

난 아파트도 있다고 한다. 과세 대상이 전국 가구의 2%에 불과하고 주택 소유자의 4% 밖에 안 돼 일부 ‘가진자’를 제외한 대다수 서민과는 관계 없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하지만 일부가 대상일지라도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집값만 갖고 과도하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은퇴자나 평범한 봉급생활자에게는 종부세 신고·고지서가 집값이 싼 변두리로 옮기라는 ‘퇴거 명령서’와 다를 바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이사 가는 것이 쉬운가. 양도소득세 등 과중한 거래세가 부담스러운 데다 매매 자체도 거의 실종돼 팔기도 어려운 게 요즘 시장 상황이지 않은가.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제이다. 부과 첫해에 비해 2년 만에 총 세액이 6배 넘게 늘어날 만큼 대표적 ‘세금 폭탄’이기도 하다. 종부세를 이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과세대상 기준을 올려 대상자를 줄이고 과세적용률을 하향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 가구주 등에 대한 경감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세계일보 2007년 11월 30일 ‘사설’〉

건강보험료 인상 ‘티와 들보’

매년 이 때쯤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새롭게 짤다. 먼저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그 뒤에 수입을 결정한다. 건강보험 공급자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고, 반면 국민은 앓아 지는 호주머니를 꺼린다. 이 중간점에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서 있다. 그러나 매년 조율은 쉽지 않다.

건강보험의 수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우선 공급자인 의사, 약사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 15만 4,000명이 직접적인 대상자다. 이들은 손해를 보며 병·의원을 경영한다고 매년 주장한다. 그러나 공단이 연말까지 지급할 금년도 진료비는 24조원 이상이다. 이 파이를 약 7만 6,000개 요양기관이 매월 나누어 갖고 있다. 수가는 2.3% 인상했지만 총 수입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14.3% 증가했다. 돈 벌이가 잘 되기에 요양기관수도 매년 약 2,000개씩 개설되고 있다.

국민은 어떠한가. 경제 및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1명이 한달 평균 의료기관을 1.34회나 찾는다. 국민의 의료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3년간 약 2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수혜 측면을 보면 약 1%인 50만명만이 경제적인 부담 감소 혜택을 크게 보았

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한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건강한 국민은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인상부담을 안아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사업주 또한 경비 지출로 볼멘소리가 커진다.

보험료 인상은 누구 탓도 아니다. 다만 전 국민이 함께 양보해야 하는 문제이다. 요양기관 수입의 급증으로 배 아파 반대하는 주장은 안 된다. 평소 자신은 건강하니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라는 논리는 더 더욱 맞지 않다. 그러면 제도 운영을 잘 못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탓인가. 이 주장에 대해 두 기관은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보험료 및 수가 인상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결정 방식 또한 공급자 및 가입자 등 각계 대표단체들로 구성된 25인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참여 및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도 국민이 하고, 수가 인상의 수혜자도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국민이며,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험 혜택을 누릴 사람도 국민이다. 다만 재정규모 조율은 중간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한다. 따라서 어렵게 모은 돈을 투명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 4.77%는 독일(14.2%), 프랑스(13.55%), 일본(8.6%)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적은 부담으로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71.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보장하는 나눔과 배분의 정신이다.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사회연대로 해결하고 소득재분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제도이기도 하다.

신현웅(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 연구위원)
(경향신문 2007년 12월 1일 '기고')

있으면 막 쓰고 없으면 막 걷는 건보료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6.4% 인상돼 임금 상승률(5.5%)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12% 정도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입원환자의 병원식대 중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의 입원아동이 추가비용(10%)을 내는 것 등을 감안하면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건강보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흑자를 유지하다 갑자기 적자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인상폭을 높이지 않으면 ‘파산’에 이를 지경이라니 당국의 재정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방만한 급여비 지출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누적흑자가 1조원을 넘어서자 정부는 ‘선심성

급여를 납발했다. 이번에 정부가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다시 부담을 지우기로 한 병원식대와 6세 미만 아동 무료입원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병원식대만 하더라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는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시행 1년 동안 이로 인한 추가급여비가 4,350여 억원으로 연간 전체 건강보험 적자 3,120여억원을 넘어서자 돈을 더 걷고 반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이번 인상안이다.

당장 1, 2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납발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발표했던 영·유아 무료입원과 장제(葬祭)비용 지금 약속도 1년 만에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할 형편이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본적 계획 없이, 있는 대로 쓰고 부족하면 더 건어들어자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장기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효율적인 수지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관리당국이 맡아서 해야 할 의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필요선인 8.6%에서 많이 낮춰진 것이라고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부당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탈루를 막고 급여지출 구

조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일보 2007년 11월 23일 '사설'〉

외환위기 10년, 여전히 불안한 한국경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다. 뿌리 깊은 관치금융과 무리한 과잉투자가 빚은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은행과 증권사 등 부실 금융회사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통폐합됐으며, 대우·쌍용·진로 등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경제주권을 국제통화기금에 내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은 크게 강화됐다. 당시 200억달러도 되지 않았던 가용 외환보유고가 2,6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2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지표만이 아니다.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삼성전자·현대차 등 몇몇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정보기술(IT)·조선 등 분야에서 성공은 눈부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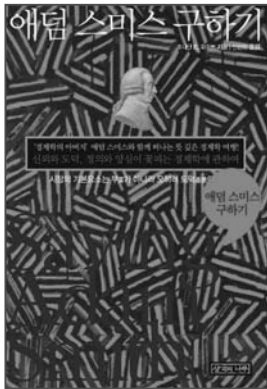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경제가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섰는지는 의문이다. 올해 들

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사태로 우리 금융시장이 수시로 요동치고 있다. 중국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언제 또다시 충격파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계 부채로 말미암은 은행 부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내실이 튼튼해졌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졌고, 대외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대로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환위기 이후 4~5%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해 왔음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대기업을 잘나갈 뿐 정작 고용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중소기업과 다를 바 없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문닫는 곳이 속출한다. 이러다 보니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해지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만 양산되는 상황이다.

지표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낙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새로운 10년을 설계하려면 이런 내적·외적 불안 요인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면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외환위기가 남긴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야 또다른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겨레 2007년 11월 21일 '사설'〉



애덤 스미스 구하기

생각의 나무 발행
조난단 B.와이트 지음
안진환 옮김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철학으로 하는 최초의 경제학 저서 『국부론』을 발간,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경제학자다. 특유의 혜안과 식견으로 예술, 자연과학, 법률,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적을 남기고 인류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부 증진의 지름길은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축적에 있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 구하기』는 애덤 스미스의 철학과 사상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 쓴 재미있는 경제 교양서로, 스미스의 사상과 경제학을 현대에 접목시켜 부와 물질만능주의를 경고하며 올바른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스미스의 사상과 경제학이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 투영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를 주인공으로 한 가상소설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부의 창출과 상거래, 시장실패와 국가의 역할, 신규시장의 구조개혁, 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 경영과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재미있는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풀어냈고, 소설 곳곳에 애덤 스미스의 말과 사상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경제이론 소설로서의 재미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특히 경제학, 경영학, 철학, 그리고 관계 이론에서 제기 되는 현대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제이론과 기업윤리를 실례에 적용시켜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편에는 애덤 스미스 연보, 자료 노트, 관련 추천도서 목록, 교사를 위한 가이드 등도 제시하고 있다. (개정판) [양장본]



행복경영

김영사 발행
조영탁 · 정향숙 지음

얼마 전 미국 주요 대학의 MBA 졸업생 2,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1900년대 현대적 의미의 경영학이 태동한 이래, 과학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체계화된 것은 1920년의 일이었다. 그 후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영학 원론은 예외없이 기업의 목적을 ‘이익 창출, 이익의 극대화’라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경영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답습해온 정의나 일반

적인 통념과는 달리 탁월한 성과를 올리면서 장수하는 기업, 즉 초일류기업들은 우리가 기업의 목적이라 굳게 믿었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신,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 추구하고 있었다. 즉 ‘행복의 극대화’를 통해 시장수익률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생존해 왔다는 의미다.

‘행복을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경영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행복경영』을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가 풍부하게 실려 있다. 이 책에는 리더십과 경영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전문기업 휴넷 조영탁 대표가 지난 23년 동안 연구·분석해온 국내의 기업경영사례를 통해 도출한 ‘행복경영론’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행복경영의 개념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적, 수단, 방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업은 직원, 고객, 주주, 사회의 행복 극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역시 각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해답은 그가 제시한 ‘행복경영 프레임워크’에 있다.

재정포럼

2007년 12월호 통권 제13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7년 12월 15일 발행 / 제12권 제12호(통권 제13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